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I)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I)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2019.9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I)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2019.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2019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 본 연구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및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 그동안 본 제도는 일몰이 없는 제도로서 감면액의 추계가 곤란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 설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12월 23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을 허용하도록 함
 -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양도소득으로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중복적용 배제)
 - 단, 양도소득대상 금액 중에서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금액(연간 2천만원 이내)은 제외함
 - 3년간 행사금액의 합계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함

1. 주요국의 제도

-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에서는 행사 시 근로소득세 비과세, 양도 시 자본이득세로 과세함

- (미국) 교부시점에 근로소득 과세(공정가격 있는 경우), 법인은 비용처리 또는 행사시점에 근로소득 과세(공정가격 없는 경우), 법인은 비용처리
 -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자 양도시 과세(자본이득), 법인 비용 불인정
 - *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행사 가능, 이전불가, 행사가액 10만달러 이하
 - 행사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최저한세 적용대상 포함

- (일본) 행사시점에 근로소득 과세, 법인은 비용으로 처리
 -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자 양도시 과세(자본이득), 법인 비용 불인정
 - *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행사 가능, 이전불가, 행사가액 1,200만엔 이하

- (영국)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I과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한 적격스톡옵션 II로 구분할 수 있음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I (Company Share Option Plan): 행사 시 비과세, 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 (적용요건) 모든 회사에 적용이 가능하며, 부여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시가를 행사가액으로 적용, 1인당 30,000파운드(부여시 시가 기준) 한도, 부여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보유한 뒤 행사할 것
 -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되, 연간 11,700파운드 이하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II(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로 행사 시 비과세, 처분 시 보유 기간에 따른 자본이득세 과세
 - (적용요건) 총자산이 3,000만파운드를 초과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가 250명 이하인 회사에서 적용이 가능함

- (싱가포르) 스타트업, 중소기업,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과세특례 요건 및 혜택을 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등록 및 소재한 기업으로 행사가액이 부여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1년 이후, 행사가액이 부여일의 주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2년 이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

- 스타트업은 1,000만싱가포르달러까지 75%의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25%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니고, 주당 30시간 이상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됨
- 프랑스에서는 상장회사 및 외국법인에 적용하는 프랑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제도 (French-qualified share option plan)와 신설 비상장법인에 적용하는 BSPCE(Bons de souscription de parts de créateurs d'entreprise)로 나누어짐
 - BSPCE(Bons de souscription de parts de créateurs d'entreprise)
 - 주주가 행사 기간, 행사 조건 및 행사 가격을 승인하게 되며, 주식 부여대상자 명단과 발행할 수량을 정하게 됨
 - 통상 자본금 1억 5천만유로 이하의 EU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비상장기업일 것
 - 업력이 15년 이하, 개인주주 지분율이 25% 이상 또는 개인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부여 시) 소득세 비과세
 - (행사 시) 회사 및 종업원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
- 독일은 적격 비적격을 구분하여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구체적인 조세특례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부여 시) 비과세
 - (행사 시) 소득세 과세: 최대 47.5%의 소득세 과세
 - (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일반적으로 26.375%

2. 세수효과

-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귀속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각각 12개 및 34개 기업으로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벤처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자의 수는 2017년 51명, 2018년 217명
 - 2019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및 2018년 귀속분 행사이익*을 포함한 결정세액을 도출하여 세수효과** 추정하고자 함

* 3년간 행사이익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5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여 별지서식을 제출한 경우 5억원으로 적용하여 계산

** 세수효과 = {[행사이익 + 기존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기존 결정세액

<표 1> 2017년 및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효과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수	행사이익	행사이익 포함여부 결정세액		세수효과 (A-B)
			포함(A)	미포함(B)	
2017년	51	123.50	55.55	11.28	44.27
서비스업	36	85.67	40.67	9.98	30.69
임원	11	38.27	21.47	6.79	14.69
일반	25	47.40	19.19	3.19	16.00
제조업	15	37.83	14.88	1.30	13.59
임원	7	21.38	8.85	0.96	7.90
일반	8	16.44	6.03	0.34	5.69
2018년	217	479.08	235.91	63.57	172.33
도매업	19	15.06	4.12	0.35	3.77
임원	5	5.57	1.88	0.20	1.68
일반	14	9.49	2.24	0.15	2.09
방송통신업	1	1.64	1.54	0.88	0.65
일반	1	1.64	1.54	0.88	0.65
서비스업	133	295.79	168.48	58.45	110.03
임원	42	144.86	68.76	12.49	56.27
일반	91	150.93	99.72	45.96	53.76
제조업	64	166.57	61.76	3.88	57.88
임원	18	53.63	20.65	1.24	19.40
일반	46	112.94	41.12	2.64	38.48
총합계	268	602.57	291.46	74.85	216.60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2> 2017년 및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1인당 세수효과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수	행사이익	행사이익 포함여부 결정세액		세수효과 (A-B)
			포함(A)	미포함(B)	
2017년	51	242.15	108.92	22.12	86.81
서비스업	36	237.98	112.96	27.72	85.24
임원	11	347.92	195.22	61.70	133.53
일반	25	189.60	76.77	12.78	63.99
제조업	15	252.17	99.23	8.65	90.57
임원	7	305.49	126.48	13.69	112.79
일반	8	205.52	75.38	4.25	71.14
2018년	217	220.77	108.71	29.30	79.42
도매업	19	79.28	21.70	1.86	19.84
임원	5	111.42	37.63	4.04	33.60
일반	14	67.81	16.00	1.08	14.92
방송통신업	1	164.33	153.92	88.47	65.45
일반	1	164.33	153.92	88.47	65.45
서비스업	133	222.40	126.68	43.95	82.73
임원	42	344.91	163.71	29.74	133.97
일반	91	165.86	109.59	50.51	59.08
제조업	64	260.27	96.50	6.07	90.44
임원	18	297.96	114.71	6.92	107.79
일반	46	245.52	89.38	5.73	83.65
총합계	268	224.84	108.75	27.93	80.82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자 수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누적 세수효과 2017년 44.27억원, 2018년 172.33억원으로 추정
 - 1인당 평균 세수효과는 2017년 및 2018년 차이가 없으며, 임원의 직원 대비 임원에 대한 평균 세수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관찰되며, 서비스업의 세수효과가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2019~2021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을 가정함
 - [시나리오 I]의 가정

- 기업 수는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한 기업 수를 가산하여 적용
 - 1개 기업당 평균인원은 2017년 및 2018년 평균 종업원 수
 - 인원수는 기업 수 × 평균 인원수
 - 1인당 세수효과는 2017년 및 2018년 평균 세수효과, 누적세수효과는 1인당 세수효과
- [시나리오 II]의 가정
- 기업수는 2017년 첫 기업수를 증가 기업 수로 적용하여 계산, 그 외의 가정은 [시나리오 I]과 같음

<표 3> 2019~2021년 세수효과 추정

패널 A: 시나리오 I

(단위: 개, 명, 백만원,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수	12	34	56	78	100
인원수	51	217	298	415	532
1개 기업당 평균 인원	4.25	6.38	5.32	5.32	5.32
1인당 세수효과	86.81	79.42	83.12	83.12	83.12
누적 세수효과	44.27	172.33	247.63	344.91	442.20

패널 B: 시나리오 II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수	12	34	46	58	70
인원수	51	217	245	309	372
1개 기업당 평균 인원	4.25	6.38	5.32	5.32	5.32
1인당 세수효과	86.81	79.42	83.12	83.12	83.12
누적 세수효과	44.27	172.33	203.41	256.48	309.54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하는 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적이 없으며, 연도별 평균 200개 기업을 넘은 적이 없음
- 1인당 평균 세수효과는 2017년 및 2018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변동이 없으며, 2019년 기준 [시나리오 I]의 경우 약 248억원, [시나리오 II]의 경우 약 203억원으로 추정

3. 기업특성 분석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개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한 기업은 449개 기업으로 이 중 Kis-Value의 재무데이터자료가 확보된 기업은 148개 기업이며, 설문조사결과 주식매수 선택권 과세특례기업은 11개 기업으로 추정됨
 - 외감법대상 기업으로 재무자료가 외부에 공시되는 기업
 -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외감법 대상 기업으로 실제 과세특례를 신청한 기업 수(46개 기업)와 차이가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임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의 특성과 유사하지만, 사업영위기간은 짧은 편으로 나타남

<표 4> 주식매수선택권 및 과세특례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과세특례기업 (11개)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 (148개)	주식매수선택권 미신청기업 (148개)
상장기업	4개(36.4%)	49개(33.1%)	32개(21.5%)
자회사 해당	2개(18.2%)	53개(35.8%)	46개(30.9%)
대주주지분율	12.34%	12.99%	5.6%
사업영위기간	10.1년	12.07년	16.40년

자료: 설문조사 결과 및 Kis-Value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 2014~2018년 평균 5년 동안의 재무정보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의 규모가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총자산규모(397.8억원)는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321.2억원) 및 다른 벤처기업(278.8억원)보다 큰 편이나, 유형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28.4억원) 및 당기순이익(-46.6억원)은 평균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총급여(14.8억원)는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24.8억원) 및 다른 벤처기업(16.6억원)에 비해 적음

- 즉,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큰 벤처기업에서 고급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짐

<표 5> 과세특례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단위: 억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총자산	397.8	952.0	49.7	150.0	170.8	3260.0
총부채	143.3	217.7	12.7	105.4	151.1	772.9
유형자산	28.8	41.4	1.8	13.7	57.2	132.7
매출총이익	34.6	39.7	0.7	21.9	51.4	127.0
총급여	14.8	15.7	6.9	8.7	17.7	57.6
영업이익	-28.4	77.7	-41.3	0.0	10.5	21.8
당기순이익	-46.6	149.8	-17.4	0.0	15.3	19.3

자료: 설문조사 결과 및 Kis-Value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표 6>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단위: 억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총자산	321.2	685.0	75.6	162.6	357.0	12,530.4
총부채	155.0	490.9	18.3	62.4	151.3	11,225.3
유형자산	63.2	124.9	2.4	19.4	75.7	2,323.8
매출총이익	100.8	291.5	3.1	35.6	95.7	4,706.9
총급여	24.8	43.1	6.3	12.9	26.6	540.2
영업이익	17.3	149.0	-11.5	2.8	20.7	2,875.3
당기순이익	0.5	129.7	-16.3	0.7	16.2	1,546.1

자료: 설문조사 결과 및 Kis-Value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표 7> 주식매수선택권 미신청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단위: 억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총자산	278.8	313.5	115.6	183.7	304.3	2,844.2
총부채	135.6	153.5	60.6	95.1	157.4	1,774.8
유형자산	88.0	88.1	25.5	63.7	118.6	553.5
매출총이익	56.8	69.8	17.8	35.7	66.2	666.4
총급여	16.6	17.6	6.7	11.5	19.2	165.2
영업이익	11.4	41.8	0.2	7.6	17.9	369.6
당기순이익	6.5	42.8	0.0	5.4	13.9	346.3

자료: 설문조사 결과 및 Kis-Value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4. 설문조사 분석결과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한 벤처기업을 분석대상기업으로 하고, 비교대상기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하지 않은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각각 50개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종사자의 직종별 인력구성은 생산직이 평균 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R&D 23.2명, 관리직 19.5명, 영업 11.5명, 기타 2.7명 순서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부족 인력 수는 평균 0.8명이며,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0.4명, R&D 0.2명, 영업 및 기타 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으로는 R&D 인력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간관리자급 인력 34.0%, 생산기능 인력 27.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낮음이 53.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직장의 안정성(49.0%),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36.0%),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31.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회사의 보유지분은 창업자가 41.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개인투자자(18.9%), 일반 임직원(11.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의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74억 3,800만원이며, 비교집단(15억 7,700만원)에 비해 약 58억 6천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자금조달 방법으로 분석집단은 회사채 발행(31.2%), 정부정책 지원금, 은행 등 일반금융을 비슷한 비율로 활용하는 반면 비교집단은 70.2%를 은행 등 일반금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31.0%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활용 중인 기업은 28.0%, 미래에 활용계획은 29.0%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는 주요 목적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33.3%), 기업 경영성과 개선(18.2%), 핵심인력 이탈방지(12.1%)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가 24.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23.0%),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23.0%),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20.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거나 적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71.4%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 부족이 5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37.5%),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25.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회계 및 세무 담당자의 인원 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이 45.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40.0%),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30.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음.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겪는 세무행정상의 애로사항이 개별 근로소득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이용실적 저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짐

5. 결론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전문적으로 이에 대한 회계, 세무 및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 부담되는 편이기 때문임
-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세법상 요건은 엄격하지 않은 편에 속함
 - 다만, 향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조세감면규모가 매우 커지게 된다면 동 제도에 대한 요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는 조세지출 항목 중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 및 감면실적이 없는 항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몰규정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기 어려움
 - 일몰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에는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현행 조세지출항목은 일몰기한 중심으로 평가하고 관리되고 있는 편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일몰규정의 신설은 향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의 정책적 목표 및 효과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 정비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목 차

I. 서론	21
II. 벤처기업의 현황	25
1. 벤처기업의 개념 및 정의	27
2. 벤처기업의 현황	28
III.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33
1. 벤처기업 관련 주요 지원제도	35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37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37
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39
3. 주요국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40
IV. 경제적 효과 분석	45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수효과	47
2.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기업의 특성 분석	53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신청 벤처기업의 특성 분석	55
가. 인력 및 조직 특성	58
나. 재무구조 특성	60
다.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인식 및 현황	63
라. 구체적인 설문조사 분석결과	67
V. 타당성 평가	139
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141

2. 우리나라 조세지원 및 주요국의 조세지원 제도 비교	142
3.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144
VI. 결론	151
참고문헌	157
부 록	159

표 목 차

<표 II-1> 2017년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28
<표 II-2> 2017년 벤처기업 재무현황	29
<표 II-3>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 연구개발비율 비교	29
<표 II-4> 벤처기업 인력 규모 현황(2016~2017)	30
<표 II-5> 8대 업종분포 현황	31
<표 II-6> 기업 성장단계	31
<표 III-1> 벤처기업 주요 지원내용	35
<표 III-2> 과세특례 한도	39
<표 III-3>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 주요 연혁	40
<표 III-4> 미국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41
<표 III-5> 일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41
<표 III-6> 영국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42
<표 III-7> 싱가포르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42
<표 IV-1>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근로소득자의 특성 I	47
<표 IV-2>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근로소득자의 특성 II	48
<표 IV-3>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근로소득자의 특성 III	48
<표 IV-4>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효과 I	49
<표 IV-5>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효과 II	50
<표 IV-6>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1인당 세수효과	51
<표 IV-7> 2019~2021년 세수효과 시나리오	52
<표 IV-8> [시나리오 I]의 세수효과 추정 결과	52
<표 IV-9> [시나리오 II]의 세수효과 추정 결과	53
<표 IV-10> 주식매수선택권 및 과세특례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54
<표 IV-11> 과세특례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54

<표 IV-12>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55
<표 IV-13> 주식매수선택권 미신청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55
<표 IV-14> 조사 설계	56
<표 IV-15> 조사 세부 항목	56
<표 IV-16> 응답자 특성	57
<표 IV-17>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원 수	58
<표 IV-18>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59
<표 IV-19>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_1+2순위	59
<표 IV-20>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_1+2순위	60
<표 IV-21>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	60
<표 IV-22> 신규 자금조달 규모	61
<표 IV-23> 신규 자금조달 방법	61
<표 IV-24>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여부	62
<표 IV-25>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	62
<표 IV-26>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63
<표 IV-27> 정책지원제도 인지 비율	63
<표 IV-28>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	64
<표 IV-29>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세부항목	64
<표 IV-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	65
<표 IV-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지 않는 이유	65
<표 IV-3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	66
<표 IV-33>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	67
<표 IV-34>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원 수	68
<표 IV-35> 직종별 인력구성_전체	69
<표 IV-36> 직종별 인력구성_분석집단	70
<표 IV-37> 직종별 인력구성_비교집단	71
<표 IV-38> 학력별 인력구성_전체	73
<표 IV-39> 학력별 인력구성_분석집단	74
<표 IV-40> 학력별 인력구성_비교집단	75
<표 IV-41>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1+2순위)_전체	77

<표 IV-42>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1+2순위)_분석집단	78
<표 IV-43>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1+2순위)_비교집단	79
<표 IV-44>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1+2순위)_전체	81
<표 IV-45>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1+2순위)_분석집단	82
<표 IV-46>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1+2순위)_비교집단	83
<표 IV-47>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_전체	85
<표 IV-48>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_분석집단	86
<표 IV-49>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_비교집단	87
<표 IV-50> 신규 자금조달 규모_전체	89
<표 IV-51> 신규 자금조달 규모_분석집단	90
<표 IV-52> 신규 자금조달 규모_비교집단	91
<표 IV-53> 신규 자금조달 방법_전체	93
<표 IV-54> 신규 자금조달 방법_분석집단	94
<표 IV-55> 신규 자금조달 방법_비교집단	95
<표 IV-56>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_전체	97
<표 IV-57>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_분석집단	98
<표 IV-58>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_비교집단	99
<표 IV-59>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_전체	101
<표 IV-60>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_분석집단	102
<표 IV-61>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_비교집단	103
<표 IV-62>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_전체	105
<표 IV-63>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_분석집단	106
<표 IV-64>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_비교집단	107
<표 IV-65> 정책지원제도 인지율_전체	109
<표 IV-66> 정책지원제도 인지율_분석집단	110
<표 IV-67> 정책지원제도 인지율_비교집단	111
<표 IV-68>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전체	113
<표 IV-69>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분석집단	114
<표 IV-70>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비교집단	115
<표 IV-71>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1_전체	117

<표 IV-72>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2_전체	118
<표 IV-73>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1_분석집단	119
<표 IV-74>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2_분석집단	120
<표 IV-75>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1_비교집단	121
<표 IV-76>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2_비교집단	122
<표 IV-7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_전체	124
<표 IV-7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_분석집단	125
<표 IV-7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_비교집단	126
<표 IV-8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_전체	128
<표 IV-8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_분석집단 ..	128
<표 IV-8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_비교집단 ..	129
<표 IV-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_전체	131
<표 IV-8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_분석집단	132
<표 IV-8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_비교집단	133
<표 IV-86>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_전체	135
<표 IV-87>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_분석집단	136
<표 IV-88>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_비교집단	137
<표 V-1> 선행연구 정리	141

그림 목 차

[그림 III-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절차	38
[그림 IV-1]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력	67
[그림 IV-2] 직종별 인력구성	68
[그림 IV-3]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72
[그림 IV-4]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1+2순위)	76
[그림 IV-5]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1+2순위)	80
[그림 IV-6]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	84
[그림 IV-7] 신규 자금조달 규모	88
[그림 IV-8] 신규 자금조달 방법	92
[그림 IV-9]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	96
[그림 IV-10]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	100
[그림 IV-11]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104
[그림 IV-12] 정책지원제도 인지 비율	108
[그림 IV-13]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	112
[그림 IV-14]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세부항목	116
[그림 IV-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	123
[그림 IV-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127
[그림 IV-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	130
[그림 IV-18]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	134

I. 서론



I. 서론

- 2014년 12월 23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을 허용하도록 함(이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
 - 벤처기업 임직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4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중복적용 배제)
 - 단, 양도소득대상 금액에서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금액(연간 2천만원 이내)은 제외하여 산정함
 -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은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힘든 벤처기업들이 인력 확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1996년 「증권거래법」에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어 시행. 이후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다가 2007년 제도가 폐지되었음
 - 도입 당시(1996. 12)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행사이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2000년 비과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됨
 - 2007년 비과세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이후 정부가 ‘혁신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제도를 재도입함

- 2014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 1억원 이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1년간 보유를 조건으로 신설
 - 2016. 1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2016. 12. 20.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본 연구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및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 본 제도는 일몰이 없는 제도로서 감면액의 추계가 곤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 설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Ⅱ. 벤처기업의 현황



II. 벤처기업의 현황

1. 벤처기업의 개념 및 정의¹⁾

- 벤처기업이란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의미
 - venture와 企業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며, 영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startup’으로, 주로 첨단 기술 분야의 업종에서 갓 시작한 소기업을 의미
 - 법률상으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부터 보증 승인을 받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

- 벤처기업은 고도의 전문 능력, 창조적 재능, 기업가 정신을 살려, 대기업에서는 착수하기 힘든 특수한 신규 산업에 도전하는 연구개발형 기업
 - 20세기에는 전자·화학·기계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영역에 많이 진출하였으나, 21세기 들어서는 IT·바이오·유통·서비스·사회개발 등의 산업에도 확산되는 현상

- 벤처기업은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도산될 위험도 큰 편인데 그 원인으로는 창업자의 1인 체제, 마케팅과 재무의 취약성, 안이한 과대설비 투자, 기술개발체제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 등이 존재함
 - 소규모 체제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인재의 유치 및 투자유치의 성공 등으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

1) <https://ko.wikipedia.org/wiki/벤처기업>

- 벤처투자기업: 벤처캐피털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기업: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5~10%)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기술 평가를 실시한 후 담보 없이 총자산의 10% 이상, 최소 8천만원 이상을 보증하는 경우
- 기술평가대출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의 기술 평가를 실시한 후 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의 현황2)

- 2017년 12월 말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33,289개)에 비해 5.7% 증가한 35,187개이며,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노력으로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2017년 12월말 기준 총매출액은 약 225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4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함. 평균 영업이익이 2억 6,700만원, 평균 순이익 1억 6,200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4.4% → 4.2%)과 매출액순이익률(3.0% → 2.5%) 모두 소폭 감소함

<표 II -1> 2017년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이자비용)		순이익		매출액 영업 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2016	206,921,101	5,881	9,144,339	260	2,750,846	78	6,257,007	178	4.4	3.0
2017	225,275,344	6,402	9,380,726	267	3,066,146	87	5,701,567	162	4.2	2.5
증가율	8.9		2.6		11.5		-8.9		-	-

주: 2,059개 기업의 최근 2개년(2016년 및 2017년)의 경영성과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함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 매년 중소기업벤처부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자료는 2018년 12월에 발간된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임.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부분의 요약자료를 인용하였음

-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평균 자산은 61억 600만원, 평균 부채가 34억 5,800만원, 평균 자본은 26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자기자본비율은 43.4%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130.6%로 감소함

<표 II -2> 2017년 벤처기업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2016	196,318,997	5,579	113,414,295	3,223	82,904,701	2,356	42.2	136.8
2017	214,864,789	6,106	121,673,889	3,458	93,190,900	2,648	43.4	130.6
증가율	9.4		7.3		12.4		-	-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창업자의 지분보유 비율이 6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임직원(9.9%), 창업자 가족이나 친지(6.5%), 창업자 아닌 대표이사(5.9%), 개인 투자자(5.4%),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지(3.6%) 순임
 - 2017년도 정부 정책자금 수령 경험이 있는 기업은 34.1%였으며, 자금규모는 기업당 평균 3억 4,200만원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규모는 평균 5억 1,4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자금 조달 방법은 정부 정책지원금(60.5%)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17년 벤처기업 총투자액은 평균 4억 5,170만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국내 R&D투자액 2억 2,300만원, 국내 설비투자액이 1억 4,300만원으로 조사됨
 - 2017년 벤처기업의 매출액연구개발비율은 3.5%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 -3> 2017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 연구개발비율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 연구개발비율	1.5	0.7	3.5	2.5	1.3	3.0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과거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0.7%, 현재 실시중인 기업은 1.0%,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2%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주요 목적은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66.5%), ‘핵심인력 이탈방지’(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36.5%),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 (25.6%) 등을 이유로 듦
 -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총종사자 수는 762,856명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1.7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함
 - 이 중 정규직은 평균 21.5명, 비정규직은 0.2명이었으며, 외국인 종사자 수는 기업당 평균 0.5명으로 조사됨

〈표 II -4〉 벤처기업 인력 규모 현황(2016-2017)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전체 증감률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종사자 수	전체	542,036	189,356	731,392	565,275	197,581	762,856	4.3
	평균	15.4	5.4	20.8	16.1	5.6	21.7	
정규직 종사자 수	전체	539,111	186,414	725,525	562,276	194,548	756,824	4.3
	평균	15.3	5.3	20.6	16.0	5.5	21.5	
비정규직 종사자 수	전체	2,925	2,942	5,867	2,999	3,033	6,032	2.8
	평균	0.1	0.1	0.2	0.1	0.1	0.2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벤처기업의 직종별 인력구성은 생산직이 평균 8.7명으로 가장 많고, R&D가 4.6명, 관리직 4.3명, 기타 2.2명, 영업직 1.9명 순임. 벤처기업의 인력부족률은 평균 2.0%이며, 직종별로는 영업(2.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R&D(2.5%), 생산(2.3%), 관리(1.0%), 기타(0.6%)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평균 퇴사 임직원 수는 2.7명이며 사원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기 관리자급 0.6명, 중간 관리자급 0.2명으로 조사됨

-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에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벤처기업이 38.4%였으며, 시기별로 2018년 하반기에는 평균 2.0명, 2019년에는 평균 0.5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인력확보 애로직종은 R&D(75.4%), 생산기능(50.8%), 영업 및 마케팅(34.2%), 경영기획/전략(14.5%) 순으로 나타남(1+2순위)
- 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은 기술평가보증기업이 82.2%로 가장 많으며, 이어 연구개발기업이 8.2%, 기술평가대출기업 6.6%, 벤처투자기업 3.0% 순임
- 벤처기업의 4대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48.2%가 일반제조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첨단제조 20.8%, 소프트웨어/정보통신 17.5% 순으로 나타남
- 8대 업종 분류로는 기계/제조/자동차 업종이 25.4%, 음식료/섬유/(비)금속 22.8%, 소프트웨어 개발 10.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0.5%의 순임

<표 II -5> 8대 업종분포 현황

(단위: %)

에너지/의료/정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통신기기/방송기기	음식료/섬유/(비)금속	기계/제조/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방송서비스	기타
6.7	10.5	3.6	22.8	25.4	10.8	6.7	13.5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벤처기업의 47.7%가 서울/인천/경기 지역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대전/세종/충청/강원 24.3%, 부산/경남/울산 12.4%, 대구/경북 9.5%, 광주/전라/제주 6.1% 순으로 분포해 있음
- 국내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11.0년이며, 현재 상장된 벤처기업(1.7%)의 창업 후 상장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0.7년임
- 기업 성장단계는 고도성장기 기업이 5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성숙기 27.7%, 초기성장기 19.1%, 창업기 1.1%, 쇠퇴기 0.2% 순임

<표 II -6> 기업 성장단계

(단위: %)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1.1	19.1	51.9	27.7	0.2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대표이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93.2%가 남성이며, 연령은 50대(45.8%)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대표이사의 최종학력은 49.6%가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공은 학사와 석사 이상 모두 ‘공학(엔지니어)’이 각각 62.7%, 64.7%로 가장 높음
 - 창업 방식은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한 경우’가 94.8%이며 ‘국가연구소나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BI) 과정을 거쳐 창업’(3.3%)한 경우가 ‘대기업 등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2.0%)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동 및 팀 창업을 하는 경우는 전체기업의 9.8%이며, 평균 2.7명의 인원이 공동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창업주의 과거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2%였으며, 이 가운데 성공은 74.5%, 실패 경험 비율은 25.5%로 나타남. 또한 성공 및 실패 평균 횟수는 각각 1.2회로 조사됨

Ⅲ.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Ⅲ.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1. 벤처기업 관련 주요 지원제도

-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창업분야, 세계분야, 금융분야, 임지분야 및 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되는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음
 - 아래의 <표 Ⅲ-1> 외에도 Kibo A+Members로 선정되는 경우 거래편의 우대, 보증심사 우대, 연계지원 및 홍보지원 등이 있음. 이외에도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 투자보증, 기술 및 경영컨설팅, 벤처재기보증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있음

<표 Ⅲ-1> 벤처기업 주요 지원내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1항
	재산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 2항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금융	코스닥 등록	○ 등록심사 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제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기술 임치	수수료감면	○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시 임치수수료 1/3 감면 (신규) 300,000원/년 → 200,000원/년 (갱신) 150,000원/년 → 100,000원/년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자료: 벤처인(<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1300.jsp>)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조세지원제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³⁾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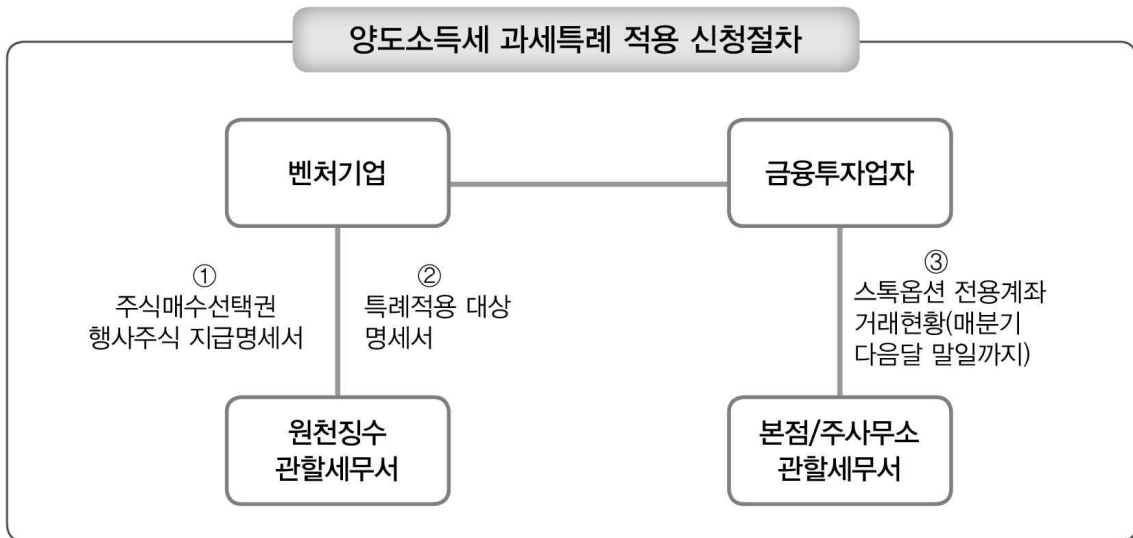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 해당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 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주식에는 신주인수권 포함)

4)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퇴사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금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
 - (신청방법)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그림 III-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절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거래현황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창업자 등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 12. 31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함

〈표 III -2〉 과세특례 한도

부여 기간	특례대상 기준	특례 한도
1999. 12. 31 이전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 합계액 5천만원
2000. 1. 1~2000. 12. 31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 합계액 3천만원
2001. 1. 1~2006. 12. 31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

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핵심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신설
 -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반적으로 행사일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일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됨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조)의 제1항 제7호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중복적용 배제)
 - 단, 양도소득대상금액에 「조특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금액(연간 2천만원 이내)은 포함하지 않음
 - 3년간 행사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2019년 현재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주식매수선택권은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힘든 벤처기업들이 인력 확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센티브 제도로 1996년 「증권거래법」에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어 시행, 이후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다가 2007년 제도가 폐지되었음
 - 도입 당시(1996. 12)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을 대상으로 행사이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됨
 - 2000년 비과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됨
 - 2007년 비과세제도가 폐지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이후 정부가 ‘혁신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제도를 재도입함
 - 2014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 1억원 이하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1년간 보유를 조건으로 신설
 - 2016. 1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가 이하로 발행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2016. 12. 20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 조정

〈표 III-3〉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 주요 연혁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2015. 1. 1 [법률 제12853호]	○ 제도 재도입
2017. 1. 1 [법률 제14390호]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 변경 - 행사가액: 연간 1억원 → 3년간 5억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3. 주요국의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에서는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도 시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미국의 경우, 공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시점에, 공정가격이 없는 경우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함(두 경우 모두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됨)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자 양도 시 과세(자본이득), 법인은 비용으로 불인정
 - *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행사 가능, 이전불가, 행사가액 10만달러 이하
 -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

<표 III-4> 미국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비적격 주식매수선택권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
의의	행사가격, 행사기간 제약 없음	옵션 2년 보유, 이전불가, 직원은 총주식의 10% 미만 소유, 직원은 연간 행사가액 10만달러 이하 옵션 취득 등
교부시점	근로소득 과세 (공정가치 존재시)	근로소득 과세 ×
	법인 손금인정	법인 손금 불인정
행사시점	근로소득 과세 (공정가치 부존재시)	근로소득 과세 ×
	법인 손금인정	법인 손금 불인정
주식 처분시점	양도소득 과세(저율)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출처: <https://www.irs.gov/taxtopics/tc427>

- 일본의 경우에는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됨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자 양도 시 과세(자본이득), 법인은 비용으로 불인정
 - *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행사 가능, 이전불가, 행사가액 1,200만엔 이하

<표 III-5> 일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일반적 주식매수선택권	세법적격 주식매수선택권
의의	-	옵션 2년 경과 후 행사, 이전불가, 연간 옵션행사 불입액 합계액이 1,200만엔 이하일 것 등
행사시점	근로소득 과세	근로소득 과세 ×
	법인 손금 인정	법인 손금 불인정
주식 처분시점	양도소득 과세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출처: <http://blog.accountingintelligence.jp/2017/07/japanese-qualified-stock-options/>
<https://shimada-associates.com/en/filing-a-tax-return-for-restricted-stock-units-rsus-in-japan.html>

- 영국의 경우, 모든 회사에서 적용 가능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I 과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적격주식매수선
택권 II 제도를 구분하여 운영함

<표 III-6> 영국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I (Company Share Option Plan)	적격주식매수선택권 II (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s)
대상	모든 회사 적용 가능 부여 인원수 제한 없음	중소기업 (총자산 3,000£ 미만, 상시근로자수 250명 이하)
적용	- 행사 시 비과세 되며, 시가는 행사가가액으로 적용, 최소 3년 이상 보유 후 행사가능 - 처분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연간 11,700£ 이하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 행사 시 비과세, 처분 시 보유기간에 따라 자본이득으로 과세됨 -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 과세시가와 행사가가액의 차액을 소득세로 과세하며, 법인은 손금 산입 가능
요건		참여가능 종업원은 주당 최저 25시간 이상 근무 또는 근로시간의 75%를 해당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며, 회사 총주식의 30% 미만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함
한도	부여시가 기준 3만£/1인당	25만£/1인당(총액 300만£)

출처: <https://www.gov.uk/tax-employee-share-schemes/enterprise-management-incentives-emis>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중소기업,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과세특례 요건 및 혜택을 정하고 있음

<표 III-7> 싱가포르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일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적용	- 최초행사일로부터 10년간 행사차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세액감면 적용 - 2천싱가포르달러까지는 100%, 2천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액감면	- 1천만싱가포르달러까지 50%의 세액감면	- 1천만싱가포르달러까지 75%의 세액감면
공통	- 적격기업일 것(싱가포르 등록, 싱가포르 소재기업) - 행사가가액이 부여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1년 이후, 행사가가액이 부여일의 주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2년 이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행사 시 소득세 과세됨		
추가요건	-	- 25%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니어야 함 - 주당 30시간 이상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것	

출처: <https://www.iras.gov.sg/IRASHome>

<https://www.mof.gov.sg>

-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인 프랑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제도(French-qualified share option plan)와 BSPCE(Bons de souscription de parts de créateurs d'entreprise)로 나누어짐
 - 프랑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주로 상장회사나 국외상장회사의 프랑스 자회사에서 이용되는 제도이며, BSPCE는 신설 비상장법인에서 주로 이용되는 제도임
 - 프랑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제도(French-qualified share option plan)
 - (요건 i) 발행 회사는 프랑스 회사의 10% 이상(또는 10% 이상을 보유한 고용회사의 자회사)을 보유한 모회사이어야 하며, 자회사의 임원은 부여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 ii)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임직원에게만 부여 가능함
 - iii) 행사가격은 미리 확정되어야 하며, 유상증자 등 자본변동 등으로 인한 사유 이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iv)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 또는 거래가 불가능함
 - (부여 시) 소득세 비과세
 - (행사 시) 원칙적으로 행사 시 과세되지 않지만, 행사가격이 부여일 전 거래일 기준 거래가격 평균의 95% 미만이거나 회사의 평균 주식매입가격의 95% 미만인 경우 해당 차액은 과세대상이 됨
 -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 행사차액과 시가의 차이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 BSPCE(Bons de souscription de parts de créateurs d'entreprise)
 - 행사기간,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을 주주가 승인해야 하고, 주주는 대상자 명단과 발행할 수량을 정해야 함
 - 통상 자본금 1억 5천만유로 이하의 EU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비상장기업일 것
 - 업력이 15년 이하이면서 개인주주 지분율이 25% 이상 또는 개인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일 것
 - (부여 시) 소득세 비과세
 - (행사 시) 회사 및 종업원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
- 독일은 적격/비적격을 구분하여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구체적인 조세특례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부여 시) 비과세
 - (행사 시) 소득세 과세: 최대 47.5%의 소득세 과세
 - (처분 시) 자본이득세 과세: 일반적으로 26.375%
-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례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및 프랑스였음
- 미국, 일본, 영국 및 프랑스는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IV. 경제적 효과 분석



IV. 경제적 효과 분석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수효과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귀속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각각 12개 및 34개 기업으로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과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수는 각각 51명(2017년) 217명(2018년)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의 입주지역이 대부분 서울권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 2017년 및 2018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 1,070만원, 1억 2,830만원으로 나타남

<표 IV-1>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근로소득자의 특성 I

(단위: 명, 천주, 백만원)

구분	인원수	행사이익		지급수량		총급여	
		계	1인당	계	1인당	계	1인당
2017년	51	12,350	242.16	1,004	19.69	5,645	110.69
강원도	2	1,000	500.00	12	6.00	312	156.00
경기도	11	2,618	238.00	172	15.64	789	71.73
대전광역시	4	385	96.25	101	25.25	151	37.75
부산광역시	9	1,619	179.89	183	20.33	1,703	189.22
서울특별시	25	6,728	269.12	537	21.48	2,691	107.64
2018년	217	47,908	220.77	6,409	29.53	27,851	128.35
경기도	85	19,221	226.13	2,919	34.34	8,342	98.14
대전광역시	15	4,362	290.80	102	6.80	706	47.07
부산광역시	3	1,500	500.00	50	16.67	135	45.00
서울특별시	94	18,300	194.68	2,997	31.88	17,189	182.86
인천광역시	10	805	80.50	74	7.40	619	61.90
충청북도	10	3,720	372.00	267	26.70	860	86.00
총합계	268	60,257	224.84	7,413	27.66	33,495	124.98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7~2018년 귀속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과 방송통신업의 총급여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책별로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임원과 일반의 총급여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원 외 근로소득자의 과세특례 신청이 크게 증가하였음
- 현행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은 직책에 상관없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근로소득자의 특성 II

(단위: 명, 천주, 백만원)

구분	인원수	행사이익		지급수량		총급여	
		계	1인당	계	1인당	계	1인당
2017년	51	12,350	242.16	1,004	19.69	5,645	110.69
서비스업	36	8,567	237.97	722	20.06	4,436	123.22
제조업	15	3,783	252.20	282	18.80	1,209	80.60
2018년	217	47,908	220.77	6,409	29.53	27,851	128.35
도매업	19	1,506	79.26	155	8.16	948	49.89
방송통신업	1	164	164.00	24	24.00	331	331.00
서비스업	133	29,579	222.40	5,323	40.02	22,303	167.69
제조업	64	16,657	260.27	907	14.17	4,268	66.69
총합계	268	60,257	224.84	7,413	27.66	33,495	124.98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IV-3>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 근로소득자의 특성 III

(단위: 명, 천주, 백만원)

구분	인원수	행사이익		지급수량		총급여	
		계	1인당	계	1인당	계	1인당
2017년	51	12,350	242.16	1,004	19.69	5,645	110.69
임원	18	5,966	331.44	670	37.22	3,090	171.67
일반	33	6,384	193.45	335	10.15	2,555	77.42
2018년	217	47,908	220.77	6,409	29.53	27,851	128.35
임원	65	20,407	313.95	4,851	74.63	8,207	126.26
일반	152	27,501	180.93	1,558	10.25	19,643	129.23
총합계	268	60,257	224.84	7,413	27.66	33,495	124.98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기존 조세지출예산서 및 비용추계서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할 적이 없어 본 연구에서 세수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우선 2017년 및 2018년 귀속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7~2018년 귀속분 행사이익을 포함한 결정세액을 도출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함
 - 3년간 행사이익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5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경우 5억원으로 적용하여 계산
 - 단, 벤처기업 과세특례를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가정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세수효과를 추계하고자 함
 - 세수효과 = {[행사이익 + 기존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기존 결정세액

- 2017년 및 2018년 귀속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세수효과는 각각 43.71억원(2017년) 172.33억원(2018년)으로 추정됨
 - 2017년 대비 2018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관찰됨

〈표 IV-4〉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효과 I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수	행사이익	행사이익 포함여부 결정세액		세수효과 (A-B)
			포함(A)	미포함(B)	
2017년	51	123.50	54.80	11.09	43.71
서비스업	36	85.67	40.05	9.79	30.26
임원	11	38.27	21.03	6.65	14.38
일반	25	47.40	19.03	3.14	15.89
제조업	15	37.83	14.75	1.3	13.45
임원	7	21.38	8.77	0.96	7.81
일반	8	16.44	5.98	0.34	5.64
2018년	217	479.08	235.91	63.57	172.33
도매업	19	15.06	4.12	0.35	3.77
임원	5	5.57	1.88	0.20	1.68
일반	14	9.49	2.24	0.15	2.09
방송통신업	1	1.64	1.54	0.88	0.65
일반	1	1.64	1.54	0.88	0.65
서비스업	133	295.79	168.48	58.45	110.03
임원	42	144.86	68.76	12.49	56.27
일반	91	150.93	99.72	45.96	53.76
제조업	64	166.57	61.76	3.88	57.88
임원	18	53.63	20.65	1.24	19.40
일반	46	112.94	41.12	2.64	38.48
총합계	268	602.57	290.71	74.66	216.04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계획이 있는 벤처기업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3.9%) 향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가 지속적이고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이후부터 소득세율의 체계가 변동되었으므로 연도별 분석 및 향후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2017년에 추정된 세수효과를 2019년 적용 세율로 재계산하여 추정하고자 함
 - 2018년 이후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변동되어 이를 적용하여 재계산하여 세수효과를 추정하였고, 향후 세수효과에서도 2018년 적용 소득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표 IV-5〉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효과 II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수	행사이익	행사이익 포함여부 결정세액		세수효과 (A-B)
			포함(A)	미포함(B)	
2017년	51	123.50	55.55	11.28	44.27
서비스업	36	85.67	40.67	9.98	30.69
임원	11	38.27	21.47	6.79	14.69
일반	25	47.40	19.19	3.19	16.00
제조업	15	37.83	14.88	1.30	13.59
임원	7	21.38	8.85	0.96	7.90
일반	8	16.44	6.03	0.34	5.69
2018년	217	479.08	235.91	63.57	172.33
도매업	19	15.06	4.12	0.35	3.77
임원	5	5.57	1.88	0.20	1.68
일반	14	9.49	2.24	0.15	2.09
방송통신업	1	1.64	1.54	0.88	0.65
일반	1	1.64	1.54	0.88	0.65
서비스업	133	295.79	168.48	58.45	110.03
임원	42	144.86	68.76	12.49	56.27
일반	91	150.93	99.72	45.96	53.76
제조업	64	166.57	61.76	3.88	57.88
임원	18	53.63	20.65	1.24	19.40
일반	46	112.94	41.12	2.64	38.48
총합계	268	602.57	291.46	74.85	216.60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과세특례를 신청한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누적 세수효과는 44.27억원(2017년), 172.33억원(2018년)으로 추정됨
 - 1인당 평균 세수효과는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임원의 직원 대비 임원에 대한 평균 세수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서비스업이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및 2018년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발생한 세수효과를 1인당 금액으로 추정한 결과, 서비스업의 임원에 대한 세수효과가 약 1억 3천만원대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다만, 도매업의 경우 임원에 대한 세수효과는 3,300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세수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6> 2017~2018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1인당 세수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수	행사이익	행사이익 포함여부 결정세액		세수효과 (A-B)
			포함(A)	미포함(B)	
2017년	51	242.15	108.92	22.12	86.81
서비스업	36	237.98	112.96	27.72	85.24
임원	11	347.92	195.22	61.70	133.53
일반	25	189.60	76.77	12.78	63.99
제조업	15	252.17	99.23	8.65	90.57
임원	7	305.49	126.48	13.69	112.79
일반	8	205.52	75.38	4.25	71.14
2018년	217	220.77	108.71	29.30	79.42
도매업	19	79.28	21.70	1.86	19.84
임원	5	111.42	37.63	4.04	33.60
일반	14	67.81	16.00	1.08	14.92
방송통신업	1	164.33	153.92	88.47	65.45
일반	1	164.33	153.92	88.47	65.45
서비스업	133	222.40	126.68	43.95	82.73
임원	42	344.91	163.71	29.74	133.97
일반	91	165.86	109.59	50.51	59.08
제조업	64	260.27	96.50	6.07	90.44
임원	18	297.96	114.71	6.92	107.79
일반	46	245.52	89.38	5.73	83.65
총합계	268	224.84	108.75	27.93	80.82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7년 대비 2018년에 서비스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한 서비스업의 총급여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규모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므로 전략적으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향후 2019~2021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나리오 I]과 [시나리오 II]로 가정

〈표 IV-7〉 2019~2021년 세수효과 시나리오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기업수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한 기업 수를 가산 적용	2017년 첫 기업 수를 증가 기업 수로 적용
그 외 가정	기업당 평균인원: 2017~2018년 평균 종업원 수 인원수: 기업 수 × 평균 인원수 1인당 세수효과: 2017~2018년 평균 세수효과 누적세수효과: 1인당 세수효과 × 인원수	

자료: 저자 작성

-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하는 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적이 없으며, 연도별 평균 200개 기업을 넘은 적이 없음
 - 1인당 평균 세수효과는 2017~2018년에 큰 변동이 없으며, 2019년 기준 [시나리오 I]의 경우 약 248억원, [시나리오 II]의 경우 약 203억원으로 추정

〈표 IV-8〉 [시나리오 I]의 세수효과 추정 결과

(단위: 개, 명, 백만원,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 수	12	34	56	78	100
인원수	51	217	298	415	532
1개 기업당 평균 인원	4.25	6.38	5.32	5.32	5.32
1인당 세수효과	86.81	79.42	83.12	83.12	83.12
누적 세수효과	44.27	172.33	247.63	344.91	442.20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IV-9> [시나리오 II]의 세수효과 추정 결과

(단위: 개, 명, 백만원,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업 수	12	34	46	58	70
인원수	51	217	245	309	372
1개 기업당 평균 인원	4.25	6.38	5.32	5.32	5.32
1인당 세수효과	86.81	79.42	83.12	83.12	83.12
누적 세수효과	44.27	172.33	203.41	256.48	309.54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본 연구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별지의 6호의 8 서식자료상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서
 -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행사이익 숫자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일례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행사이익 금액 한도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5억원으로 제한하여 분석한 결과임
 - 또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시점의 양도소득세 대상 시점을 상장기업의 주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 즉, 본 연구의 세수효과 추정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의 최댓값이라고 볼 수 있음

2.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기업의 특성 분석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3개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한 벤처기업은 449개 기업으로 이 중 Kis-Value상 재무자료가 확보된 기업은 148개 기업이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업종 및 총 자산으로 매칭하여 분석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한 벤처기업 및 비교분석되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하거나 신청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11개 기업으로 나타남
 - 외감법 대상 기업으로 재무자료가 외부에 공시되는 기업

- 재무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외감법 대상 기업으로 실제 과세특례를 신청한 기업 수(46개 기업)와 차이가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임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의 특성과 거의 유사하지만, 사업영위기간은 짧은 편으로 나타남

<표 IV-10> 주식매수선택권 및 과세특례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과세특례기업(11개)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148개)	주식매수선택권 미신청기업(148개)
상장기업	4개(36.4%)	49개(33.1%)	32개(21.5%)
자회사 해당	2개(18.2%)	53개(35.8%)	46개(30.9%)
대주주지분율	12.34%	12.99%	5.6%
사업영위기간	10.1년	12.07년	16.40년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 2014~2018년 평균 5년 동안의 재무정보 특성을 살펴보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의 규모가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총자산규모(397.8억원)는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321.2억원) 및 다른 벤처기업(278.8억원)보다 큰 편이나, 유형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평균값은 각각 -28.4억원 및 -46.6억원으로 비교분석대상 기업들에 비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 총급여(14.8억원)는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24.8억원) 및 다른 벤처기업(16.6억원)에 비해 적음
 - 즉,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큰 벤처기업에서 고급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IV-11> 과세특례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단위: 억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대값
총자산	397.8	952.0	49.7	150.0	170.8	3260.0
총부채	143.3	217.7	12.7	105.4	151.1	772.9
유형자산	28.8	41.4	1.8	13.7	57.2	132.7
매출총이익	34.6	39.7	0.7	21.9	51.4	127.0
총급여	14.8	15.7	6.9	8.7	17.7	57.6
영업이익	-28.4	77.7	-41.3	0.0	10.5	21.8
당기순이익	-46.6	149.8	-17.4	0.0	15.3	19.3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IV-12>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단위: 억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댓값
총자산	321.2	685.0	75.6	162.6	357.0	12,530.4
총부채	155.0	490.9	18.3	62.4	151.3	11,225.3
유형자산	63.2	124.9	2.4	19.4	75.7	2,323.8
매출총이익	100.8	291.5	3.1	35.6	95.7	4,706.9
총급여	24.8	43.1	6.3	12.9	26.6	540.2
영업이익	17.3	149.0	-11.5	2.8	20.7	2,875.3
당기순이익	0.5	129.7	-16.3	0.7	16.2	1,546.1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표 IV-13> 주식매수선택권 미신청기업의 평균적인 재무정보 특성

(단위: 억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제1사분위수	중위수	제3사분위수	최댓값
총자산	278.8	313.5	115.6	183.7	304.3	2,844.2
총부채	135.6	153.5	60.6	95.1	157.4	1,774.8
유형자산	88.0	88.1	25.5	63.7	118.6	553.5
매출총이익	56.8	69.8	17.8	35.7	66.2	666.4
총급여	16.6	17.6	6.7	11.5	19.2	165.2
영업이익	11.4	41.8	0.2	7.6	17.9	369.6
당기순이익	6.5	42.8	0.0	5.4	13.9	346.3

자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신청 벤처기업의 특성 분석

- 주식매수선택권 신청 및 미신청 벤처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과 업종 및 매출액 등을 연결하여 추출한 비교집단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인식 및 현황을 조사해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는 분석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표 IV-14> 조사 설계

구 분	제도 수혜 대상기업(분석집단)	비교집단기업(비교집단)
조사 대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	수혜 대상기업과 업종 및 매출액 등의 자료를 연결하여 추출한 기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Fax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 Fax 조사
표본 수	50개	50개
조사 기간	2019년 7월 23일~8월 2일	2019년 7월 23일~8월 2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설문조사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의 정책목적이 벤처기업의 고급인재 확보에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인력 구인의 어려움 및 주식매수선택권 활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설문문항을 작성하였음
- 그 밖에 지분구조, 자금조달 방법,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IV-15> 조사 세부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인력 및 조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원 학력별 인력구성비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직급 및 이유
재무구조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지분 비율 신규 자금조달 규모 및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상황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목적 및 미활용 이유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인식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정부 정책지원 이용 경험 및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계획 과세특례 미적용 이유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 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IV-16>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분석집단	비교집단
전체		100	50	50
업종	제조업	72	29	43
	도매 및 소매업	3	3	-
	정보통신업	5	3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14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15	16
	50명 이상 100명 미만	34	16	18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4	13	11
	200명 이상	11	6	5
상장시장	코스닥	34	20	14
	코넥스	3	1	2
	비상장	63	29	34
설립연도	1900년대	18	2	16
	2000년대	48	24	24
	2010년대	34	24	1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26	41
	아니오	33	24	9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	-
	초기성장기	18	9	9
	고도성장기	64	39	25
	성숙기	16	1	15
	쇠퇴기	1	-	1
목표시장	국내	17	6	11
	해외	5	2	3
	국내+해외	78	42	36
창업방식	타 기업 분사 또는 계열사	12	8	4
	창업보육과정	6	6	-
	독자적	82	36	46

가. 인력 및 조직 특성

1)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력 수

- 벤처기업 종사자의 직종별 인력구성은 생산직이 평균 3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R&D 23.2명, 관리직 19.5명, 영업 11.5명, 기타 2.7명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생산직이 가장 많고 이어서 R&D, 관리직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분석집단 인력 전체 평균 97.8명
(생산 38.7명 > R&D 21.7명 > 관리 20.7명 > 영업 13.5명 > 기타 3.3명)
 - 비교집단 인력 전체 평균 90.4명
(생산 35.7명 > R&D 24.7명 > 관리 18.4명 > 영업 9.5명 > 기타 2.1명)
- 벤처기업의 부족 인력 수는 평균 0.8명이며,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0.4명, R&D 0.2명, 영업 및 기타 0.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간의 부족 인력 수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집단 전체 부족 인력수 평균 0.8명
 - 비교집단 전체 부족 인력수 평균 0.9명

<표 IV-17>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원 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생산	R&D	관리	영업	기타	합계
근무 인력 수	전체	(100)	37.2	23.2	19.5	11.5	2.7	94.1
	분석집단	(50)	38.7	21.7	20.7	13.5	3.3	97.8
	비교집단	(50)	35.7	24.7	18.4	9.5	2.1	90.4
부족 인력 수	전체	(100)	0.0	0.4	0.1	0.2	0.1	0.8
	분석집단	(50)	0.3	0.3	0.0	0.1	0.0	0.8
	비교집단	(50)	0.4	0.2	0.0	0.0	0.3	0.9

2)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 벤처기업 종사자의 학력별 인력구성은 대졸이 44.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고졸이 27.1%, 전문대졸이 19.2%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대졸 이상 학력의 인력 구성 비율이 더 높음
 - 특히 대졸 직원의 구성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음(분석집단 52.9%, 비교집단 36.5%, Gap ±16.4%p)
 - 반면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인력 구성 비율은 비교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V-18>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단위: %)

	사례수	대졸	고졸	전문대졸	석사	박사	중졸이하
전체	(100)	44.7	27.1	19.2	5.5	2.8	0.7
분석집단	(50)	52.9	20.2	16.0	7.2	3.5	0.2
비교집단	(50)	36.5	33.9	22.5	3.8	2.1	1.2

3)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

-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으로는 R&D 인력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중간관리자급 인력 34.0%, 생산기능 인력 27.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R&D 인력을 구하기 가장 어려운 직무로 응답함
 - 그다음으로 분석집단은 인사 및 조직관리 인력(36.0%)을 꼽은 반면, 비교집단은 생산기능 인력(40.0%)을 꼽음

<표 IV-19>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_1+2순위

(단위: %)

	사례수	R&D 인력	중간관리자급 인력	생산기능 인력	인사 및 조직관리 인력	영업 및 마케팅 인력	경영기획 및 전략 인력	재무관리 인력	임원급 인력
전체	(100)	44.0	34.0	27.0	26.0	24.0	22.0	12.0	6.0
분석집단	(50)	42.0	32.0	14.0	36.0	26.0	28.0	12.0	8.0
비교집단	(50)	46.0	36.0	40.0	16.0	22.0	16.0	12.0	4.0

4)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

-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낮음이 53.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직장의 안정성(49.0%),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36.0%),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31.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에서는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간 모두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0>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_1+2순위

(단위: %)

	사례수	개인의 발전 가능성	직장의 안정성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	회사의 위치	과도한 근무시간	기타
전체	(100)	53.0	49.0	36.0	31.0	16.0	13.0	2.0
분석집단	(50)	56.0	52.0	32.0	32.0	10.0	14.0	4.0
비교집단	(50)	50.0	46.0	40.0	30.0	22.0	12.0	0.0

나. 재무구조 특성

1)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

- 회사의 보유지분으로는 창업자가 41.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개인투자자(18.9%), 일반 임직원(11.7%)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창업자의 보유지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분석집단(36.5%)은 비교집단(47.0%)에 비해 10.5%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벤처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의 보유지분 비율은 분석집단(14.6%)이 비교집단(2.9%)에 비해 11.7%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21>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

(단위: %)

	사례수	창업자	개인 투자자	일반 임직원	벤처 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	타기업	창업자 아닌 대표자	대표자의 가족/ 친지	창업자의 가족/ 친지	기타
전체	(97)	41.8	18.9	11.7	8.7	4.7	2.9	1.8	1.6	7.8
분석집단	(48)	36.5	19.2	8.0	14.6	7.3	1.5	1.5	2.9	8.6
비교집단	(49)	47.0	18.7	15.4	2.9	2.2	4.4	2.0	0.4	7.0

2) 신규 자금조달 규모

- 최근 3년간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5억 3,800만원으로 나타남
 - 분석집단의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74억 3,800만원이며, 비교집단(15억 7,700만원)에 비해 약 58억 6,0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2> 신규 자금조달 규모

(단위: 백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95)	0	110,000	4,538	13,225
분석집단	(48)	0	110,000	7,438	17,952
비교집단	(47)	0	13,500	1,577	3,231

3) 신규 자금조달 방법

- 신규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은행 등 일반금융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회사채 발행(22.5%), 정부정책지원금(13.6%), 캐피탈/엔젤투자(6.0%), IPO(5.8%)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은 회사채 발행(31.2%), 정부정책 지원금, 은행 등 일반금융을 비슷한 비율로 신규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용하는 반면 비교집단은 70.2%를 은행 등 일반금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집단은 IPO를 활용하는 비율이 0.0%인 반면 비교집단은 14.3%의 비율로 활용함

<표 IV-23> 신규 자금조달 방법

(단위: %)

	사례수	은행 등 일반금융	회사채 발행	정부정책 지원금	캐피탈/엔젤투자	IPO	기타
전체	(52)	42.6	22.5	13.6	6.0	5.8	9.6
분석집단	(31)	23.8	31.2	22.0	10.1	0.0	12.9
비교집단	(21)	70.2	9.5	1.2	0.0	14.3	4.8

4)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여부

- 과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31.0%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활용 중인 기업은 28.0%, 미래에 활용계획은 29.0%로 나타남
 - 분석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주식매수선택권 활용률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V-24>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과거		현재		미래	
		활용	미활용	활용	미활용	활용	미활용
전체	(100)	31.0	69.0	28.0	72.0	29.0	71.0
분석집단	(50)	28.0	72.0	26.0	74.0	26.0	74.0
비교집단	(50)	34.0	66.0	30.0	70.0	32.0	68.0

5)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

-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33.3%), 기업 경영성과 개선(18.2%), 핵심인력 이탈방지(12.1%)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 IV-25>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

(단위: %)

	사례수	우수인력 유입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기업 경영성과 개선	핵심인력 이탈방지
전체	(33)	36.4	33.3	18.2	12.1
분석집단	(14)	42.9	35.7	7.1	14.3
비교집단	(19)	31.6	31.6	26.3	10.5

6)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가 24.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23.0%),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23.0%),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20.3%)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37.8%)를, 비교집단은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37.8%)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26>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사례수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횡령이나 배임 등 법률적 문제야기 소지 내재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 메리트 없음
전체	(74)	24.3	23.0	23.0	20.3	5.4	4.1
분석집단	(37)	10.8	37.8	27.0	18.9	2.7	2.7
비교집단	(37)	37.8	8.1	18.9	21.6	8.1	5.4

다.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인식 및 현황

1) 정책지원제도 인지 여부

-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제도 중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비율이 8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세제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각 79.0%), 입지지원제도(69.0%), 기타 지원제도(65.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창업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금융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및 기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분석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7> 정책지원제도 인지 비율

(단위: %)

	사례수	창업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기타지원제도
전체	(100)	80.0	79.0	79.0	69.0	65.0
분석집단	(50)	76.0	78.0	80.0	74.0	66.0
비교집단	(50)	84.0	80.0	78.0	64.0	64.0

2)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

□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33.0%로 나타남

<표 IV-28>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	33.0	67.0
분석집단	(50)	38.0	62.0
비교집단	(50)	28.0	72.0

□ 정책지원 중 R&D자금을 받은 경험이 90.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융자(57.6%),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39.4%)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은 주로 R&D 자금(100.0%), 융자(63.2%)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 행사이익 비과세 및 과세특례 지원은 분석집단의 21.1%가 이용 경험이 있는 반면 비교집단은 이용 비율이 0.0%로 나타남
- 보증서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원은 분석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의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산업재산권 출자 지원은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9>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세부항목

(단위: %)

	사례수	R&D 자금	융자	보증서 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주식매수선택 행사이익 비과세 및 과세특례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산업재산권 출자	입지 지원	기타
전체	(33)	90.9	57.6	12.1	39.4	24.2	12.1	0.0	3.0	6.1
분석집단	(19)	100.0	63.2	5.3	21.1	10.5	21.1	0.0	5.3	5.3
비교집단	(14)	78.6	50.0	21.4	64.3	42.9	0.0	0.0	0.0	7.1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

-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거나 적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71.4%로 나타남
 - 분석집단의 84.6%, 비교집단의 60.0%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표 IV-3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8)	71.4	28.6
분석집단	(13)	84.6	15.4
비교집단	(15)	60.0	40.0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이 5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37.5%),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25.0%) 등의 순서로 나타남

<표 IV-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
전체	(8)	50.0	37.5	25.0
분석집단	(2)	100.0	50.0	0.0
비교집단	(6)	33.3	33.3	33.3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회계 및 세무담당자의 인원 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이 45.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40.0%),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30.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은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회계 및 세무담당자의 인원 부족·업무상 어려움이 각각 36.4%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남
- 반면 비교집단은 회계 및 세무담당자의 인원 및 부족·업무상 어려움이 55.6%의 비율로 1순위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표 IV-3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회계 및 세무 담당자의 인원 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부족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
전체	(20)	45.0	40.0	30.0	20.0	5.0	5.0
분석집단	(11)	36.4	36.4	27.3	27.3	9.1	0.0
비교집단	(9)	55.6	44.4	33.3	11.1	0.0	11.1

6)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

-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신기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이 각 34.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연구활동을 위한 실습실, 기자재 및 인프라 등 지원(27.0%),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26.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분석집단은 신기술 및 연구활동 지원(38.0%)을 , 비교집단은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38.0%)을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로 꼽음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 분석집단은 3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교집단은 20.0%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기업운영에 대한 인사/재무/영업/생산 등의 교육지원에 대해 분석집단은 비교집단 대비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3>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신기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	연구활동을 위한 실습실, 기자재 및 인프라 등 지원	주식매수 선택권 제도에 대한 지원확대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기업운영에 대한 인사/재무/영업/생산 등의 교육 지원
전체	(100)	34.0	34.0	27.0	26.0	20.0	17.0
분석집단	(50)	30.0	38.0	22.0	32.0	10.0	8.0
비교집단	(50)	38.0	30.0	32.0	20.0	30.0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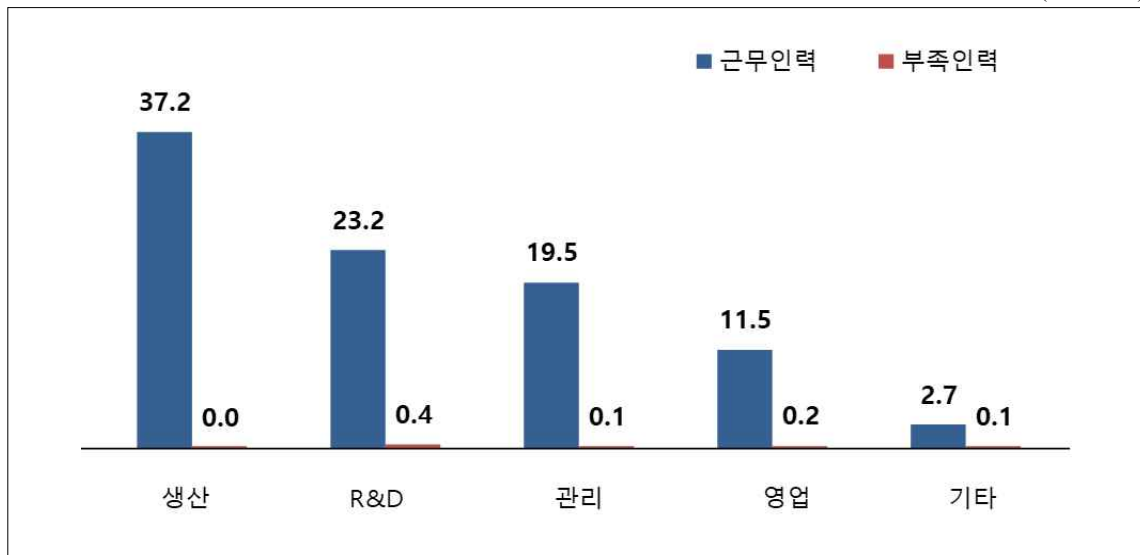
라. 구체적인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력 수

- 벤처기업 종사자의 직종별 인력구성은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생산직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분석집단 평균 38.7명, 비교집단 평균 35.7명)
- 분석집단은 평균 0.8명, 비교집단은 평균 0.9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력

(단위: 명)



<표 IV-34> 종사자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인원 수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생산	R&D	관리	영업	기타	합계
근무 인력 수	전체	(100)	37.2	23.2	19.5	11.5	2.7	94.1
	분석집단	(50)	38.7	21.7	20.7	13.5	3.3	97.8
	비교집단	(50)	35.7	24.7	18.4	9.5	2.1	90.4
부족 인력 수	전체	(100)	0.0	0.4	0.1	0.2	0.1	0.8
	분석집단	(50)	0.3	0.3	0.0	0.1	0.0	0.8
	비교집단	(50)	0.4	0.2	0.0	0.0	0.3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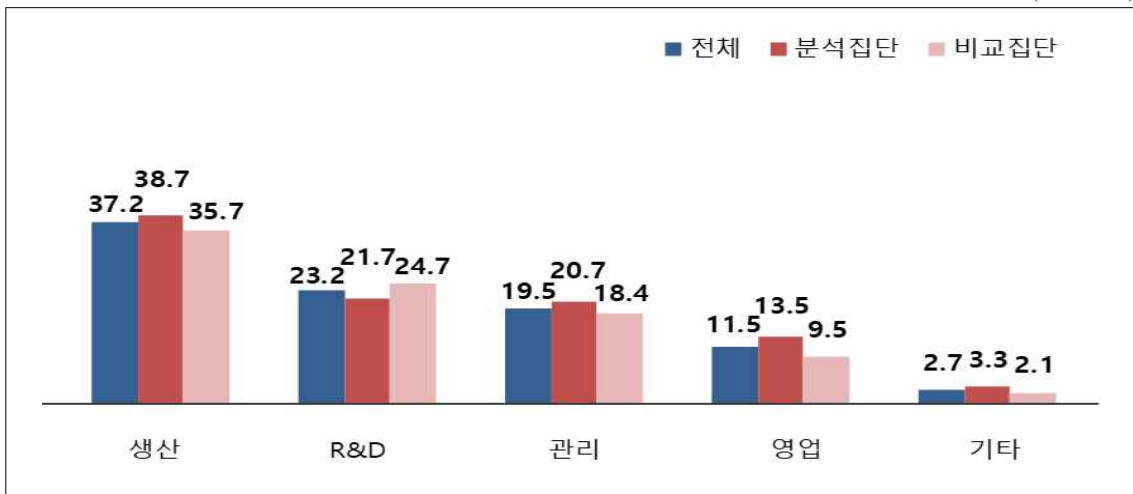
1-1) 직종별 인력구성

- 전체 평균 인력은 94.1명이며, 직종 중 생산직 평균 인원이 37.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분석집단의 평균 인력은 97.8명이며, 생산직이 38.7명으로 가장 많음
 - 비교집단의 평균 인력은 90.4명이며, 생산직이 35.7명으로 가장 많음

- 생산, 관리, 영업 및 기타 부문에서 분석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 인원수가 많은 반면 R&D 부문에서는 분석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 인원수가 3.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보통신업,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정보통신업 ±130.0명, 기술서비스업 ±54.9명)

[그림 IV-2] 직종별 인력구성

(단위: 명)



<표 IV-35> 직종별 인력구성_전체

(단위: 명)

		사례수	생산	R&D	관리	영업	기타	합계
전체		(100)	37.2	23.2	19.5	11.5	2.7	94.1
집단유형	분석집단	(50)	38.7	21.7	20.7	13.5	3.3	97.8
	비교집단	(50)	35.7	24.7	18.4	9.5	2.1	90.4
업종	제조업	(72)	48.0	15.1	19.3	11.7	1.8	95.8
	도·소매업	(3)	14.3	2.3	36.7	65.0	0.0	118.3
	정보통신업	(5)	31.8	56.0	20.4	4.6	0.0	112.8
	기술서비스업	(19)	3.1	49.9	16.4	4.3	7.1	80.8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0.0	40.0	10.0	5.0	55.0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11.0	9.5	7.5	2.7	0.2	31.0
	50~99명	(34)	25.1	13.1	15.4	7.9	2.4	64.1
	100~199명	(24)	43.8	37.8	31.6	18.4	7.5	139.1
	200명 이상	(11)	133.5	60.9	39.7	32.5	0.0	266.6
상장시장	코스닥	(34)	56.8	29.3	26.6	19.9	1.6	134.1
	코넥스	(3)	5.7	46.7	24.7	13.3	0.0	90.3
	비상장	(63)	28.1	18.8	15.5	6.9	3.4	72.7
설립연도	1900년대	(18)	45.8	16.1	25.1	13.9	0.1	101.1
	2000년대	(48)	33.1	28.6	16.9	11.9	5.1	95.6
	2010년대	(34)	38.3	19.4	20.4	9.7	0.6	88.4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32.7	24.4	18.1	10.2	3.9	89.3
	아니오	(33)	46.2	20.8	22.5	14.2	0.2	103.9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9.0	2.0	10.0	3.0	0.0	34.0
	초기성장기	(18)	35.0	16.8	19.5	9.3	0.0	80.6
	고도성장기	(64)	38.5	28.6	20.0	12.3	3.1	102.5
	성숙기	(16)	35.4	11.3	18.7	11.9	4.1	81.4
	쇠퇴기	(1)	37.0	2.0	14.0	4.0	4.0	61.0
목표시장	국내	(17)	30.9	11.1	14.2	8.2	0.1	64.6
	해외	(5)	14.0	23.4	25.8	22.8	9.6	95.6
	국내+해외	(78)	40.0	25.8	20.3	11.5	2.8	100.4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80.3	21.6	28.5	23.1	3.5	157.0
	창업보육과정	(6)	5.0	13.7	10.5	1.3	0.5	31.0
	독자적	(82)	33.2	24.1	18.9	10.6	2.7	89.5

<표 IV-36> 직종별 인력구성_분석집단

(단위: 명)

		사례수	생산	R&D	관리	영업	기타	합계
전체		(50)	38.7	21.7	20.7	13.5	3.3	97.8
업종	제조업	(29)	58.7	19.6	23.3	14.4	0.8	116.8
	도·소매업	(3)	14.3	2.3	36.7	65.0	0.0	118.3
	정보통신업	(3)	53.0	4.0	16.7	4.3	0.0	78.0
	기술서비스업	(14)	2.0	35.5	11.2	2.9	9.6	61.2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0.0	40.0	10.0	5.0	55.0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6.5	14.7	7.9	2.1	0.2	31.3
	50~99명	(16)	20.3	16.7	16.5	6.2	2.3	61.9
	100~199명	(13)	37.6	34.5	32.3	21.6	9.5	135.6
	200명 이상	(6)	170.3	24.7	38.3	44.2	0.0	277.5
상장시장	코스닥	(20)	65.6	20.1	27.6	22.5	0.3	136.0
	코넥스	(1)	0.0	0.0	10.0	10.0	0.0	20.0
	비상장	(29)	21.4	23.5	16.2	7.5	5.4	74.1
설립연도	1900년대	(2)	160.0	20.0	25.0	25.0	0.0	230.0
	2000년대	(24)	29.7	29.9	20.4	14.5	6.0	100.6
	2010년대	(24)	37.5	13.6	20.5	11.6	0.8	84.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6)	29.4	21.0	16.6	10.4	6.1	83.5
	아니오	(24)	48.7	22.4	25.0	16.9	0.2	113.3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9.0	2.0	10.0	3.0	0.0	34.0
	초기성장기	(9)	26.8	16.0	15.2	13.1	0.0	71.1
	고도성장기	(39)	42.6	23.8	22.4	13.9	3.8	106.5
	성숙기	(1)	11.0	10.0	14.0	12.0	13.0	60.0
목표시장	국내	(6)	25.5	18.8	20.2	11.7	0.0	76.2
	해외	(2)	20.0	14.0	15.0	41.5	0.0	90.5
	국내+해외	(42)	41.4	22.5	21.0	12.5	3.9	101.2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107.0	21.5	26.9	30.0	5.3	190.6
	창업보육과정	(6)	5.0	13.7	10.5	1.3	0.5	31.0
	독자적	(36)	29.1	23.1	21.0	11.9	3.3	88.3

<표 IV-37> 직종별 인력구성_비교집단

(단위: 명)

		사례수	생산	R&D	관리	영업	기타	합계
전체		(50)	35.7	24.7	18.4	9.5	2.1	90.4
업종	제조업	(43)	40.7	12.0	16.6	9.9	2.4	81.7
	정보통신업	(2)	0.0	134.0	26.0	5.0	0.0	165.0
	기술서비스업	(5)	6.2	90.4	31.0	8.2	0.0	135.8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15.3	4.8	7.1	3.4	0.1	30.6
	50~99명	(18)	29.4	10.0	14.5	9.4	2.6	65.9
	100~199명	(11)	51.1	41.6	30.8	14.6	5.1	143.3
	200명 이상	(5)	89.2	104.4	41.4	18.6	0.0	253.6
상장시장	코스닥	(14)	44.2	42.4	25.2	16.3	3.4	131.6
	코넥스	(2)	8.5	70.0	32.0	15.0	0.0	125.5
	비상장	(34)	33.7	14.8	14.8	6.4	1.7	71.4
설립연도	1900년대	(16)	31.6	15.6	25.1	12.6	0.1	84.9
	2000년대	(24)	36.5	27.3	13.3	9.3	4.1	90.5
	2010년대	(10)	40.2	33.2	19.9	5.2	0.4	98.9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1)	34.8	26.5	19.0	10.1	2.6	93.0
	아니오	(9)	39.8	16.4	15.8	6.9	0.0	78.9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9)	43.2	17.7	23.8	5.4	0.0	90.1
	고도성장기	(25)	32.1	36.2	16.3	9.8	1.9	96.3
	성숙기	(15)	37.0	11.4	19.0	11.9	3.5	82.8
	쇠퇴기	(1)	37.0	2.0	14.0	4.0	4.0	61.0
목표시장	국내	(11)	33.9	6.9	11.0	6.4	0.2	58.4
	해외	(3)	10.0	29.7	33.0	10.3	16.0	99.0
	국내+해외	(36)	38.3	29.8	19.4	10.4	1.5	99.5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27.0	21.8	31.8	9.3	0.0	89.8
	독자적	(46)	36.4	25.0	17.2	9.6	2.3	90.5

2)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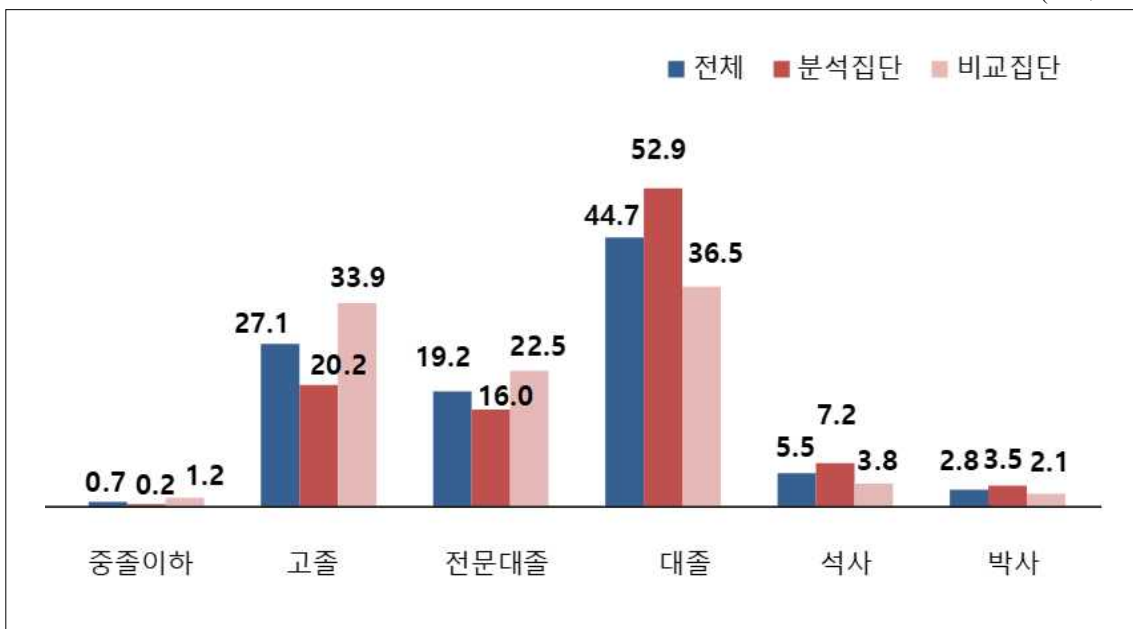
- 학력별 인력구성은 대졸이 44.7%로 절반 가까이로 나타남
 - 분석집단의 대졸 구성비가 52.9%로, 비교집단(36.5%)에 비해 16.4%p 높음
 - 특히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약 13%p)

- 대졸 이상의 인력구성비를 살펴보면 분석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문대졸 이하는 분석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특히 고졸 인력구성비의 차이가 ±13.7%p로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IV-3] 종사자 학력별 인력구성

(단위: %)



<표 IV-38> 학력별 인력구성_전체

(단위: %)

		사례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100)	0.7	27.1	19.2	44.7	5.5	2.8
집단유형	분석집단	(50)	0.2	20.2	16.0	52.9	7.2	3.5
	비교집단	(50)	1.2	33.9	22.5	36.5	3.8	2.1
업종	제조업	(72)	1.0	33.0	20.6	39.2	4.4	1.8
	도·소매업	(3)	0.0	33.3	22.3	43.3	0.7	0.3
	정보통신업	(5)	0.0	16.0	14.0	56.0	8.0	6.0
	기술서비스업	(19)	0.0	6.4	14.4	63.2	9.8	6.2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30.0	30.0	4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0.0	28.2	14.8	47.7	5.5	3.8
	50~99명	(34)	0.6	28.2	20.8	41.4	5.9	3.0
	100~199명	(24)	1.2	25.5	20.6	46.1	4.8	1.9
	200명 이상	(11)	1.8	23.7	23.8	43.6	5.7	1.3
상장시장	코스닥	(34)	0.6	19.6	15.2	49.0	10.2	5.4
	코넥스	(3)	0.0	3.3	25.0	69.3	2.0	0.3
	비상장	(63)	0.8	32.2	21.1	41.3	3.1	1.5
설립연도	1900년대	(18)	0.8	36.1	19.6	40.3	2.7	0.6
	2000년대	(48)	0.7	27.2	21.6	42.7	5.8	2.0
	2010년대	(34)	0.6	22.1	15.7	50.0	6.6	5.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1.0	27.6	20.3	43.0	5.2	2.9
	아니오	(33)	0.0	26.0	17.1	48.2	6.0	2.7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0.0	10.0	90.0	0.0	0.0
	초기성장기	(18)	1.7	17.1	19.2	52.2	6.4	3.3
	고도성장기	(64)	0.3	27.6	18.3	44.5	6.1	3.3
	성숙기	(16)	1.3	36.8	23.0	35.6	2.7	0.7
	쇠퇴기	(1)	0.0	40.0	30.0	3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7)	0.0	50.5	18.5	30.1	0.7	0.2
	해외	(5)	0.0	8.6	28.6	53.0	7.0	2.8
	국내+해외	(78)	0.9	23.1	18.8	47.4	6.4	3.4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0.4	29.2	20.5	41.1	5.6	3.3
	창업보육과정	(6)	0.0	8.0	6.7	68.3	9.2	7.8
	독자적	(82)	0.8	28.1	20.0	43.5	5.2	2.4

<표 IV-39> 학력별 인력구성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50)	0.2	20.2	16.0	52.9	7.2	3.5
업종	제조업	(29)	0.3	26.1	18.0	47.3	6.3	2.0
	도·소매업	(3)	0.0	33.3	22.3	43.3	0.7	0.3
	정보통신업	(3)	0.0	23.3	20.0	56.7	0.0	0.0
	기술서비스업	(14)	0.0	3.6	8.6	66.8	12.6	8.4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30.0	30.0	4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0.0	13.3	9.3	63.1	8.7	5.5
	50~99명	(16)	0.0	23.9	14.4	47.6	9.4	4.7
	100~199명	(13)	0.2	18.1	22.4	55.7	2.9	0.7
	200명 이상	(6)	0.8	31.8	22.8	35.8	7.0	1.7
상장시장	코스닥	(20)	0.3	18.0	14.5	51.0	11.6	4.7
	코넥스	(1)	0.0	0.0	20.0	80.0	0.0	0.0
	비상장	(29)	0.1	22.4	16.9	53.3	4.4	2.9
설립연도	1900년대	(2)	0.0	34.0	20.0	37.5	7.5	1.0
	2000년대	(24)	0.3	18.9	17.4	51.9	7.9	3.6
	2010년대	(24)	0.0	20.3	14.3	55.3	6.5	3.7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6)	0.3	18.3	15.9	52.6	8.2	4.7
	아니오	(24)	0.0	22.2	16.0	53.3	6.1	2.3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0.0	10.0	90.0	0.0	0.0
	초기성장기	(9)	0.0	12.6	12.6	61.1	10.0	3.8
	고도성장기	(39)	0.2	22.8	16.8	49.6	6.9	3.6
	성숙기	(1)	0.0	5.0	20.0	72.0	2.0	1.0
목표시장	국내	(6)	0.0	44.7	20.0	35.0	0.3	0.0
	해외	(2)	0.0	1.5	16.5	60.0	16.0	6.0
	국내+해외	(42)	0.2	17.6	15.4	55.2	7.8	3.9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0.0	30.3	23.4	41.0	4.6	0.8
	창업보육과정	(6)	0.0	8.0	6.7	68.3	9.2	7.8
	독자적	(36)	0.2	20.0	15.9	53.0	7.4	3.4

<표 IV-40> 학력별 인력구성_비교집단

(단위: %)

		사례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50)	1.2	33.9	22.5	36.5	3.8	2.1
업종	제조업	(43)	1.4	37.6	22.3	33.8	3.2	1.7
	정보통신업	(2)	0.0	5.0	5.0	55.0	20.0	15.0
	기술서비스업	(5)	0.0	14.0	30.8	53.0	2.2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0.0	42.1	20.0	33.3	2.4	2.2
	50~99명	(18)	1.2	32.1	26.4	35.9	2.9	1.5
	100~199명	(11)	2.3	34.2	18.5	34.8	7.0	3.3
	200명 이상	(5)	3.0	14.0	25.0	53.0	4.2	0.8
상장시장	코스닥	(14)	1.1	21.9	16.2	46.1	8.3	6.5
	코넥스	(2)	0.0	5.0	27.5	64.0	3.0	0.5
	비상장	(34)	1.4	40.6	24.8	31.0	2.0	0.3
설립연도	1900년대	(16)	0.9	36.3	19.5	40.6	2.1	0.6
	2000년대	(24)	1.1	35.4	25.8	33.5	3.7	0.5
	2010년대	(10)	2.0	26.5	19.3	37.2	6.7	8.3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1)	1.5	33.4	23.0	37.0	3.3	1.7
	아니오	(9)	0.0	36.2	20.0	34.4	5.8	3.6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9)	3.3	21.7	25.9	43.3	2.9	2.9
	고도성장기	(25)	0.4	35.1	20.5	36.4	4.9	2.6
	성숙기	(15)	1.3	38.9	23.2	33.1	2.7	0.7
	쇠퇴기	(1)	0.0	40.0	30.0	3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1)	0.0	53.6	17.7	27.5	0.9	0.3
	해외	(3)	0.0	13.3	36.7	48.3	1.0	0.7
	국내+해외	(36)	1.7	29.6	22.8	38.3	4.9	2.7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1.3	27.0	14.8	41.3	7.5	8.3
	독자적	(46)	1.2	34.5	23.2	36.1	3.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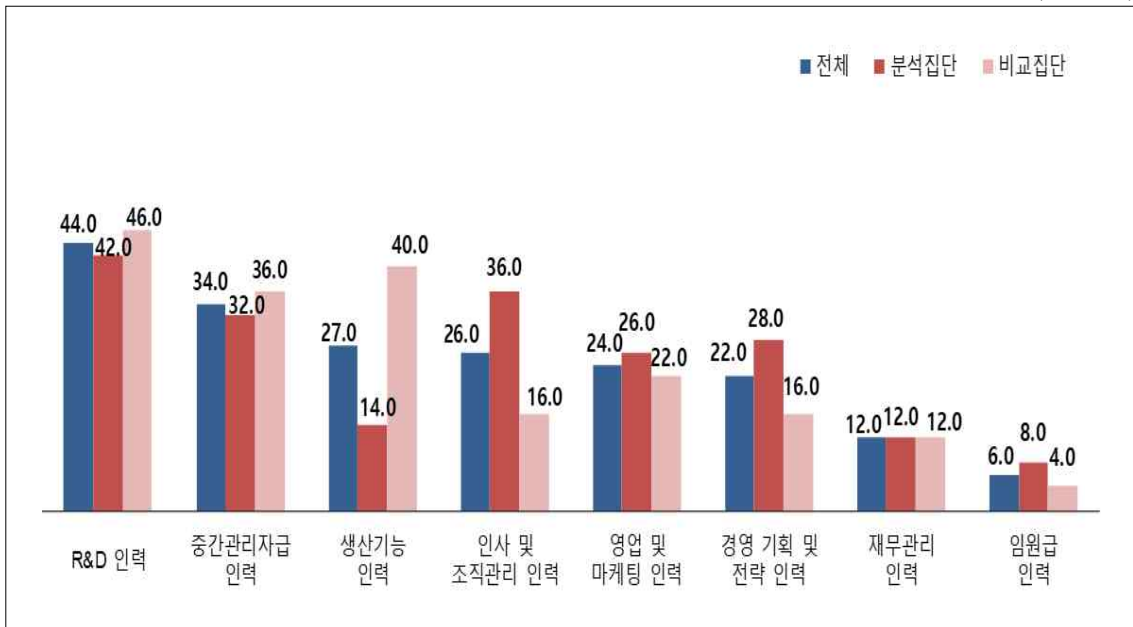
3)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_1+2순위

-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으로 1+2순위 응답 비율 기준 R&D 인력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R&D 인력이 구인하기 가장 어려운 직급인 것으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로 분석집단은 인사 및 조직관리 인력(36.0%), 비교집단에서는 생산기능 인력(40.0%)을 꼽음
 - 이는 비교집단의 경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 분야만 보더라도 비교집단은 생산기능 인력에 대해 46.5%의 비율로 구인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분석집단에서는 20.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V-4]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1+2순위)

(단위: %)



<표 IV-41>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1+2순위)_전체

(단위: %)

		사례수	R&D 인력	중간관 리자급 인력	생산 기능 인력	인사 및 조직 관리 인력	영업 및 마케팅 인력	경영 기획 및 전략 인력	재무 관리 인력	임원급 인력
전체		(100)	44.0	34.0	27.0	26.0	24.0	22.0	12.0	6.0
집단유형	분석집단	(50)	42.0	32.0	14.0	36.0	26.0	28.0	12.0	8.0
	비교집단	(50)	46.0	36.0	40.0	16.0	22.0	16.0	12.0	4.0
업종	제조업	(72)	43.1	34.7	36.1	20.8	27.8	19.4	9.7	4.2
	도·소매업	(3)	0.0	66.7	0.0	0.0	66.7	33.3	0.0	33.3
	정보통신업	(5)	20.0	20.0	0.0	20.0	20.0	40.0	40.0	20.0
	기술서비스업	(19)	63.2	31.6	5.3	47.4	5.3	26.3	10.5	5.3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0.0	0.0	100.0	0.0	0.0	10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32.3	41.9	29.0	25.8	22.6	35.5	6.5	6.5
	50~99명	(34)	52.9	29.4	26.5	29.4	14.7	8.8	23.5	5.9
	100~199명	(24)	50.0	20.8	29.2	16.7	37.5	25.0	8.3	4.2
	200명 이상	(11)	36.4	54.5	18.2	36.4	27.3	18.2	0.0	9.1
상장시장	코스닥	(34)	44.1	29.4	23.5	32.4	23.5	14.7	20.6	8.8
	코넥스	(3)	33.3	66.7	0.0	0.0	33.3	66.7	0.0	0.0
	비상장	(63)	44.4	34.9	30.2	23.8	23.8	23.8	7.9	4.8
설립연도	1900년대	(18)	22.2	38.9	38.9	27.8	27.8	27.8	16.7	0.0
	2000년대	(48)	54.2	31.3	31.3	22.9	25.0	14.6	6.3	6.3
	2010년대	(34)	41.2	35.3	14.7	29.4	20.6	29.4	17.6	8.8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52.2	35.8	32.8	17.9	20.9	17.9	10.4	4.5
	아니오	(33)	27.3	30.3	15.2	42.4	30.3	30.3	15.2	9.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초기성장기	(18)	72.2	27.8	27.8	16.7	16.7	22.2	11.1	5.6
	고도성장기	(64)	37.5	37.5	15.6	34.4	23.4	25.0	14.1	7.8
	성숙기	(16)	37.5	25.0	68.8	6.3	31.3	12.5	6.3	0.0
	쇠퇴기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7)	23.5	29.4	47.1	17.6	35.3	29.4	11.8	5.9
	해외	(5)	60.0	0.0	0.0	20.0	60.0	20.0	40.0	0.0
	국내+해외	(78)	47.4	37.2	24.4	28.2	19.2	20.5	10.3	6.4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25.0	33.3	8.3	33.3	33.3	33.3	16.7	16.7
	창업보육과정	(6)	50.0	66.7	0.0	16.7	0.0	50.0	16.7	0.0
	독자적	(82)	46.3	31.7	31.7	25.6	24.4	18.3	11.0	4.9

<표 IV-42>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1+2순위)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R&D 인력	인사 및 조직 관리 인력	중간관 리자급 인력	경영 기획 및 전략 인력	영업 및 마케팅 인력	생산 기능 인력	재무 관리 인력	임원급 인력	
전체	(50)	42.0	36.0	32.0	28.0	26.0	14.0	12.0	8.0	
업종	제조업	(29)	41.4	34.5	31.0	27.6	31.0	20.7	10.3	3.4
	도·소매업	(3)	0.0	0.0	66.7	33.3	66.7	0.0	0.0	33.3
	정보통신업	(3)	33.3	33.3	0.0	33.3	33.3	0.0	33.3	33.3
	기술서비스업	(14)	57.1	42.9	35.7	28.6	7.1	7.1	7.1	7.1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100.0	0.0	0.0	0.0	0.0	10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40.0	33.3	53.3	40.0	13.3	0.0	6.7	13.3
	50~99명	(16)	50.0	37.5	12.5	12.5	25.0	25.0	31.3	6.3
	100~199명	(13)	46.2	30.8	23.1	38.5	30.8	15.4	0.0	7.7
	200명 이상	(6)	16.7	50.0	50.0	16.7	50.0	16.7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20)	35.0	50.0	25.0	20.0	25.0	15.0	20.0	10.0
	코넥스	(1)	0.0	0.0	100.0	100.0	0.0	0.0	0.0	0.0
	비상장	(29)	48.3	27.6	34.5	31.0	27.6	13.8	6.9	6.9
설립연도	1900년대	(2)	0.0	50.0	50.0	50.0	50.0	0.0	0.0	0.0
	2000년대	(24)	54.2	33.3	29.2	16.7	29.2	29.2	0.0	4.2
	2010년대	(24)	33.3	37.5	33.3	37.5	20.8	0.0	25.0	12.5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6)	57.7	19.2	42.3	19.2	26.9	15.4	7.7	7.7
	아니오	(24)	25.0	54.2	20.8	37.5	25.0	12.5	16.7	8.3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초기성장기	(9)	55.6	22.2	33.3	44.4	11.1	0.0	22.2	11.1
	고도성장기	(39)	35.9	41.0	33.3	25.6	28.2	15.4	10.3	7.7
	성숙기	(1)	100.0	0.0	0.0	0.0	0.0	100.0	0.0	0.0
목표시장	국내	(6)	16.7	16.7	16.7	33.3	50.0	33.3	16.7	16.7
	해외	(2)	100.0	0.0	0.0	0.0	50.0	0.0	50.0	0.0
	국내+해외	(42)	42.9	40.5	35.7	28.6	21.4	11.9	9.5	7.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12.5	37.5	37.5	50.0	37.5	0.0	0.0	25.0
	창업보육과정	(6)	50.0	16.7	66.7	50.0	0.0	0.0	16.7	0.0
	독자적	(36)	47.2	38.9	25.0	19.4	27.8	19.4	13.9	5.6

<표 IV-43>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1+2순위)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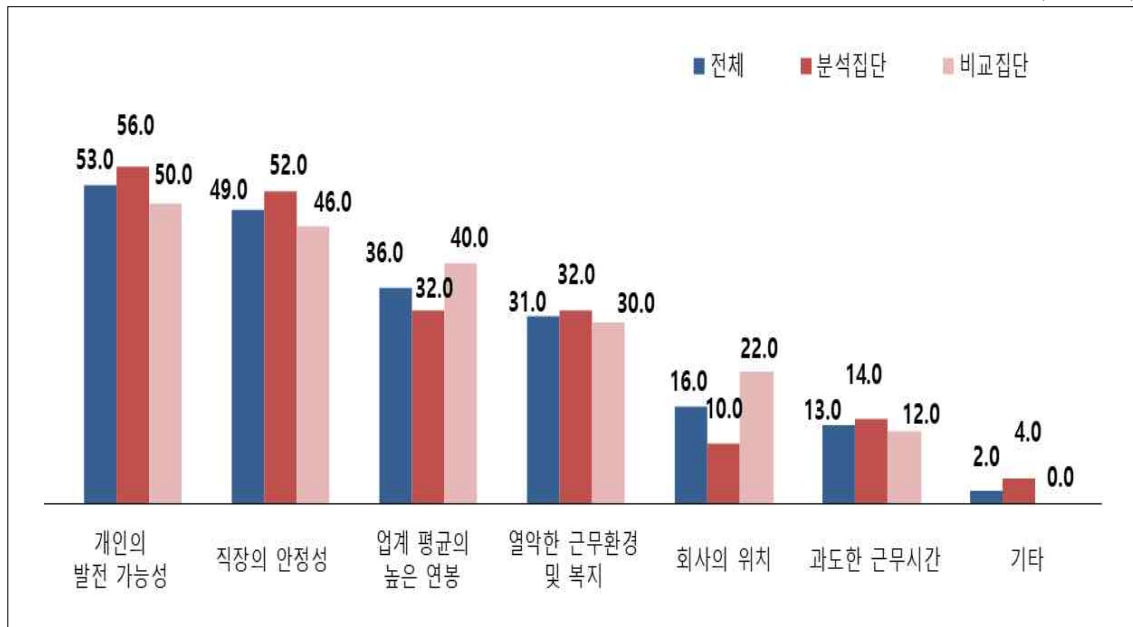
		사례수	R&D 인력	생산 기능 인력	중간관 리자급 인력	영업 및 마케팅 인력	인사 및 조직 관리 인력	경영 기획 및 전략 인력	재무 관리 인력	임원급 인력
전체		(50)	46.0	40.0	36.0	22.0	16.0	16.0	12.0	4.0
업종	제조업	(43)	44.2	46.5	37.2	25.6	11.6	14.0	9.3	4.7
	정보통신업	(2)	0.0	0.0	50.0	0.0	0.0	50.0	50.0	0.0
	기술서비스업	(5)	80.0	0.0	20.0	0.0	60.0	20.0	2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25.0	56.3	31.3	31.3	18.8	31.3	6.3	0.0
	50~99명	(18)	55.6	27.8	44.4	5.6	22.2	5.6	16.7	5.6
	100~199명	(11)	54.5	45.5	18.2	45.5	0.0	9.1	18.2	0.0
	200명 이상	(5)	60.0	20.0	60.0	0.0	20.0	20.0	0.0	20.0
상장시장	코스닥	(14)	57.1	35.7	35.7	21.4	7.1	7.1	21.4	7.1
	코넥스	(2)	50.0	0.0	50.0	50.0	0.0	50.0	0.0	0.0
	비상장	(34)	41.2	44.1	35.3	20.6	20.6	17.6	8.8	2.9
설립연도	1900년대	(16)	25.0	43.8	37.5	25.0	25.0	25.0	18.8	0.0
	2000년대	(24)	54.2	33.3	33.3	20.8	12.5	12.5	12.5	8.3
	2010년대	(10)	60.0	50.0	40.0	20.0	10.0	10.0	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1)	48.8	43.9	31.7	17.1	17.1	17.1	12.2	2.4
	아니오	(9)	33.3	22.2	55.6	44.4	11.1	11.1	11.1	11.1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9)	88.9	55.6	22.2	22.2	11.1	0.0	0.0	0.0
	고도성장기	(25)	40.0	16.0	44.0	16.0	24.0	24.0	20.0	8.0
	성숙기	(15)	33.3	66.7	26.7	33.3	6.7	13.3	6.7	0.0
	쇠퇴기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1)	27.3	54.5	36.4	27.3	18.2	27.3	9.1	0.0
	해외	(3)	33.3	0.0	0.0	66.7	33.3	33.3	33.3	0.0
	국내+해외	(36)	52.8	38.9	38.9	16.7	13.9	11.1	11.1	5.6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50.0	25.0	25.0	25.0	25.0	0.0	50.0	0.0
	독자적	(46)	45.7	41.3	37.0	21.7	15.2	17.4	8.7	4.3

4)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_1+2순위

-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를 물어본 결과, 1+2순위 응답 기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53.0%로 가장 높았음
- 그다음으로는 직장의 안정성(49.0%),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36.0%),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31.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동일한 순위로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타났으나 개인의 발전 가능성, 직장의 안정성에 대해 분석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에 대해서는 비교집단이 분석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함

[그림 IV-5]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1+2순위)

(단위: %)



<표 IV-44>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1+2순위)_전체

(단위: %)

		사례수	개인의 발전 가능성	직장의 안정성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복지	회사의 위치	과도한 근무 시간	기타
	전체	(100)	53.0	49.0	36.0	31.0	16.0	13.0	2.0
집단유형	분석집단	(50)	56.0	52.0	32.0	32.0	10.0	14.0	4.0
	비교집단	(50)	50.0	46.0	40.0	30.0	22.0	12.0	0.0
업종	제조업	(72)	52.8	45.8	36.1	31.9	19.4	13.9	0.0
	도·소매업	(3)	33.3	100.0	33.3	33.3	0.0	0.0	0.0
	정보통신업	(5)	80.0	80.0	20.0	2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19)	47.4	47.4	36.8	31.6	10.5	15.8	10.5
	예술관련서비스업	(1)	100.0	0.0	100.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54.8	45.2	25.8	38.7	12.9	19.4	3.2
	50~99명	(34)	50.0	50.0	44.1	29.4	14.7	11.8	0.0
	100~199명	(24)	45.8	50.0	33.3	33.3	20.8	12.5	4.2
	200명 이상	(11)	72.7	54.5	45.5	9.1	18.2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34)	67.6	58.8	32.4	17.6	14.7	8.8	0.0
	코넥스	(3)	33.3	66.7	33.3	33.3	33.3	0.0	0.0
	비상장	(63)	46.0	42.9	38.1	38.1	15.9	15.9	3.2
설립연도	1900년대	(18)	61.1	55.6	27.8	33.3	16.7	5.6	0.0
	2000년대	(48)	43.8	41.7	43.8	33.3	18.8	16.7	2.1
	2010년대	(34)	61.8	55.9	29.4	26.5	11.8	11.8	2.9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46.3	50.7	43.3	31.3	13.4	11.9	3.0
	아니오	(33)	66.7	45.5	21.2	30.3	21.2	15.2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10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18)	61.1	33.3	33.3	38.9	22.2	5.6	5.6
	고도성장기	(64)	56.3	60.9	31.3	23.4	12.5	14.1	1.6
	성숙기	(16)	31.3	25.0	50.0	50.0	25.0	18.8	0.0
	쇠퇴기	(1)	0.0	0.0	100.0	10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7)	35.3	41.2	23.5	52.9	17.6	29.4	0.0
	해외	(5)	60.0	40.0	60.0	40.0	0.0	0.0	0.0
	국내+해외	(78)	56.4	51.3	37.2	25.6	16.7	10.3	2.6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50.0	66.7	16.7	33.3	8.3	25.0	0.0
	창업보육과정	(6)	50.0	66.7	16.7	33.3	0.0	33.3	0.0
	독자적	(82)	53.7	45.1	40.2	30.5	18.3	9.8	2.4

<표 IV-45>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1+2순위)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개인의 발전 가능성	직장의 안정성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복지	과도한 근무 시간	회사의 위치	기타
전체		(50)	56.0	52.0	32.0	32.0	14.0	10.0	4.0
업종	제조업	(29)	55.2	51.7	34.5	34.5	13.8	10.3	0.0
	도·소매업	(3)	33.3	100.0	33.3	33.3	0.0	0.0	0.0
	정보통신업	(3)	66.7	66.7	33.3	33.3	0.0	0.0	0.0
	기술서비스업	(14)	57.1	42.9	21.4	28.6	21.4	14.3	14.3
	예술관련서비스업	(1)	100.0	0.0	100.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66.7	53.3	20.0	33.3	20.0	0.0	6.7
	50~99명	(16)	56.3	56.3	31.3	31.3	12.5	12.5	0.0
	100~199명	(13)	38.5	38.5	38.5	38.5	15.4	23.1	7.7
	200명 이상	(6)	66.7	66.7	50.0	16.7	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20)	75.0	65.0	25.0	25.0	5.0	5.0	0.0
	코넥스	(1)	100.0	100.0	0.0	0.0	0.0	0.0	0.0
	비상장	(29)	41.4	41.4	37.9	37.9	20.7	13.8	6.9
설립연도	1900년대	(2)	100.0	100.0	0.0	0.0	0.0	0.0	0.0
	2000년대	(24)	45.8	41.7	41.7	37.5	16.7	12.5	4.2
	2010년대	(24)	62.5	58.3	25.0	29.2	12.5	8.3	4.2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6)	42.3	57.7	34.6	34.6	15.4	7.7	7.7
	아니오	(24)	70.8	45.8	29.2	29.2	12.5	12.5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10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9)	77.8	33.3	22.2	44.4	11.1	0.0	11.1
	고도성장기	(39)	51.3	59.0	30.8	28.2	15.4	12.8	2.6
	성숙기	(1)	0.0	0.0	100.0	10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6)	33.3	50.0	33.3	33.3	50.0	0.0	0.0
	해외	(2)	100.0	0.0	50.0	50.0	0.0	0.0	0.0
	국내+해외	(42)	57.1	54.8	31.0	31.0	9.5	11.9	4.8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50.0	75.0	12.5	37.5	25.0	0.0	0.0
	창업보육과정	(6)	50.0	66.7	16.7	33.3	33.3	0.0	0.0
	독자적	(36)	58.3	44.4	38.9	30.6	8.3	13.9	5.6

<표 IV-46>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1+2순위)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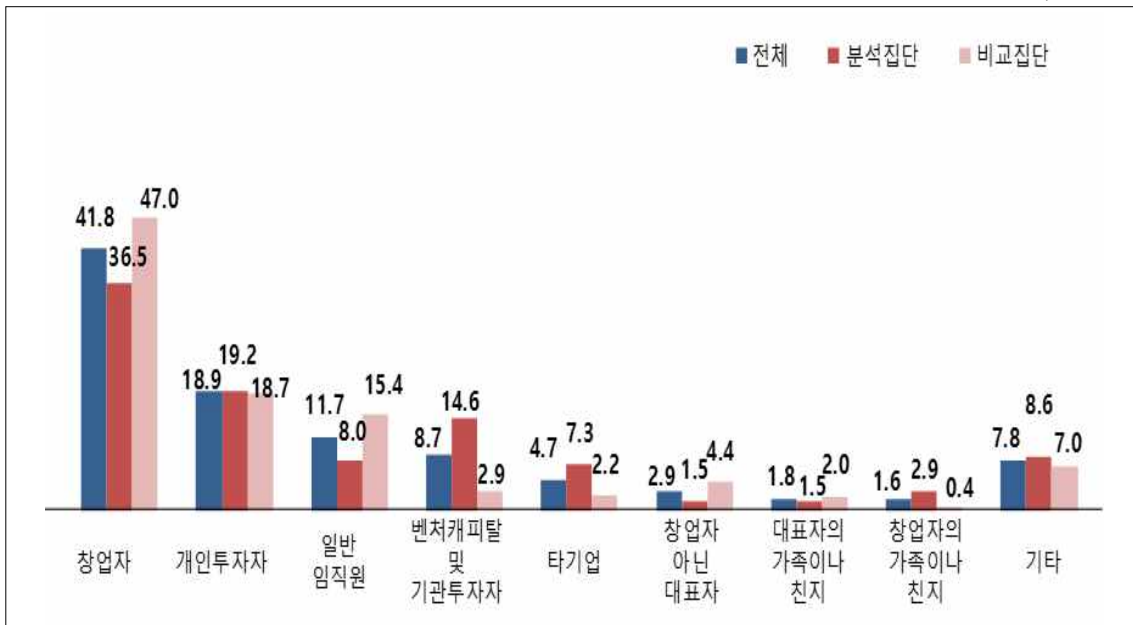
		사례수	개인의 발전 가능성	직장의 안정성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복지	회사의 위치	과도한 근무 시간
전체		(50)	50.0	46.0	40.0	30.0	22.0	12.0
업종	제조업	(43)	51.2	41.9	37.2	30.2	25.6	14.0
	정보통신업	(2)	100.0	100.0	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5)	20.0	60.0	80.0	4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43.8	37.5	31.3	43.8	25.0	18.8
	50~99명	(18)	44.4	44.4	55.6	27.8	16.7	11.1
	100~199명	(11)	54.5	63.6	27.3	27.3	18.2	9.1
	200명 이상	(5)	80.0	40.0	40.0	0.0	40.0	0.0
상장시장	코스닥	(14)	57.1	50.0	42.9	7.1	28.6	14.3
	코넥스	(2)	0.0	50.0	50.0	50.0	50.0	0.0
	비상장	(34)	50.0	44.1	38.2	38.2	17.6	11.8
설립연도	1900년대	(16)	56.3	50.0	31.3	37.5	18.8	6.3
	2000년대	(24)	41.7	41.7	45.8	29.2	25.0	16.7
	2010년대	(10)	60.0	50.0	40.0	20.0	20.0	1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1)	48.8	46.3	48.8	29.3	17.1	9.8
	아니오	(9)	55.6	44.4	0.0	33.3	44.4	22.2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9)	44.4	33.3	44.4	33.3	44.4	0.0
	고도성장기	(25)	64.0	64.0	32.0	16.0	12.0	12.0
	성숙기	(15)	33.3	26.7	46.7	46.7	26.7	20.0
	쇠퇴기	(1)	0.0	0.0	100.0	10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1)	36.4	36.4	18.2	63.6	27.3	18.2
	해외	(3)	33.3	66.7	66.7	33.3	0.0	0.0
	국내+해외	(36)	55.6	47.2	44.4	19.4	22.2	11.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50.0	50.0	25.0	25.0	25.0	25.0
	독자적	(46)	50.0	45.7	41.3	30.4	21.7	10.9

5)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

-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을 파악한 결과, 창업자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 모두 창업자의 보유지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비교집단이 47.0%로 분석집단(36.5%)에 비해 10.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자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의 보유지분 비율이 2순위로 나타났으며, 분석집단 및 비교집단이 비슷한 비율을 보임
- 분석집단은 3순위로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14.6%로 나타난 반면, 비교집단은 일반 임직원이 15.4%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그림 IV-6]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

(단위: %)



<표 IV-47>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_전체

(단위: %)

		사례 수	창업자	개인 투자자	일반 임직원	벤처 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	타기업	창업자 아닌 대표자	대표자 가족/친지	창업자 가족/친지	기타
전체		(97)	41.8	18.9	11.7	8.7	4.7	2.9	1.8	1.6	7.8
집단유형	분석집단	(48)	36.5	19.2	8.0	14.6	7.3	1.5	1.5	2.9	8.6
	비교집단	(49)	47.0	18.7	15.4	2.9	2.2	4.4	2.0	0.4	7.0
업종	제조업	(72)	43.6	19.7	12.4	5.6	4.6	2.6	1.9	2.1	7.6
	도·소매업	(3)	64.3	0.0	7.4	0.0	0.0	0.4	10.9	1.3	15.8
	정보통신업	(5)	27.5	38.3	8.1	0.0	7.6	16.0	0.7	0.0	1.7
	기술서비스업	(16)	34.2	14.1	11.2	23.8	5.7	1.1	0.0	0.3	9.6
	예술관련서비스업	(1)	40.0	0.0	0.0	60.0	0.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0)	45.9	14.0	11.9	8.4	4.8	2.6	0.6	2.1	9.7
	50~99명	(33)	45.7	16.4	8.2	12.9	4.3	0.8	2.3	0.8	8.6
	100~199명	(23)	35.6	22.8	13.3	5.2	7.3	7.0	3.1	1.4	4.3
	200명 이상	(11)	31.9	31.7	18.4	4.2	0.2	1.8	0.7	3.5	7.5
상장시장	코스닥	(34)	29.5	42.7	6.3	3.6	4.8	3.8	0.8	2.0	6.6
	코넥스	(3)	26.4	18.0	31.4	0.0	0.0	7.6	0.0	13.8	2.8
	비상장	(60)	49.5	5.5	13.8	12.1	4.9	2.2	2.4	0.8	8.7
설립연도	1900년대	(18)	41.8	22.1	13.2	1.0	6.7	4.8	1.8	0.0	8.6
	2000년대	(47)	45.4	19.5	13.0	8.3	3.2	1.9	2.6	0.5	5.6
	2010년대	(32)	36.4	16.2	9.1	13.6	5.8	3.5	0.5	4.3	10.5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4)	41.3	18.8	14.3	9.1	2.2	4.1	2.4	0.2	7.6
	아니오	(33)	42.6	19.2	6.7	8.0	9.7	0.7	0.4	4.5	8.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60.0	40.0	0.0	0.0	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16)	42.3	11.8	17.5	8.0	8.4	1.4	0.2	2.6	7.7
	고도성장기	(63)	41.9	19.6	8.6	9.4	4.8	3.9	1.5	1.9	8.4
	성숙기	(16)	42.2	23.4	19.6	1.5	1.3	1.3	4.5	0.0	6.3
	쇠퇴기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7)	49.5	4.7	22.2	2.4	3.8	3.9	0.5	2.0	10.9
	해외	(5)	54.3	23.7	1.7	0.0	14.7	0.0	0.0	0.2	5.5
	국내+해외	(75)	39.2	21.8	10.0	10.7	4.3	2.9	2.2	1.7	7.2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31.6	27.4	8.1	6.6	16.8	1.1	0.6	0.5	7.3
	창업보육과정	(6)	27.7	10.4	8.7	19.2	10.2	1.5	0.0	0.6	21.7
	독자적	(79)	44.4	18.3	12.5	8.2	2.5	3.3	2.1	1.9	6.8

<표 IV-48>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_분석집단

(단위: %)

		사 례 수	창 업 자	개 인 투 자 자	벤처 캐 피 탈 및 기 관 투 자 자	일 반 임 직 원	타 기 업	창 업 자 가 족/ 친 지	대 표 자 가 족/ 친 지	창 업 자 아 닌 대 표 자	기 타
전체		(48)	36.5	19.2	14.6	8.0	7.3	2.9	1.5	1.5	8.6
업종	제조업	(29)	34.8	21.0	9.0	8.5	9.1	4.5	1.2	2.4	9.5
	도·소매업	(3)	64.3	0.0	0.0	7.4	0.0	1.3	10.9	0.4	15.8
	정보통신업	(3)	39.8	38.7	0.0	8.6	9.4	0.0	1.2	0.0	2.3
	기술서비스업	(12)	32.3	16.3	31.7	7.5	4.9	0.4	0.0	0.0	7.0
	예술관련서비스업	(1)	40.0	0.0	60.0	0.0	0.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4)	34.6	14.8	16.3	6.2	9.4	4.1	0.1	2.3	12.4
	50~99명	(16)	37.5	22.0	19.4	6.6	3.8	0.6	0.0	0.6	9.4
	100~199명	(12)	36.3	13.9	9.9	13.3	12.8	2.7	5.9	1.3	4.0
	200명 이상	(6)	38.3	32.6	7.7	5.4	0.4	6.4	0.0	2.2	7.0
상장시장	코스닥	(20)	31.4	38.2	5.7	5.9	6.9	3.1	0.1	1.2	7.6
	코넥스	(1)	27.5	0.0	0.0	0.0	0.0	41.3	0.0	22.9	8.3
	비상장	(27)	40.5	5.8	21.8	9.9	7.8	1.3	2.6	0.9	9.4
설립연도	1900년대	(2)	26.0	24.2	0.0	6.8	37.1	0.0	0.0	6.0	0.0
	2000년대	(23)	33.9	22.4	16.0	11.0	5.1	0.9	2.9	1.1	6.9
	2010년대	(23)	40.0	15.6	14.6	5.1	6.9	5.1	0.2	1.4	11.1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4)	32.6	23.4	18.7	8.3	2.7	0.3	2.8	1.9	9.2
	아니오	(24)	40.3	14.9	10.6	7.7	11.8	5.4	0.2	1.0	8.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60.0	40.0	0.0	0.0	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8)	32.9	14.2	15.0	9.1	16.7	5.2	0.5	2.9	3.6
	고도성장기	(38)	37.0	20.2	15.0	7.8	5.7	2.5	1.8	1.2	8.8
	성숙기	(1)	23.2	0.0	12.3	15.1	0.0	0.0	0.0	0.0	49.4
목표시장	국내	(6)	56.9	0.0	4.8	10.8	7.8	3.4	0.0	0.0	16.3
	해외	(2)	39.0	39.2	0.0	1.4	20.0	0.4	0.0	0.0	0.0
	국내+해외	(40)	33.3	21.1	16.8	7.9	6.6	2.9	1.8	1.8	7.9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33.6	21.2	9.9	6.4	20.4	0.0	0.6	1.6	6.3
	창업보육과정	(6)	27.7	10.4	19.2	8.7	10.2	0.6	0.0	1.5	21.7
	독자적	(34)	38.7	20.3	14.9	8.3	3.7	4.0	2.0	1.4	6.9

<표 IV-49> 회사의 보유지분 비율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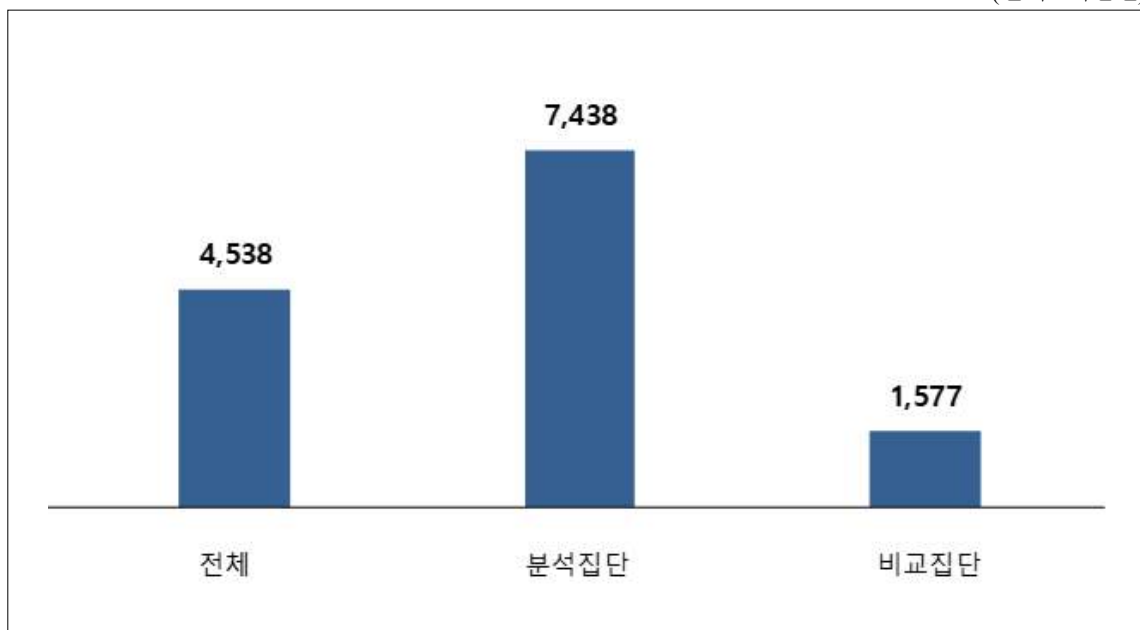
		사례 수	창업자	개인 투자자	일반 임직원	창업자 아닌 대표자	벤처 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	타기업	대표자 가족/친지	창업자 가족/친지	기타
전체		(49)	47.0	18.7	15.4	4.4	2.9	2.2	2.0	0.4	7.0
업종	제조업	(43)	49.4	18.8	15.1	2.8	3.3	1.5	2.3	0.5	6.2
	정보통신업	(2)	9.0	37.7	7.4	40.0	0.0	5.0	0.0	0.0	0.9
	기술서비스업	(4)	39.9	7.5	22.3	4.3	0.0	8.3	0.0	0.0	17.7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55.7	13.3	16.9	2.9	1.6	0.8	1.0	0.4	7.3
	50~99명	(17)	53.4	11.2	9.8	1.0	6.8	4.8	4.4	0.9	7.8
	100~199명	(11)	34.8	32.5	13.4	13.2	0.2	1.4	0.0	0.0	4.5
	200명 이상	(5)	24.3	30.7	34.0	1.4	0.0	0.0	1.6	0.0	8.0
상장시장	코스닥	(14)	26.7	49.2	6.8	7.6	0.6	1.7	1.8	0.4	5.1
	코넥스	(2)	25.9	27.0	47.2	0.0	0.0	0.0	0.0	0.0	0.0
	비상장	(33)	56.9	5.2	17.1	3.3	4.1	2.6	2.3	0.5	8.1
설립연도	1900년대	(16)	43.7	21.8	14.0	4.6	1.2	2.9	2.1	0.0	9.7
	2000년대	(24)	56.5	16.9	14.9	2.6	1.0	1.4	2.3	0.1	4.4
	2010년대	(9)	27.5	17.9	19.2	8.9	11.1	3.1	1.2	2.2	8.9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0)	46.6	16.0	17.9	5.4	3.3	1.8	2.2	0.0	6.7
	아니오	(9)	48.8	30.6	4.2	0.0	1.0	4.0	1.2	2.2	8.0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8)	51.8	9.5	25.8	0.0	1.0	0.0	0.0	0.0	11.9
	고도성장기	(25)	49.5	18.6	9.9	7.8	0.9	3.6	1.1	0.9	7.8
	성숙기	(15)	43.5	24.9	19.9	1.3	0.8	1.3	4.8	0.0	3.4
	쇠퇴기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1)	45.5	7.3	28.5	6.1	1.1	1.6	0.8	1.2	7.9
	해외	(3)	64.5	13.3	1.9	0.0	0.0	11.1	0.0	0.0	9.2
	국내+해외	(35)	46.0	22.7	12.4	4.3	3.7	1.6	2.6	0.2	6.5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27.5	40.0	11.6	0.0	0.0	9.6	0.4	1.5	9.4
	독자적	(45)	48.7	16.8	15.7	4.8	3.2	1.6	2.2	0.3	6.7

6) 신규 자금조달 규모

- 최근 3년간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5억 3,800만원으로 나타남
 - 분석집단의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74억 3,800만원이며, 비교집단(15억 7,700만원)에 비해 약 58억 6천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분석기업의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스닥 상장 기업, 2000년대 창업 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규 자금조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비교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 기업, 2010년대 창업기업의 경우 신규 자금조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그림 IV-7] 신규 자금조달 규모

(단위: 백만원)



<표 IV-50> 신규 자금조달 규모_전체

(단위: 백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95)	0	110,000	4,538	13,225
집단유형	분석집단	(48)	0	110,000	7,438	17,952
	비교집단	(47)	0	13,500	1,577	3,231
업종	제조업	(69)	0	40,000	3,421	7,105
	도·소매업	(3)	0	3,800	1,348	2,127
	정보통신업	(5)	0	1,400	280	626
	기술서비스업	(17)	0	110,000	10,633	27,546
	예술관련서비스업	(1)	8,900	8,900	8,900	.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0	41,200	2,852	7,884
	50~99명	(33)	0	110,000	7,097	19,648
	100~199명	(23)	0	13,500	2,010	3,410
	200명 이상	(8)	0	40,000	7,788	14,302
상장시장	코스닥	(34)	0	110,000	8,950	20,196
	코넥스	(2)	0	0	0	0
	비상장	(59)	0	41,200	2,150	5,787
설립연도	1900년대	(18)	0	7,000	1,103	2,018
	2000년대	(44)	0	110,000	5,833	17,874
	2010년대	(33)	0	41,200	4,687	8,566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2)	0	110,000	4,955	15,377
	아니오	(33)	0	41,200	3,756	7,88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	0	0	.
	초기성장기	(17)	0	22,293	2,602	6,038
	고도성장기	(61)	0	110,000	6,006	15,992
	성숙기	(15)	0	7,000	703	1,837
	쇠퇴기	(1)	10,000	10,000	10,000	.
목표시장	국내	(17)	0	4,600	1,077	1,715
	해외	(5)	0	22,293	5,219	9,686
	국내+해외	(73)	0	110,000	5,298	14,800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0	13,500	2,467	3,963
	창업보육과정	(6)	0	41,200	12,283	15,201
	독자적	(77)	0	110,000	4,258	13,906

<표 IV-51> 신규 자금조달 규모_분석집단

(단위: 백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48)	0	110,000	7,438	17,952
업종	제조업	(27)	0	40,000	6,138	10,077
	도·소매업	(3)	0	3,800	1,348	2,127
	정보통신업	(3)	0	1,400	467	808
	기술서비스업	(14)	0	110,000	12,640	30,143
	예술관련서비스업	(1)	8,900	8,900	8,900	.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0	41,200	4,334	11,013
	50~99명	(15)	0	110,000	13,293	28,147
	100~199명	(12)	0	7,000	2,526	2,793
	200명 이상	(6)	0	40,000	10,383	15,939
상장시장	코스닥	(20)	0	110,000	12,990	25,515
	코넥스	(1)	0	0	0	.
	비상장	(27)	0	41,200	3,601	8,103
설립연도	1900년대	(2)	0	4,000	2,000	2,828
	2000년대	(22)	0	110,000	10,198	24,532
	2010년대	(24)	0	41,200	5,361	9,711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4)	0	110,000	10,631	23,627
	아니오	(24)	0	41,200	4,245	8,889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	0	0	.
	초기성장기	(9)	0	22,293	2,478	7,431
	고도성장기	(38)	0	110,000	8,808	19,698
목표시장	국내	(6)	10	4,500	1,526	2,048
	해외	(2)	0	22,293	11,147	15,764
	국내+해외	(40)	0	110,000	8,139	19,36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0	5,300	1,163	2,180
	창업보육과정	(6)	0	41,200	12,283	15,201
	독자적	(34)	0	110,000	8,059	20,217

<표 IV-52> 신규 자금조달 규모_비교집단

(단위: 백만원)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47)	0	13,500	1,577	3,231
업종	제조업	(42)	0	13,500	1,675	3,367
	정보통신업	(2)	0	0	0	0
	기술서비스업	(3)	0	3,800	1,267	2,194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0	10,000	1,463	2,620
	50~99명	(18)	0	10,000	1,933	3,482
	100~199명	(11)	0	13,500	1,448	4,042
	200명 이상	(2)	0	0	0	0
상장시장	코스닥	(14)	0	13,500	3,179	4,786
	코넥스	(1)	0	0	0	.
	비상장	(32)	0	10,000	926	2,051
설립연도	1900년대	(16)	0	7,000	991	1,990
	2000년대	(22)	0	13,500	1,467	3,522
	2010년대	(9)	0	10,000	2,889	4,167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38)	0	10,000	1,371	2,952
	아니오	(9)	0	13,500	2,451	4,318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8)	0	10,000	2,741	4,493
	고도성장기	(23)	0	13,500	1,377	2,995
	성숙기	(15)	0	7,000	703	1,837
	쇠퇴기	(1)	10,000	10,000	10,000	.
목표시장	국내	(11)	0	4,600	832	1,556
	해외	(3)	0	3,800	1,267	2,194
	국내+해외	(33)	0	13,500	1,854	3,697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1,000	13,500	5,075	5,735
	독자적	(43)	0	10,000	1,252	2,794

7) 신규 자금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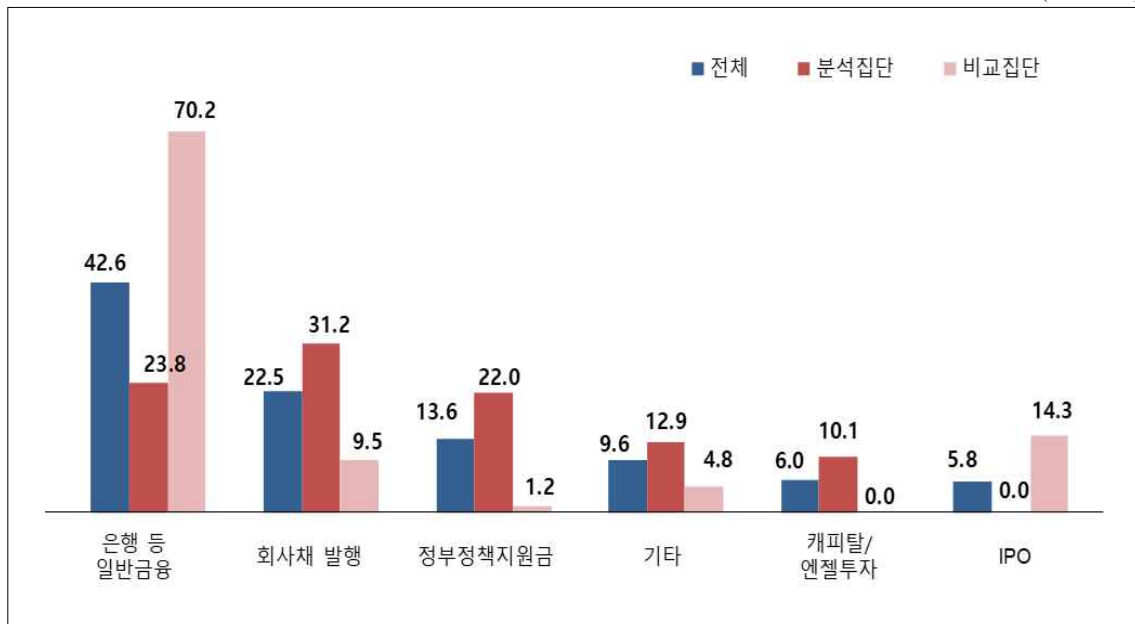
- 신규 자금조달 방법에 있어 분석기업과 비교기업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분석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31.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은행 등 일반금융 23.8%, 정부정책지원금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교기업은 은행 등 일반금융이 70.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IPO 14.3%, 회사채 발행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분석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서도 신규 자금조달 방법에 차이가 있음
 - 제조업은 은행 등 일반 금융이 31.9%로 가장 높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캐피탈/엔젤투자 비율이 30.7%로 가장 높음
 - 코스닥 상장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37.7%로 가장 높고, 비상장기업은 은행 등 일반금융이 30.0%로 가장 높음

- 비교기업의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은 IPO 비율이 50.0%로 가장 높고, 비상장기업은 은행 등 일반금융이 83.9%로 가장 높음

[그림 IV-8] 신규 자금조달 방법

(단위: %)



<표 IV-53> 신규 자금조달 방법_전체

(단위: %)

		사례수	은행 등 일반 금융	회사채 발행	정부 정책 지원금	IPO	캐피탈/ 엔젤 투자	기타
전체		(52)	42.6	22.5	13.6	6.0	5.8	9.6
업종	제조업	(38)	50.3	15.5	13.2	2.6	7.9	10.5
	도·소매업	(2)	0.0	50.0	50.0	0.0	0.0	0.0
	정보통신업	(1)	0.0	100.0	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10)	30.0	28.0	10.5	21.5	0.0	10.0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100.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4)	56.1	0.0	15.7	13.9	7.1	7.1
	50~99명	(21)	21.0	27.5	17.3	5.6	9.5	19.0
	100~199명	(11)	53.6	35.5	10.9	0.0	0.0	0.0
	200명 이상	(6)	66.3	33.3	0.3	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19)	20.9	31.1	11.5	10.2	15.8	10.5
	코넥스	(1)	100.0	0.0	0.0	0.0	0.0	0.0
	비상장	(32)	53.6	18.1	15.2	3.8	0.0	9.4
설립연도	1900년대	(6)	48.3	31.7	3.3	0.0	16.7	0.0
	2000년대	(26)	51.3	26.1	10.5	4.4	3.8	3.8
	2010년대	(20)	29.4	15.0	20.7	9.9	5.0	2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31)	43.4	16.1	8.5	6.2	9.7	16.1
	아니오	(21)	41.3	31.8	21.1	5.7	0.0	0.0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8)	50.0	0.0	12.5	0.0	25.0	12.5
	고도성장기	(38)	37.2	30.7	15.9	8.2	0.0	7.9
	성숙기	(5)	80.0	0.0	0.0	0.0	20.0	0.0
	쇠퇴기	(1)	0.0	0.0	0.0	0.0	0.0	100.0
목표시장	국내	(10)	38.5	19.8	41.7	0.0	0.0	0.0
	해외	(2)	0.0	50.0	0.0	0.0	0.0	50.0
	국내+해외	(40)	45.7	21.8	7.2	7.8	7.5	10.0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6)	33.3	65.0	1.7	0.0	0.0	0.0
	창업보육과정	(4)	0.0	0.0	1.8	73.3	0.0	25.0
	독자적	(42)	47.9	18.5	16.4	0.5	7.1	9.5

<표 IV-54> 신규 자금조달 방법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회사채 발행	은행 등 일반금융	정부정책 지원금	캐피탈/ 엔젤투자	기타
전체		(31)	31.23	23.81	21.97	10.10	12.90
업종	제조업	(20)	24.40	31.90	23.80	4.90	15.00
	도·소매업	(2)	50.00	0.00	50.00	0.00	0.00
	정보통신업	(1)	100.00	0.00	0.00	0.00	0.00
	기술서비스업	(7)	25.71	14.29	15.00	30.71	14.29
	예술관련서비스업	(1)	100.00	0.00	0.00	0.00	0.00
인력구성	50명 미만	(5)	0.00	0.00	41.00	39.00	20.00
	50~99명	(15)	31.87	16.67	23.60	7.87	20.00
	100~199명	(8)	36.25	48.75	15.00	0.00	0.00
	200명 이상	(3)	66.67	32.67	0.67	0.00	0.00
상장시장	코스닥	(13)	37.69	15.23	16.85	14.85	15.38
	비상장	(18)	26.56	30.00	25.67	6.67	11.11
설립연도	1900년대	(1)	90.00	0.00	10.00	0.00	0.00
	2000년대	(16)	36.13	33.75	16.69	7.19	6.25
	2010년대	(14)	21.43	14.14	28.86	14.14	21.43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6)	25.00	21.88	16.06	12.06	25.00
	아니오	(15)	37.87	25.87	28.27	8.00	0.00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2)	0.00	0.00	50.00	0.00	50.00
	고도성장기	(28)	34.57	22.79	20.75	11.18	10.71
	성숙기	(1)	0.00	100.00	0.00	0.00	0.00
목표시장	국내	(6)	33.00	0.00	67.00	0.00	0.00
	해외	(1)	0.00	0.00	0.00	0.00	100.00
	국내+해외	(24)	32.08	30.75	11.63	13.04	12.50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2)	95.00	0.00	5.00	0.00	0.00
	창업보육과정	(4)	0.00	0.00	1.75	73.25	25.00
	독자적	(25)	31.12	29.52	26.56	0.80	12.00

<표 IV-55> 신규 자금조달 방법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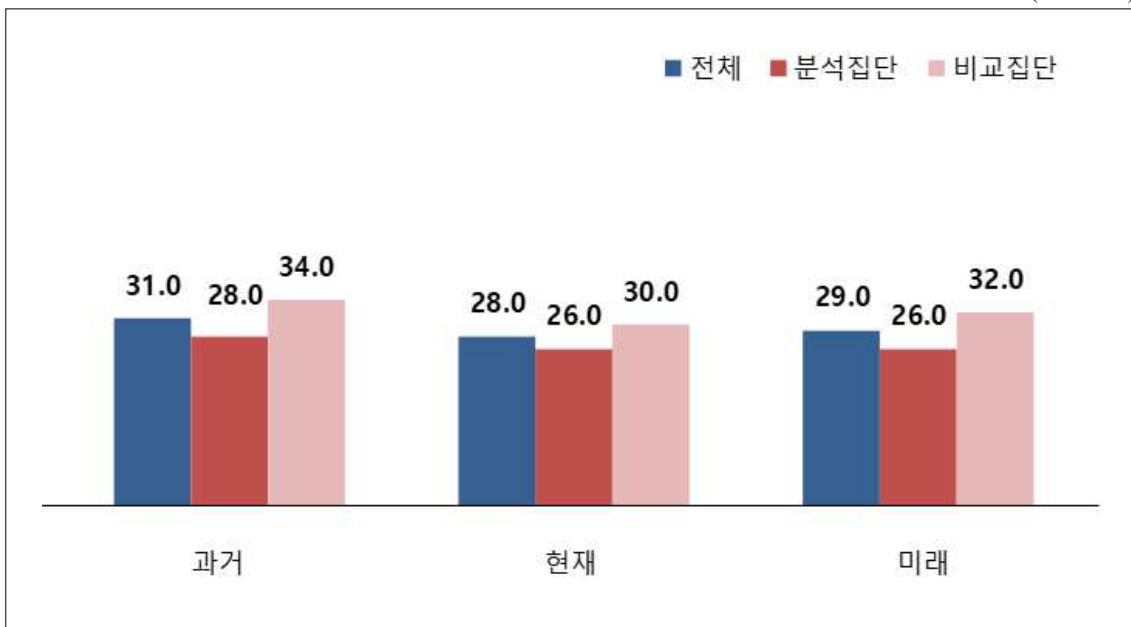
		사례수	은행 등 일반금융	IPO	회사채 발행	정부정책 지원금	기타
전체		(21)	70.24	14.29	9.52	1.19	4.76
업종	제조업	(18)	70.83	16.67	5.56	1.39	5.56
	기술서비스업	(3)	66.67	0.00	33.33	0.00	0.00
인력구성	50명 미만	(9)	87.22	11.11	0.00	1.67	0.00
	50~99명	(6)	31.67	33.33	16.67	1.67	16.67
	100~199명	(3)	66.67	0.00	33.33	0.00	0.00
	200명 이상	(3)	100.00	0.00	0.00	0.00	0.00
상장시장	코스닥	(6)	33.33	50.00	16.67	0.00	0.00
	코넥스	(1)	100.00	0.00	0.00	0.00	0.00
	비상장	(14)	83.93	0.00	7.14	1.79	7.14
설립연도	1900년대	(5)	58.00	20.00	20.00	2.00	0.00
	2000년대	(10)	79.50	10.00	10.00	0.50	0.00
	2010년대	(6)	65.00	16.67	0.00	1.67	16.67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5)	66.33	20.00	6.67	0.33	6.67
	아니오	(6)	80.00	0.00	16.67	3.33	0.00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6)	66.67	33.33	0.00	0.00	0.00
	고도성장기	(10)	77.50	0.00	20.00	2.50	0.00
	성숙기	(4)	75.00	25.00	0.00	0.00	0.00
	쇠퇴기	(1)	0.00	0.00	0.00	0.00	100.00
목표시장	국내	(4)	96.25	0.00	0.00	3.75	0.00
	해외	(1)	0.00	0.00	100.00	0.00	0.00
	국내+해외	(16)	68.13	18.75	6.25	0.63	6.25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50.00	0.00	50.00	0.00	0.00
	독자적	(17)	75.00	17.65	0.00	1.47	5.88

8)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여부

- 과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31.0% 수준이며, 현재 실시 중인 기업은 28.0%, 미래에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9.0%로 나타남
-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비교집단이 분석집단에 비해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근로자 수 50~99명, 비상장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교집단은 과거에는 100~199명의 근로자 규모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에는 50~99명의 근로자 규모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음
 - 또한 비상장기업에 비해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9]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

(단위: 명)



<표 IV-56>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_전체

(단위: %)

		사례수	과거	현재	미래
전체		(100)	31.0	28.0	29.0
집단유형	분석집단	(50)	28.0	26.0	26.0
	비교집단	(50)	34.0	30.0	32.0
업종	제조업	(72)	27.8	26.4	27.8
	도·소매업	(3)	0.0	0.0	0.0
	정보통신업	(5)	60.0	40.0	40.0
	기술서비스업	(19)	42.1	36.8	36.8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19.4	19.4	19.4
	50~99명	(34)	41.2	38.2	38.2
	100~199명	(24)	33.3	25.0	29.2
	200명 이상	(11)	27.3	27.3	27.3
상장시장	코스닥	(34)	38.2	26.5	29.4
	코넥스	(3)	33.3	33.3	33.3
	비상장	(63)	27.0	28.6	28.6
설립연도	1900년대	(18)	16.7	11.1	11.1
	2000년대	(48)	35.4	35.4	37.5
	2010년대	(34)	32.4	26.5	26.5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38.8	37.3	38.8
	아니오	(33)	15.2	9.1	9.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100.0	100.0
	초기성장기	(18)	38.9	38.9	38.9
	고도성장기	(64)	31.3	26.6	26.6
	성숙기	(16)	18.8	18.8	25.0
	쇠퇴기	(1)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7)	5.9	11.8	11.8
	해외	(5)	60.0	20.0	40.0
	국내+해외	(78)	34.6	32.1	32.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25.0	8.3	8.3
	창업보육과정	(6)	16.7	16.7	16.7
	독자적	(82)	32.9	31.7	32.9

<표 IV-57>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과거	현재	미래
전체		(50)	28.0	26.0	26.0
업종	제조업	(29)	24.1	24.1	24.1
	도·소매업	(3)	0.0	0.0	0.0
	정보통신업	(3)	66.7	33.3	33.3
	기술서비스업	(14)	35.7	35.7	35.7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20.0	20.0	20.0
	50~99명	(16)	43.8	37.5	37.5
	100~199명	(13)	23.1	23.1	23.1
	200명 이상	(6)	16.7	16.7	16.7
상장시장	코스닥	(20)	25.0	20.0	20.0
	코넥스	(1)	0.0	0.0	0.0
	비상장	(29)	31.0	31.0	31.0
설립연도	1900년대	(2)	0.0	0.0	0.0
	2000년대	(24)	33.3	33.3	33.3
	2010년대	(24)	25.0	20.8	20.8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6)	46.2	46.2	46.2
	아니오	(24)	8.3	4.2	4.2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100.0	100.0
	초기성장기	(9)	33.3	33.3	33.3
	고도성장기	(39)	25.6	23.1	23.1
	성숙기	(1)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6)	0.0	0.0	0.0
	해외	(2)	50.0	50.0	50.0
	국내+해외	(42)	31.0	28.6	28.6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0.0	0.0	0.0
	창업보육과정	(6)	16.7	16.7	16.7
	독자적	(36)	36.1	33.3	33.3

<표 IV-58>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비율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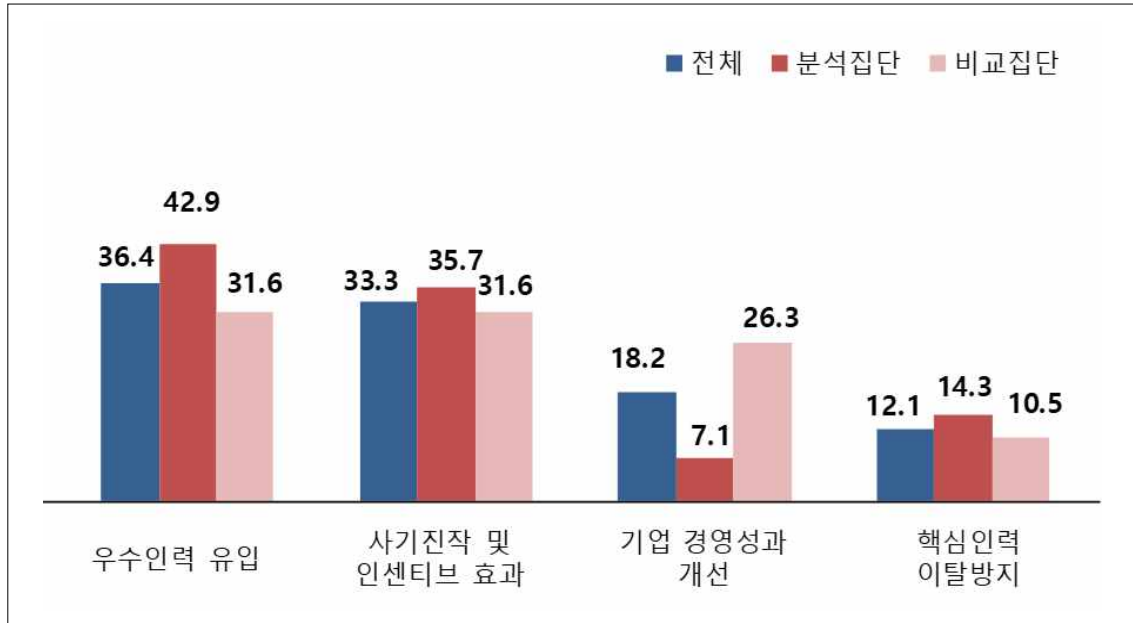
		사례수	과거	현재	미래
전체		(50)	34.0	30.0	32.0
업종	제조업	(43)	30.2	27.9	30.2
	정보통신업	(2)	50.0	50.0	50.0
	기술서비스업	(5)	60.0	40.0	4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18.8	18.8	18.8
	50~99명	(18)	38.9	38.9	38.9
	100~199명	(11)	45.5	27.3	36.4
	200명 이상	(5)	40.0	40.0	40.0
상장시장	코스닥	(14)	57.1	35.7	42.9
	코넥스	(2)	50.0	50.0	50.0
	비상장	(34)	23.5	26.5	26.5
설립연도	1900년대	(16)	18.8	12.5	12.5
	2000년대	(24)	37.5	37.5	41.7
	2010년대	(10)	50.0	40.0	4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1)	34.1	31.7	34.1
	아니오	(9)	33.3	22.2	22.2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9)	44.4	44.4	44.4
	고도성장기	(25)	40.0	32.0	32.0
	성숙기	(15)	20.0	20.0	26.7
	쇠퇴기	(1)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1)	9.1	18.2	18.2
	해외	(3)	66.7	0.0	33.3
	국내+해외	(36)	38.9	36.1	36.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75.0	25.0	25.0
	독자적	(46)	30.4	30.4	32.6

9)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

-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시하는 주요 목적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이 36.4%,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가 33.3%로 높게 나타남
 - 기업 경영성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은 비교집단에서 26.3%로 분석집단(7.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은 핵심인력 이탈방지 목적(14.3%)이 기업 경영성과 개선(7.1%)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IV-10]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

(단위: %)



<표 IV-59>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_전체

(단위: %)

		사례수	우수인력 유입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기업 경영성과 개선	핵심인력 이탈방지
전체		(33)	36.4	33.3	18.2	12.1
집단유형	분석집단	(14)	42.9	35.7	7.1	14.3
	비교집단	(19)	31.6	31.6	26.3	10.5
업종	제조업	(22)	27.3	36.4	18.2	18.2
	정보통신업	(3)	66.7	0.0	33.3	0.0
	기술서비스업	(8)	50.0	37.5	12.5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7)	28.6	28.6	28.6	14.3
	50~99명	(15)	40.0	26.7	20.0	13.3
	100~199명	(8)	37.5	37.5	12.5	12.5
	200명 이상	(3)	33.3	66.7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13)	46.2	23.1	23.1	7.7
	코넥스	(1)	0.0	100.0	0.0	0.0
	비상장	(19)	31.6	36.8	15.8	15.8
설립연도	1900년대	(4)	25.0	50.0	25.0	0.0
	2000년대	(18)	33.3	27.8	22.2	16.7
	2010년대	(11)	45.5	36.4	9.1	9.1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8)	32.1	39.3	17.9	10.7
	아니오	(5)	60.0	0.0	20.0	2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0.0
	초기성장기	(7)	57.1	28.6	14.3	0.0
	고도성장기	(20)	30.0	35.0	20.0	15.0
	성숙기	(5)	20.0	40.0	20.0	20.0
목표시장	국내	(2)	50.0	50.0	0.0	0.0
	해외	(3)	33.3	0.0	66.7	0.0
	국내+해외	(28)	35.7	35.7	14.3	14.3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3)	0.0	33.3	33.3	33.3
	창업보육과정	(1)	0.0	100.0	0.0	0.0
	독자적	(29)	41.4	31.0	17.2	10.3

<표 IV-60>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우수인력 유입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핵심인력 이탈방지	기업 경영성과 개선
전체		(14)	42.9	35.7	14.3	7.1
업종	제조업	(7)	28.6	42.9	28.6	0.0
	도·소매업	(0)	0.0	0.0	0.0	0.0
	정보통신업	(2)	50.0	0.0	0.0	50.0
	기술서비스업	(5)	60.0	40.0	0.0	0.0
	예술관련서비스업	(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	66.7	33.3	0.0	0.0
	50~99명	(7)	57.1	14.3	14.3	14.3
	100~199명	(3)	0.0	66.7	33.3	0.0
	200명 이상	(1)	0.0	10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5)	60.0	20.0	0.0	20.0
	코넥스	(0)	0.0	0.0	0.0	0.0
	비상장	(9)	33.3	44.4	22.2	0.0
설립연도	1900년대	(0)	0.0	0.0	0.0	0.0
	2000년대	(8)	37.5	37.5	25.0	0.0
	2010년대	(6)	50.0	33.3	0.0	16.7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2)	41.7	41.7	16.7	0.0
	아니오	(2)	50.0	0.0	0.0	5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0.0
	초기성장기	(3)	100.0	0.0	0.0	0.0
	고도성장기	(10)	20.0	50.0	20.0	10.0
	성숙기	(0)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0)	0.0	0.0	0.0	0.0
	해외	(1)	100.0	0.0	0.0	0.0
	국내+해외	(13)	38.5	38.5	15.4	7.7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0)	0.0	0.0	0.0	0.0
	창업보육과정	(1)	0.0	100.0	0.0	0.0
	독자적	(13)	46.2	30.8	15.4	7.7

<표 IV-61> 주식매수선택권 실시 주요 목적_비교집단

(단위: %)

		사례수	우수인력 유입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기업 경영성과 개선	핵심인력 이탈방지
전체		(19)	31.6	31.6	26.3	10.5
업종	제조업	(15)	26.7	33.3	26.7	13.3
	정보통신업	(1)	10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3)	33.3	33.3	33.3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4)	0.0	25.0	50.0	25.0
	50~99명	(8)	25.0	37.5	25.0	12.5
	100~199명	(5)	60.0	20.0	20.0	0.0
	200명 이상	(2)	50.0	5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8)	37.5	25.0	25.0	12.5
	코넥스	(1)	0.0	100.0	0.0	0.0
	비상장	(10)	30.0	30.0	30.0	10.0
설립연도	1900년대	(4)	25.0	50.0	25.0	0.0
	2000년대	(10)	30.0	20.0	40.0	10.0
	2010년대	(5)	40.0	40.0	0.0	2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6)	25.0	37.5	31.3	6.3
	아니오	(3)	66.7	0.0	0.0	33.3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4)	25.0	50.0	25.0	0.0
	고도성장기	(10)	40.0	20.0	30.0	10.0
	성숙기	(5)	20.0	40.0	20.0	20.0
	쇠퇴기	(0)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2)	50.0	50.0	0.0	0.0
	해외	(2)	0.0	0.0	100.0	0.0
	국내+해외	(15)	33.3	33.3	20.0	13.3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3)	0.0	33.3	33.3	33.3
	독자적	(16)	37.5	31.3	25.0	6.3

10)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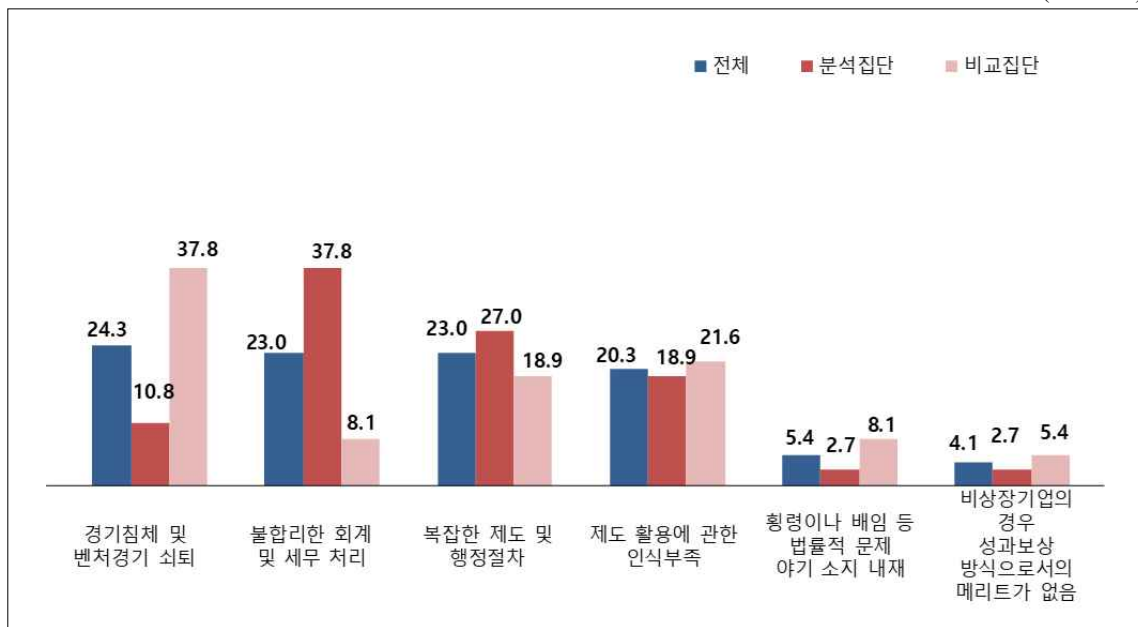
-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가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는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 처리,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가 23.0%로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은 주식매수선택권 미활용 이유에 대해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37.8%로 가장 많이 선택함
 - 뒤이어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27.0%,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교집단은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를 37.8%로 가장 많이 선택함
 - 뒤이어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21.6%,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1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1]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표 IV-62>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_전체

(단위: %)

		사례수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횡령이나 배임 등 법률적 문제야기 소지내재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 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전체		(74)	24.3	23.0	23.0	20.3	5.4	4.1
집단유형	분석집단	(37)	10.8	37.8	27.0	18.9	2.7	2.7
	비교집단	(37)	37.8	8.1	18.9	21.6	8.1	5.4
업종	제조업	(55)	25.5	18.2	20.0	23.6	7.3	5.5
	도·소매업	(3)	0.0	66.7	33.3	0.0	0.0	0.0
	정보통신업	(3)	33.3	33.3	33.3	0.0	0.0	0.0
	기술서비스업	(12)	25.0	25.0	33.3	16.7	0.0	0.0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100.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26)	23.1	19.2	23.1	26.9	3.8	3.8
	50~99명	(22)	22.7	18.2	27.3	18.2	4.5	9.1
	100~199명	(18)	33.3	27.8	22.2	11.1	5.6	0.0
	200명 이상	(8)	12.5	37.5	12.5	25.0	12.5	0.0
상장시장	코스닥	(25)	24.0	28.0	16.0	20.0	8.0	4.0
	코넥스	(2)	0.0	50.0	50.0	0.0	0.0	0.0
	비상장	(47)	25.5	19.1	25.5	21.3	4.3	4.3
설립연도	1900년대	(17)	35.3	5.9	23.5	17.6	11.8	5.9
	2000년대	(32)	25.0	15.6	25.0	25.0	6.3	3.1
	2010년대	(25)	16.0	44.0	20.0	16.0	0.0	4.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4)	29.5	11.4	27.3	18.2	9.1	4.5
	아니오	(30)	16.7	40.0	16.7	23.3	0.0	3.3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11)	36.4	18.2	18.2	18.2	0.0	9.1
	고도성장기	(47)	12.8	31.9	29.8	19.1	4.3	2.1
	성숙기	(15)	46.7	0.0	6.7	26.7	13.3	6.7
	쇠퇴기	(1)	100.0	0.0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6)	25.0	18.8	25.0	31.3	0.0	0.0
	해외	(4)	50.0	0.0	0.0	25.0	25.0	0.0
	국내+해외	(54)	22.2	25.9	24.1	16.7	5.6	5.6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1)	9.1	45.5	18.2	9.1	9.1	9.1
	창업보육과정	(5)	0.0	40.0	40.0	20.0	0.0	0.0
	독자적	(58)	29.3	17.2	22.4	22.4	5.2	3.4

<표 IV-63>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	횡령이나 배임 등 법률적 문제야기 소지내재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 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전체		(37)	37.8	27.0	18.9	10.8	2.7	2.7
업종	제조업	(22)	31.8	27.3	22.7	9.1	4.5	4.5
	도·소매업	(3)	66.7	33.3	0.0	0.0	0.0	0.0
	정보통신업	(2)	50.0	0.0	0.0	50.0	0.0	0.0
	기술서비스업	(9)	33.3	33.3	22.2	11.1	0.0	0.0
	예술관련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2)	41.7	25.0	16.7	8.3	0.0	8.3
	50~99명	(10)	20.0	40.0	30.0	10.0	0.0	0.0
	100~199명	(10)	40.0	30.0	10.0	20.0	0.0	0.0
	200명 이상	(5)	60.0	0.0	20.0	0.0	20.0	0.0
상장시장	코스닥	(16)	37.5	18.8	18.8	18.8	6.3	0.0
	코넥스	(1)	100.0	0.0	0.0	0.0	0.0	0.0
	비상장	(20)	35.0	35.0	20.0	5.0	0.0	5.0
설립연도	1900년대	(2)	50.0	0.0	0.0	0.0	50.0	0.0
	2000년대	(16)	18.8	37.5	31.3	12.5	0.0	0.0
	2010년대	(19)	52.6	21.1	10.5	10.5	0.0	5.3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4)	28.6	42.9	21.4	0.0	7.1	0.0
	아니오	(23)	43.5	17.4	17.4	17.4	0.0	4.3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0)	0.0	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6)	33.3	0.0	16.7	33.3	0.0	16.7
	고도성장기	(30)	40.0	33.3	16.7	6.7	3.3	0.0
	성숙기	(1)	0.0	0.0	10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6)	33.3	33.3	33.3	0.0	0.0	0.0
	해외	(1)	0.0	0.0	0.0	100.0	0.0	0.0
	국내+해외	(30)	40.0	26.7	16.7	10.0	3.3	3.3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50.0	25.0	0.0	0.0	12.5	12.5
	창업보육과정	(5)	40.0	40.0	20.0	0.0	0.0	0.0
	독자적	(24)	33.3	25.0	25.0	16.7	0.0	0.0

<표 IV-64>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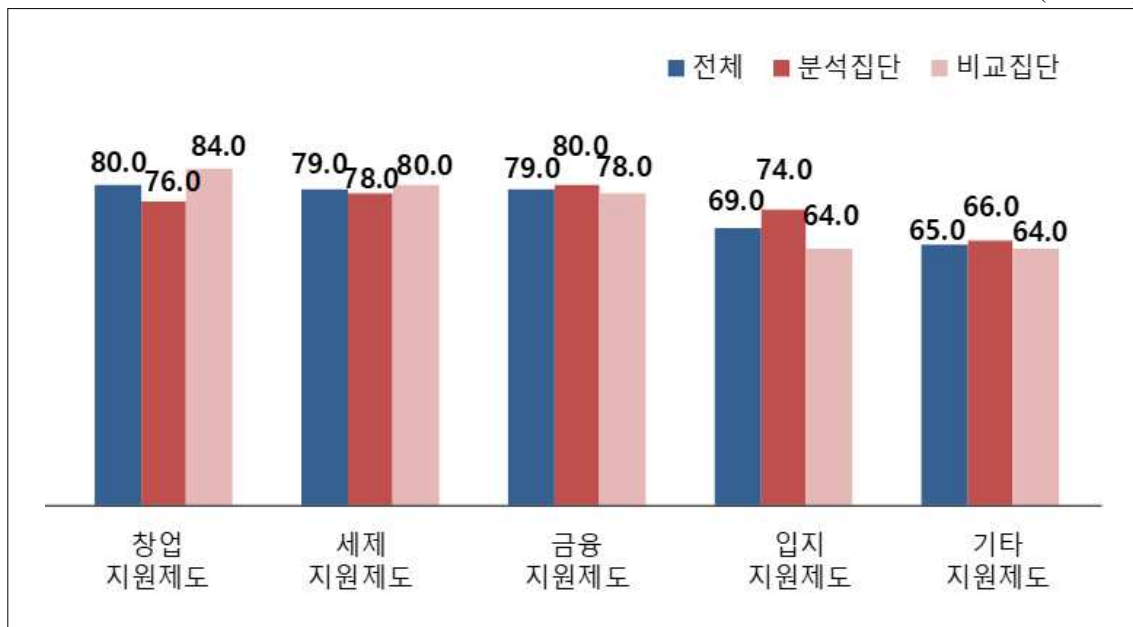
	사례수	경기침체 및 벤처경기 쇠퇴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	횡령이나 배임 등 법률적 문제야기 소지내재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 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전체	(37)	37.8	21.6	18.9	8.1	8.1	5.4	
업종	제조업	(33)	36.4	24.2	15.2	9.1	9.1	6.1
	정보통신업	(1)	0.0	0.0	10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3)	66.7	0.0	33.3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4)	35.7	35.7	21.4	0.0	7.1	0.0
	50~99명	(12)	33.3	8.3	16.7	16.7	8.3	16.7
	100~199명	(8)	50.0	12.5	12.5	12.5	12.5	0.0
	200명 이상	(3)	33.3	33.3	33.3	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9)	33.3	22.2	11.1	11.1	11.1	11.1
	코넥스	(1)	0.0	0.0	100.0	0.0	0.0	0.0
	비상장	(27)	40.7	22.2	18.5	7.4	7.4	3.7
설립연도	1900년대	(15)	40.0	20.0	26.7	0.0	6.7	6.7
	2000년대	(16)	37.5	18.8	12.5	12.5	12.5	6.3
	2010년대	(6)	33.3	33.3	16.7	16.7	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30)	43.3	16.7	20.0	3.3	10.0	6.7
	아니오	(7)	14.3	42.9	14.3	28.6	0.0	0.0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5)	40.0	20.0	40.0	0.0	0.0	0.0
	고도성장기	(17)	23.5	23.5	23.5	17.6	5.9	5.9
	성숙기	(14)	50.0	21.4	7.1	0.0	14.3	7.1
	쇠퇴기	(1)	100.0	0.0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0)	40.0	30.0	20.0	10.0	0.0	0.0
	해외	(3)	33.3	33.3	0.0	0.0	33.3	0.0
	국내+해외	(24)	37.5	16.7	20.8	8.3	8.3	8.3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3)	33.3	33.3	0.0	33.3	0.0	0.0
	독자적	(34)	38.2	20.6	20.6	5.9	8.8	5.9

11) 정책지원제도 인지 여부

-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제도 중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8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세제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각 79.0%), 입지지원제도(69.0%), 기타 지원제도(65.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창업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집단의 인지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금융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기타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분석집단의 인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2] 정책지원제도 인지 비율

(단위: %)



<표 IV-65> 정책지원제도 인지율_전체

(단위: %)

		사례수	창업 지원제도	세계 지원제도	금융 지원제도	입지 지원제도	기타 지원제도
전체		(100)	80.0	79.0	79.0	69.0	65.0
집단유형	분석집단	(50)	76.0	78.0	80.0	74.0	66.0
	비교집단	(50)	84.0	80.0	78.0	64.0	64.0
업종	제조업	(72)	79.2	77.8	79.2	68.1	65.3
	도·소매업	(3)	66.7	66.7	66.7	33.3	33.3
	정보통신업	(5)	80.0	80.0	80.0	80.0	80.0
	기술서비스업	(19)	84.2	84.2	84.2	78.9	68.4
	예술관련서비스업	(1)	100.0	10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77.4	71.0	77.4	74.2	71.0
	50~99명	(34)	82.4	82.4	79.4	61.8	52.9
	100~199명	(24)	79.2	83.3	79.2	66.7	66.7
	200명 이상	(11)	81.8	81.8	81.8	81.8	81.8
상장시장	코스닥	(34)	88.2	91.2	91.2	88.2	79.4
	코넥스	(3)	66.7	66.7	100.0	100.0	66.7
	비상장	(63)	76.2	73.0	71.4	57.1	57.1
설립연도	1900년대	(18)	77.8	66.7	66.7	55.6	55.6
	2000년대	(48)	79.2	81.3	79.2	68.8	66.7
	2010년대	(34)	82.4	82.4	85.3	76.5	67.6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86.6	85.1	83.6	71.6	68.7
	아니오	(33)	66.7	66.7	69.7	63.6	57.6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100.0	100.0	100.0	100.0
	초기성장기	(18)	72.2	77.8	88.9	72.2	55.6
	고도성장기	(64)	79.7	78.1	75.0	67.2	65.6
	성숙기	(16)	87.5	81.3	81.3	68.8	68.8
	쇠퇴기	(1)	100.0	100.0	100.0	100.0	100.0
목표시장	국내	(17)	70.6	64.7	64.7	41.2	41.2
	해외	(5)	80.0	80.0	60.0	60.0	40.0
	국내+해외	(78)	82.1	82.1	83.3	75.6	71.8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75.0	75.0	83.3	66.7	66.7
	창업보육과정	(6)	100.0	100.0	100.0	100.0	100.0
	독자적	(82)	79.3	78.0	76.8	67.1	62.2

<표 IV-66> 정책지원제도 인지율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금융 지원제도	세계 지원제도	창업 지원제도	입지 지원제도	기타 지원제도
전체		(50)	80.0	78.0	76.0	74.0	66.0
업종	제조업	(29)	82.8	75.9	72.4	79.3	69.0
	도·소매업	(3)	66.7	66.7	66.7	33.3	33.3
	정보통신업	(3)	66.7	66.7	66.7	66.7	66.7
	기술서비스업	(14)	85.7	85.7	85.7	78.6	71.4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100.0	10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86.7	73.3	73.3	86.7	80.0
	50~99명	(16)	75.0	81.3	81.3	62.5	50.0
	100~199명	(13)	76.9	76.9	69.2	69.2	61.5
	200명 이상	(6)	83.3	83.3	83.3	83.3	83.3
상장시장	코스닥	(20)	90.0	90.0	85.0	90.0	75.0
	코넥스	(1)	100.0	0.0	0.0	100.0	0.0
	비상장	(29)	72.4	72.4	72.4	62.1	62.1
설립연도	1900년대	(2)	50.0	50.0	50.0	50.0	50.0
	2000년대	(24)	83.3	83.3	79.2	75.0	66.7
	2010년대	(24)	79.2	75.0	75.0	75.0	66.7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6)	88.5	88.5	88.5	80.8	73.1
	아니오	(24)	70.8	66.7	62.5	66.7	58.3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100.0	100.0	100.0	100.0
	초기성장기	(9)	77.8	55.6	44.4	77.8	44.4
	고도성장기	(39)	79.5	82.1	82.1	71.8	69.2
	성숙기	(1)	100.0	100.0	100.0	100.0	100.0
목표시장	국내	(6)	66.7	66.7	66.7	33.3	33.3
	해외	(2)	50.0	100.0	50.0	50.0	0.0
	국내+해외	(42)	83.3	78.6	78.6	81.0	73.8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75.0	62.5	62.5	62.5	62.5
	창업보육과정	(6)	100.0	100.0	100.0	100.0	100.0
	독자적	(36)		77.8	75.0	72.2	61.1

<표 IV-67> 정책지원제도 인지도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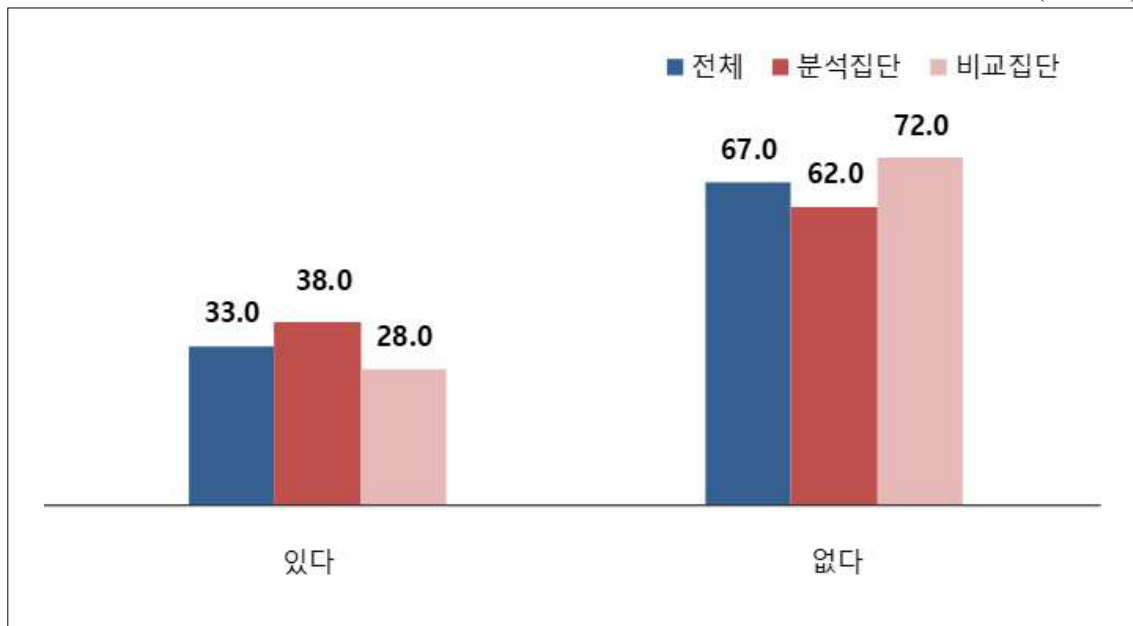
		사례수	창업 지원제도	세계 지원제도	금융 지원제도	입지 지원제도	기타 지원제도
전체		(50)	84.0	80.0	78.0	64.0	64.0
업종	제조업	(43)	83.7	79.1	76.7	60.5	62.8
	정보통신업	(2)	100.0	100.0	100.0	100.0	100.0
	기술서비스업	(5)	80.0	80.0	80.0	80.0	6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81.3	68.8	68.8	62.5	62.5
	50~99명	(18)	83.3	83.3	83.3	61.1	55.6
	100~199명	(11)	90.9	90.9	81.8	63.6	72.7
	200명 이상	(5)	80.0	80.0	80.0	80.0	80.0
상장시장	코스닥	(14)	92.9	92.9	92.9	85.7	85.7
	코넥스	(2)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상장	(34)	79.4	73.5	70.6	52.9	52.9
설립연도	1900년대	(16)	81.3	68.8	68.8	56.3	56.3
	2000년대	(24)	79.2	79.2	75.0	62.5	66.7
	2010년대	(10)	100.0	100.0	100.0	80.0	7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1)	85.4	82.9	80.5	65.9	65.9
	아니오	(9)	77.8	66.7	66.7	55.6	55.6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9)	100.0	100.0	100.0	66.7	66.7
	고도성장기	(25)	76.0	72.0	68.0	60.0	60.0
	성숙기	(15)	86.7	80.0	80.0	66.7	66.7
	쇠퇴기	(1)	100.0	100.0	100.0	100.0	100.0
목표시장	국내	(11)	72.7	63.6	63.6	45.5	45.5
	해외	(3)	100.0	66.7	66.7	66.7	66.7
	국내+해외	(36)	86.1	86.1	83.3	69.4	69.4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100.0	100.0	100.0	75.0	75.0
	독자적	(46)	82.6	78.3	76.1	63.0	63.0

12)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

- 최근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0%로 경험이 없는 기업(67.0%)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000년대에 설립된 기업의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 비율은 41.7%로 다른 시기에 설립된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3]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

(단위: %)



<표 IV-68>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전체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0)	33.0	67.0
집단유형	분석집단	(50)	38.0	62.0
	비교집단	(50)	28.0	72.0
업종	제조업	(72)	34.7	65.3
	도·소매업	(3)	33.3	66.7
	정보통신업	(5)	20.0	80.0
	기술서비스업	(19)	31.6	68.4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10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29.0	71.0
	50~99명	(34)	41.2	58.8
	100~199명	(24)	29.2	70.8
	200명 이상	(11)	27.3	72.7
상장시장	코스닥	(34)	38.2	61.8
	코넥스	(3)	66.7	33.3
	비상장	(63)	28.6	71.4
설립연도	1900년대	(18)	27.8	72.2
	2000년대	(48)	41.7	58.3
	2010년대	(34)	23.5	76.5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31.3	68.7
	아니오	(33)	36.4	63.6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초기성장기	(18)	38.9	61.1
	고도성장기	(64)	31.3	68.8
	성숙기	(16)	31.3	68.8
	쇠퇴기	(1)	0.0	100.0
목표시장	국내	(17)	41.2	58.8
	해외	(5)	40.0	60.0
	국내+해외	(78)	30.8	69.2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8.3	91.7
	창업보육과정	(6)	16.7	83.3
	독자적	(82)	37.8	62.2

<표 IV-69>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0)	38.0	62.0
업종	제조업	(29)	41.4	58.6
	도·소매업	(3)	33.3	66.7
	정보통신업	(3)	33.3	66.7
	기술서비스업	(14)	35.7	64.3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10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26.7	73.3
	50~99명	(16)	62.5	37.5
	100~199명	(13)	23.1	76.9
	200명 이상	(6)	33.3	66.7
상장시장	코스닥	(20)	45.0	55.0
	코넥스	(1)	0.0	100.0
	비상장	(29)	34.5	65.5
설립연도	1900년대	(2)	50.0	50.0
	2000년대	(24)	45.8	54.2
	2010년대	(24)	29.2	70.8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6)	42.3	57.7
	아니오	(24)	33.3	66.7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초기성장기	(9)	33.3	66.7
	고도성장기	(39)	35.9	64.1
	성숙기	(1)	100.0	0.0
목표시장	국내	(6)	66.7	33.3
	해외	(2)	50.0	50.0
	국내+해외	(42)	33.3	66.7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12.5	87.5
	창업보육과정	(6)	16.7	83.3
	독자적	(36)	47.2	52.8

<표 IV-70>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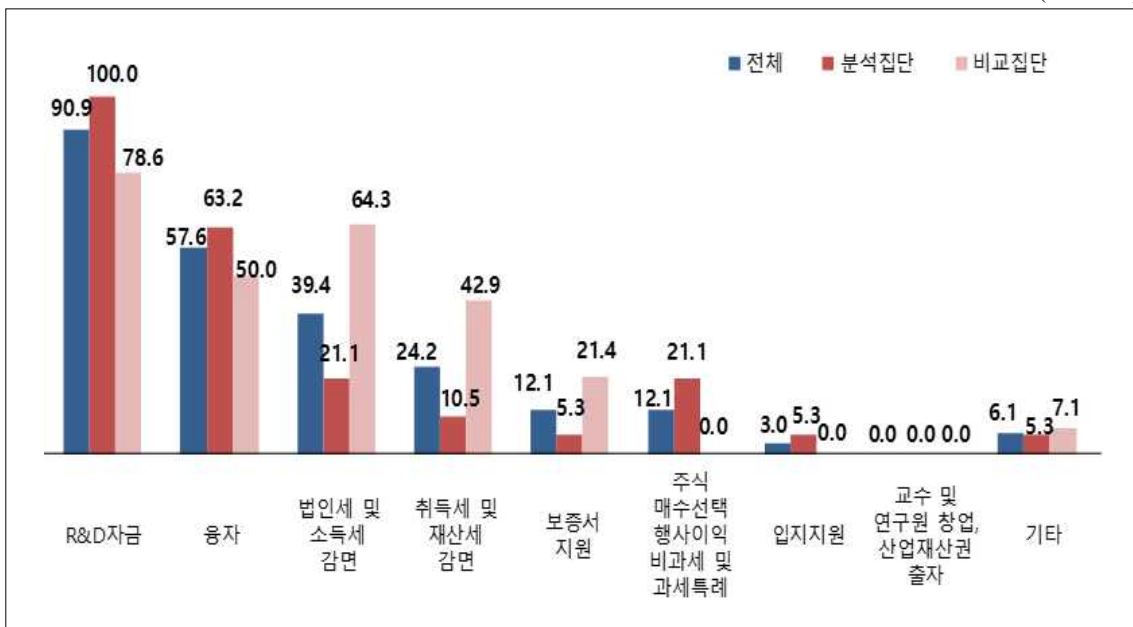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50)	28.0	72.0
업종	제조업	(43)	30.2	69.8
	정보통신업	(2)	0.0	100.0
	기술서비스업	(5)	20.0	8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31.3	68.8
	50~99명	(18)	22.2	77.8
	100~199명	(11)	36.4	63.6
	200명 이상	(5)	20.0	80.0
상장시장	코스닥	(14)	28.6	71.4
	코넥스	(2)	100.0	0.0
	비상장	(34)	23.5	76.5
설립연도	1900년대	(16)	25.0	75.0
	2000년대	(24)	37.5	62.5
	2010년대	(10)	10.0	9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1)	24.4	75.6
	아니오	(9)	44.4	55.6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9)	44.4	55.6
	고도성장기	(25)	24.0	76.0
	성숙기	(15)	26.7	73.3
	쇠퇴기	(1)	0.0	100.0
목표시장	국내	(11)	27.3	72.7
	해외	(3)	33.3	66.7
	국내+해외	(36)	27.8	72.2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0.0	100.0
	독자적	(46)	30.4	69.6

13)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세부항목

- 정부의 정책지원 중 R&D자금을 받은 경험이 90.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용자(57.6%),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39.4%)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산업재산권 출자에 대한 지원 경험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분석집단의 100.0%는 R&D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뒤이어 용자(63.2%),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21.1%), 주식매수선택 행사이익 비과세 및 과세특례(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비교집단의 경우 R&D자금이 78.6%로 가장 높고, 뒤이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64.3%), 용자(50.0%),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4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4]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세부항목

(단위: %)



<표 IV-71>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1_전체

(단위: %)

		사례수	R&D자금	융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전체		(33)	90.9	57.6	39.4	24.2
집단유형	분석집단	(19)	100.0	63.2	21.1	10.5
	비교집단	(14)	78.6	50.0	64.3	42.9
업종	제조업	(25)	88.0	64.0	52.0	32.0
	도·소매업	(1)	100.0	100.0	0.0	0.0
	정보통신업	(1)	10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6)	100.0	33.3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9)	77.8	77.8	33.3	22.2
	50~99명	(14)	100.0	50.0	42.9	28.6
	100~199명	(7)	85.7	57.1	42.9	28.6
	200명 이상	(3)	100.0	33.3	33.3	0.0
상장시장	코스닥	(13)	92.3	46.2	46.2	15.4
	코넥스	(2)	100.0	0.0	50.0	50.0
	비상장	(18)	88.9	72.2	33.3	27.8
설립연도	1900년대	(5)	100.0	40.0	40.0	20.0
	2000년대	(20)	85.0	60.0	55.0	35.0
	2010년대	(8)	100.0	62.5	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1)	85.7	47.6	57.1	33.3
	아니오	(12)	100.0	75.0	8.3	8.3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0.0
	초기성장기	(7)	71.4	28.6	57.1	42.9
	고도성장기	(20)	95.0	75.0	25.0	20.0
	성숙기	(5)	100.0	40.0	80.0	20.0
목표시장	국내	(7)	100.0	85.7	0.0	0.0
	해외	(2)	100.0	50.0	50.0	0.0
	국내+해외	(24)	87.5	50.0	50.0	33.3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	100.0	100.0	0.0	0.0
	창업보육과정	(1)	100.0	100.0	0.0	0.0
	독자적	(31)	90.3	54.8	41.9	25.8

<표 IV-72>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2_전체

(단위: %)

		사례수	보증서 지원	주식매수선택 행사이익 비과세 및 과세특례	입지지원	기타
전체		(33)	12.1	12.1	3.0	6.1
집단유형	분석집단	(19)	5.3	21.1	5.3	5.3
	비교집단	(14)	21.4	0.0	0.0	7.1
업종	제조업	(25)	16.0	8.0	4.0	8.0
	도·소매업	(1)	0.0	0.0	0.0	0.0
	정보통신업	(1)	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6)	0.0	33.3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9)	22.2	0.0	0.0	0.0
	50~99명	(14)	14.3	28.6	7.1	7.1
	100~199명	(7)	0.0	0.0	0.0	14.3
	200명 이상	(3)	0.0	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13)	7.7	15.4	7.7	7.7
	코넥스	(2)	50.0	0.0	0.0	0.0
	비상장	(18)	11.1	11.1	0.0	5.6
설립연도	1900년대	(5)	0.0	0.0	0.0	20.0
	2000년대	(20)	20.0	15.0	5.0	5.0
	2010년대	(8)	0.0	12.5	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1)	14.3	19.0	4.8	9.5
	아니오	(12)	8.3	0.0	0.0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0.0	0.0	0.0
	초기성장기	(7)	42.9	0.0	0.0	0.0
	고도성장기	(20)	5.0	20.0	5.0	5.0
	성숙기	(5)	0.0	0.0	0.0	20.0
목표시장	국내	(7)	0.0	0.0	0.0	0.0
	해외	(2)	0.0	0.0	0.0	0.0
	국내+해외	(24)	16.7	16.7	4.2	8.3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	0.0	0.0	0.0	0.0
	창업보육과정	(1)	0.0	0.0	0.0	0.0
	독자적	(31)	12.9	12.9	3.2	6.5

<표 IV-73>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1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R&D자금	용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주식매수선택 행사이의 비과세 및 과세특례
전체		(19)	100.0	63.2	21.1	21.1
업종	제조업	(12)	100.0	75.0	33.3	16.7
	도·소매업	(1)	100.0	100.0	0.0	0.0
	정보통신업	(1)	10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5)	100.0	40.0	0.0	40.0
인력구성	50명 미만	(4)	100.0	75.0	0.0	0.0
	50~99명	(10)	100.0	60.0	30.0	40.0
	100~199명	(3)	100.0	66.7	0.0	0.0
	200명 이상	(2)	100.0	50.0	50.0	0.0
상장시장	코스닥	(9)	100.0	55.6	22.2	22.2
	비상장	(10)	100.0	70.0	20.0	20.0
설립연도	1900년대	(1)	100.0	100.0	0.0	0.0
	2000년대	(11)	100.0	63.6	36.4	27.3
	2010년대	(7)	100.0	57.1	0.0	14.3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1)	100.0	54.5	36.4	36.4
	아니오	(8)	100.0	75.0	0.0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0.0
	초기성장기	(3)	100.0	0.0	0.0	0.0
	고도성장기	(14)	100.0	78.6	21.4	28.6
	성숙기	(1)	100.0	100.0	100.0	0.0
목표시장	국내	(4)	100.0	100.0	0.0	0.0
	해외	(1)	100.0	0.0	0.0	0.0
	국내+해외	(14)	100.0	57.1	28.6	28.6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	100.0	100.0	0.0	0.0
	창업보육과정	(1)	100.0	100.0	0.0	0.0
	독자적	(17)	100.0	58.8	23.5	23.5

<표 IV-74>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2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보증서 지원	입지지원	기타
전체		(19)	10.5	5.3	5.3	5.3
업종	제조업	(12)	16.7	8.3	8.3	8.3
	도·소매업	(1)	0.0	0.0	0.0	0.0
	정보통신업	(1)	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5)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4)	0.0	0.0	0.0	0.0
	50~99명	(10)	20.0	10.0	10.0	10.0
	100~199명	(3)	0.0	0.0	0.0	0.0
	200명 이상	(2)	0.0	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9)	11.1	0.0	11.1	0.0
	비상장	(10)	10.0	10.0	0.0	10.0
설립연도	1900년대	(1)	0.0	0.0	0.0	0.0
	2000년대	(11)	18.2	9.1	9.1	9.1
	2010년대	(7)	0.0	0.0	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1)	18.2	9.1	9.1	9.1
	아니오	(8)	0.0	0.0	0.0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0.0	0.0	0.0
	초기성장기	(3)	0.0	0.0	0.0	0.0
	고도성장기	(14)	14.3	7.1	7.1	7.1
	성숙기	(1)	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4)	0.0	0.0	0.0	0.0
	해외	(1)	0.0	0.0	0.0	0.0
	국내+해외	(14)	14.3	7.1	7.1	7.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	0.0	0.0	0.0	0.0
	창업보육과정	(1)	0.0	0.0	0.0	0.0
	독자적	(17)	11.8	5.9	5.9	5.9

<표 IV-75>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1_비교집단

(단위: %)

		사례수	R&D자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융자
전체		(14)	78.6	64.3	50.0
업종	제조업	(13)	76.9	69.2	53.8
	기술서비스업	(1)	10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5)	60.0	60.0	80.0
	50~99명	(4)	100.0	75.0	25.0
	100~199명	(4)	75.0	75.0	50.0
	200명 이상	(1)	10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4)	75.0	100.0	25.0
	코넥스	(2)	100.0	50.0	0.0
	비상장	(8)	75.0	50.0	75.0
설립연도	1900년대	(4)	100.0	50.0	25.0
	2000년대	(9)	66.7	77.8	55.6
	2010년대	(1)	100.0	0.0	10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0)	70.0	80.0	40.0
	아니오	(4)	100.0	25.0	75.0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4)	50.0	100.0	50.0
	고도성장기	(6)	83.3	33.3	66.7
	성숙기	(4)	100.0	75.0	25.0
목표시장	국내	(3)	100.0	0.0	66.7
	해외	(1)	100.0	100.0	100.0
	국내+해외	(10)	70.0	80.0	40.0
창업방식	독자적	(14)	78.6	64.3	50.0

<표 IV-76>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_항목별2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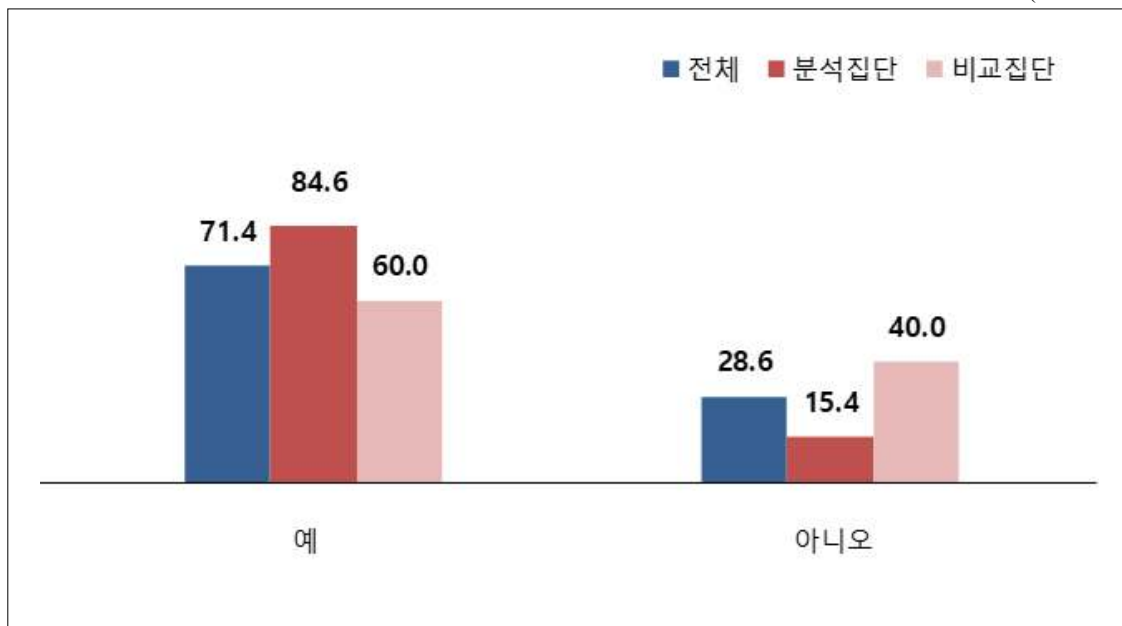
		사례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보증서 지원	기타
전체		(14)	42.9	21.4	7.1
업종	제조업	(13)	46.2	23.1	7.7
	기술서비스업	(1)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5)	40.0	40.0	0.0
	50~99명	(4)	50.0	25.0	0.0
	100~199명	(4)	50.0	0.0	25.0
	200명 이상	(1)	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4)	25.0	25.0	25.0
	코넥스	(2)	50.0	50.0	0.0
	비상장	(8)	50.0	12.5	0.0
설립연도	1900년대	(4)	25.0	0.0	25.0
	2000년대	(9)	55.6	33.3	0.0
	2010년대	(1)	0.0	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0)	50.0	20.0	10.0
	아니오	(4)	25.0	25.0	0.0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4)	75.0	75.0	0.0
	고도성장기	(6)	33.3	0.0	0.0
	성숙기	(4)	25.0	0.0	25.0
목표시장	국내	(3)	0.0	0.0	0.0
	해외	(1)	0.0	0.0	0.0
	국내+해외	(10)	60.0	30.0	10.0
창업방식	독자적	(14)	42.9	21.4	7.1

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을 물어본 결과, 있다가 71.4%로 없다(28.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고 있는 분석집단의 84.6%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 비교집단은 60.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IV-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

(단위: %)



<표 IV-7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_전체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8)	71.4	28.6
집단유형	분석집단	(13)	84.6	15.4
	비교집단	(15)	60.0	40.0
업종	제조업	(19)	63.2	36.8
	정보통신업	(2)	50.0	50.0
	기술서비스업	(7)	10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6)	66.7	33.3
	50~99명	(13)	92.3	7.7
	100~199명	(6)	33.3	66.7
	200명 이상	(3)	66.7	33.3
상장시장	코스닥	(9)	77.8	22.2
	코넥스	(1)	100.0	0.0
	비상장	(18)	66.7	33.3
설립연도	1900년대	(2)	0.0	100.0
	2000년대	(17)	76.5	23.5
	2010년대	(9)	77.8	22.2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5)	76.0	24.0
	아니오	(3)	33.3	66.7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초기성장기	(7)	100.0	0.0
	고도성장기	(17)	64.7	35.3
	성숙기	(3)	33.3	66.7
목표시장	국내	(2)	0.0	100.0
	해외	(1)	100.0	0.0
	국내+해외	(25)	76.0	24.0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	100.0	0.0
	창업보육과정	(1)	0.0	100.0
	독자적	(26)	73.1	26.9

<표 IV-7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_분석집단

(단위: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3)	84.6	15.4
업종	제조업	(7)	71.4	28.6
	정보통신업	(1)	100.0	0.0
	기술서비스업	(5)	10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	66.7	33.3
	50~99명	(6)	100.0	0.0
	100~199명	(3)	66.7	33.3
	200명 이상	(1)	100.0	0.0
상장시장	코스닥	(4)	100.0	0.0
	비상장	(9)	77.8	22.2
설립연도	2000년대	(8)	87.5	12.5
	2010년대	(5)	80.0	2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2)	83.3	16.7
	아니오	(1)	100.0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초기성장기	(3)	100.0	0.0
	고도성장기	(9)	77.8	22.2
목표시장	해외	(1)	100.0	0.0
	국내+해외	(12)	83.3	16.7
창업방식	창업보육과정	(1)	0.0	100.0
	독자적	(12)	91.7	8.3

<표 IV-7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계획_비교집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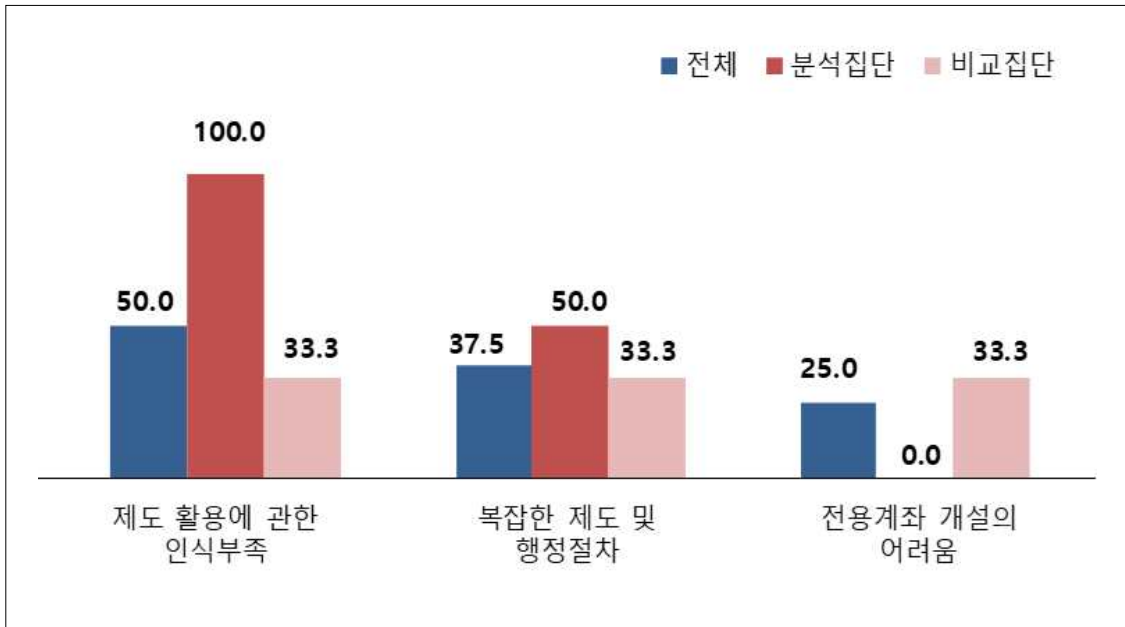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5)	60.0	40.0
업종	제조업	(12)	58.3	41.7
	정보통신업	(1)	0.0	100.0
	기술서비스업	(2)	10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	66.7	33.3
	50~99명	(7)	85.7	14.3
	100~199명	(3)	0.0	100.0
	200명 이상	(2)	50.0	50.0
상장시장	코스닥	(5)	60.0	40.0
	코넥스	(1)	100.0	0.0
	비상장	(9)	55.6	44.4
설립연도	1900년대	(2)	0.0	100.0
	2000년대	(9)	66.7	33.3
	2010년대	(4)	75.0	25.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3)	69.2	30.8
	아니오	(2)	0.0	100.0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4)	100.0	0.0
	고도성장기	(8)	50.0	50.0
	성숙기	(3)	33.3	66.7
목표시장	국내	(2)	0.0	100.0
	국내+해외	(13)	69.2	30.8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	100.0	0.0
	독자적	(14)	57.1	42.9

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이 50.0%,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가 37.5%, 전용계좌 개설에 대한 어려움이 25.0%로 나타남

[그림 IV-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중복응답)



<표 IV-8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_전체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
전체		(8)	50.0	37.5	25.0
집단유형	분석집단	(2)	100.0	50.0	0.0
	비교집단	(6)	33.3	33.3	33.3
업종	제조업	(7)	57.1	42.9	14.3
	정보통신업	(1)	0.0	0.0	100.0
인력구성	50명 미만	(2)	50.0	50.0	0.0
	50~99명	(1)	0.0	0.0	100.0
	100~199명	(4)	75.0	25.0	25.0
	200명 이상	(1)	0.0	100.0	0.0
상장시장	코스닥	(2)	0.0	50.0	50.0
	비상장	(6)	66.7	33.3	16.7
설립연도	1900년대	(2)	50.0	50.0	0.0
	2000년대	(4)	50.0	50.0	25.0
	2010년대	(2)	50.0	0.0	5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	50.0	33.3	33.3
	아니오	(2)	50.0	50.0	0.0
기업 성장단계	고도성장기	(6)	50.0	33.3	33.3
목표시장	성숙기	(2)	50.0	50.0	0.0
	국내	(2)	50.0	50.0	0.0
창업방식	국내+해외	(6)	50.0	33.3	33.3
	창업보육과정	(1)	100.0	0.0	0.0
	독자적	(7)	42.9	42.9	28.6

<표 IV-8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_분석집단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전체		(2)	100.0	50.0
업종	제조업	(2)	100.0	50.0
	50명 미만	(1)	100.0	0.0
인력구성	100~199명	(1)	100.0	100.0
	비상장	(2)	100.0	50.0
설립연도	2000년대	(1)	100.0	100.0
	2010년대	(1)	10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	100.0	50.0
	고도성장기	(2)	100.0	50.0
기업 성장단계	국내+해외	(2)	100.0	50.0
창업방식	창업보육과정	(1)	100.0	0.0
	독자적	(1)	100.0	100.0

<표 IV-8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_비교집단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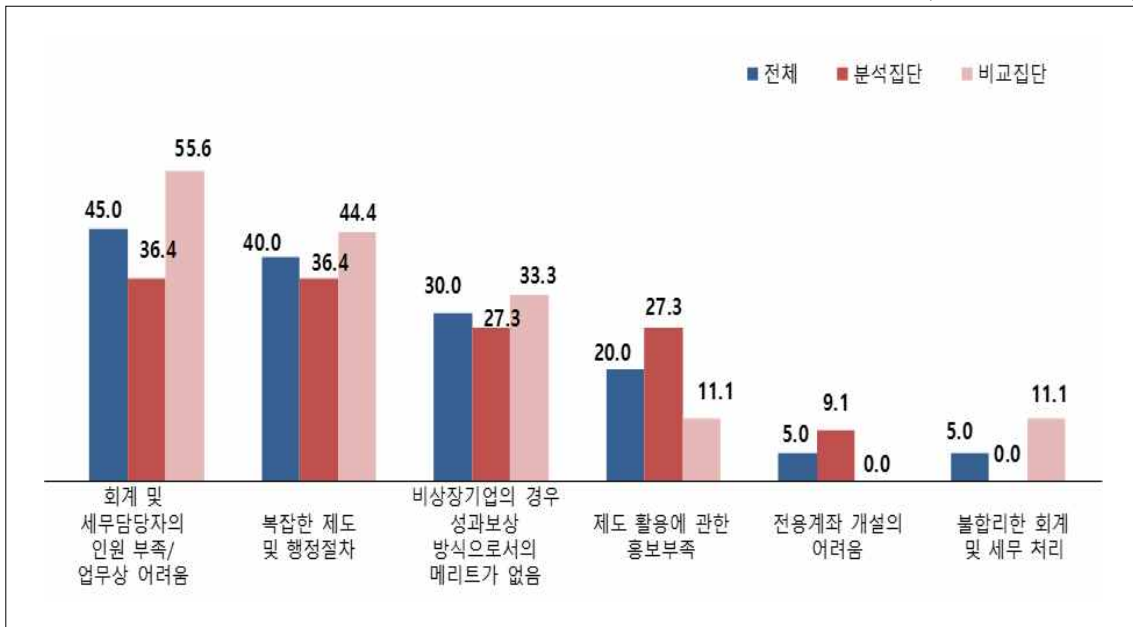
		사례수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
전체		(6)	33.3	33.3	33.3
업종	제조업	(5)	40.0	40.0	20.0
	정보통신업	(1)	0.0	0.0	10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	0.0	100.0	0.0
	50~99명	(1)	0.0	0.0	100.0
	100~199명	(3)	66.7	0.0	33.3
	200명 이상	(1)	0.0	100.0	0.0
상장시장	코스닥	(2)	0.0	50.0	50.0
	비상장	(4)	50.0	25.0	25.0
설립연도	1900년대	(2)	50.0	50.0	0.0
	2000년대	(3)	33.3	33.3	33.3
	2010년대	(1)	0.0	0.0	10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	25.0	25.0	50.0
	아니오	(2)	50.0	50.0	0.0
기업 성장단계	고도성장기	(4)	25.0	25.0	50.0
	성숙기	(2)	50.0	50.0	0.0
목표시장	국내	(2)	50.0	50.0	0.0
	국내+해외	(4)	25.0	25.0	50.0
창업방식	독자적	(6)	33.3	33.3	33.3

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을 물어본 결과, 회계 및 세무담당자의 인원 부족·업무상 어려움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는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40.0%),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30.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비교집단의 경우 분석집단에 비해 회계 및 세무담당자의 인원 부족·업무상 어려움,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의 경우 비교집단에 비해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 부족,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표 IV -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_전체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회계 및 세무 담당자의 인원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부족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
전체		(20)	45.0	40.0	30.0	20.0	5.0	5.0
집단유형	분석집단	(11)	36.4	36.4	27.3	27.3	9.1	0.0
	비교집단	(9)	55.6	44.4	33.3	11.1	0.0	11.1
업종	제조업	(12)	50.0	41.7	33.3	16.7	8.3	8.3
	정보통신업	(1)	100.0	100.0	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7)	28.6	28.6	28.6	28.6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4)	50.0	75.0	25.0	0.0	0.0	0.0
	50~99명	(12)	41.7	33.3	33.3	33.3	0.0	8.3
	100~199명	(2)	0.0	50.0	50.0	0.0	0.0	0.0
	200명 이상	(2)	100.0	0.0	0.0	0.0	50.0	0.0
상장시장	코스닥	(7)	71.4	28.6	14.3	28.6	14.3	0.0
	코넥스	(1)	100.0	0.0	0.0	0.0	0.0	0.0
	비상장	(12)	25.0	50.0	41.7	16.7	0.0	8.3
설립연도	2000년대	(13)	30.8	38.5	30.8	7.7	7.7	7.7
	2010년대	(7)	71.4	42.9	28.6	42.9	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9)	42.1	36.8	31.6	21.1	5.3	5.3
	아니오	(1)	100.0	100.0	0.0	0.0	0.0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10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7)	71.4	42.9	42.9	28.6	0.0	0.0
	고도성장기	(11)	27.3	27.3	27.3	18.2	9.1	9.1
	성숙기	(1)	0.0	100.0	0.0	0.0	0.0	0.0
목표시장	해외	(1)	100.0	0.0	0.0	100.0	0.0	0.0
	국내+해외	(19)	42.1	42.1	31.6	15.8	5.3	5.3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	100.0	0.0	100.0	100.0	0.0	0.0
	독자적	(19)	42.1	42.1	26.3	15.8	5.3	5.3

<표 IV-8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_분석집단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회계 및 세무 담당자의 인원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 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부족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
전체		(11)	36.4	36.4	27.3	27.3	9.1
업종	제조업	(5)	60.0	40.0	20.0	20.0	20.0
	정보통신업	(1)	100.0	100.0	0.0	0.0	0.0
	기술서비스업	(5)	0.0	20.0	40.0	4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2)	50.0	100.0	0.0	0.0	0.0
	50~99명	(6)	33.3	16.7	33.3	50.0	0.0
	100~199명	(2)	0.0	50.0	50.0	0.0	0.0
	200명 이상	(1)	100.0	0.0	0.0	0.0	100.0
상장시장	코스닥	(4)	75.0	0.0	0.0	50.0	25.0
	비상장	(7)	14.3	57.1	42.9	14.3	0.0
설립연도	2000년대	(7)	28.6	28.6	42.9	14.3	14.3
	2010년대	(4)	50.0	50.0	0.0	50.0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10)	30.0	30.0	30.0	30.0	10.0
	아니오	(1)	100.0	100.0	0.0	0.0	0.0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100.0	0.0	0.0	0.0
	초기성장기	(3)	33.3	33.3	33.3	33.3	0.0
	고도성장기	(7)	28.6	28.6	28.6	28.6	14.3
목표시장	해외	(1)	100.0	0.0	0.0	100.0	0.0
	국내+해외	(10)	30.0	40.0	30.0	20.0	10.0
창업방식	독자적	(11)	36.4	36.4	27.3	27.3	9.1

<표 IV-8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_비교집단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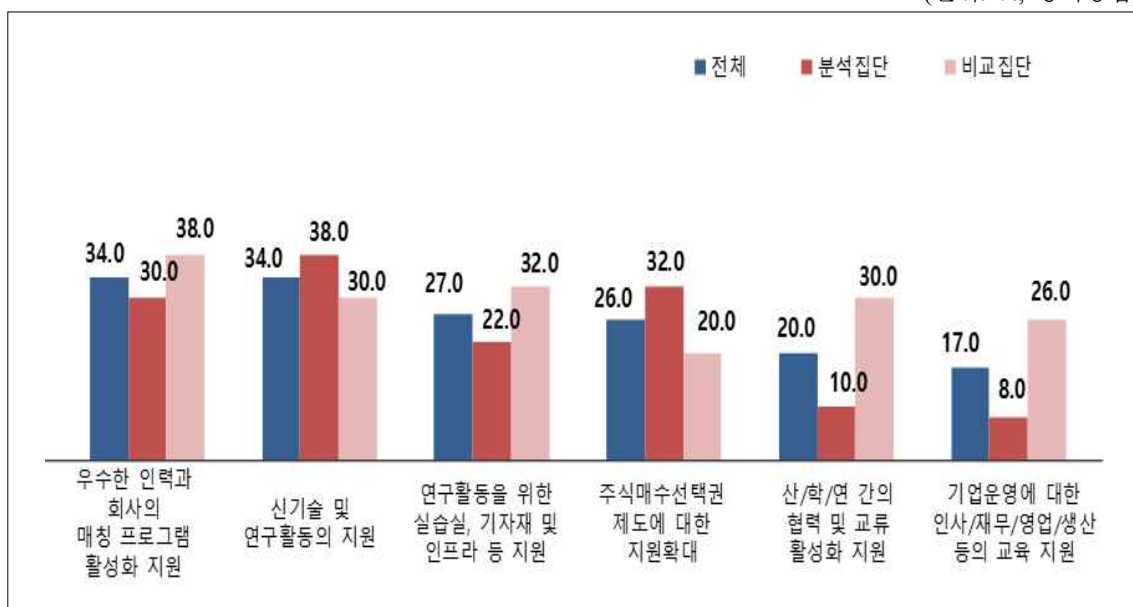
		사례수	회계 및 세무 담당자의 인원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부족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처리
전체		(9)	55.6	44.4	33.3	11.1	11.1
업종	제조업	(7)	42.9	42.9	42.9	14.3	14.3
	기술서비스업	(2)	100.0	5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2)	50.0	50.0	50.0	0.0	0.0
	50~99명	(6)	50.0	50.0	33.3	16.7	16.7
	200명 이상	(1)	100.0	0.0	0.0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3)	66.7	66.7	33.3	0.0	0.0
	코넥스	(1)	100.0	0.0	0.0	0.0	0.0
	비상장	(5)	40.0	40.0	40.0	20.0	20.0
설립연도	2000년대	(6)	33.3	50.0	16.7	0.0	16.7
	2010년대	(3)	100.0	33.3	66.7	33.3	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9)	55.6	44.4	33.3	11.1	11.1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4)	100.0	50.0	50.0	25.0	0.0
	고도성장기	(4)	25.0	25.0	25.0	0.0	25.0
	성숙기	(1)	0.0	10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해외	(9)	55.6	44.4	33.3	11.1	11.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	100.0	0.0	100.0	100.0	0.0
	독자적	(8)	50.0	50.0	25.0	0.0	12.5

17)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

-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물어본 결과,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신기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이 34.0%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이 25.0%로 다른 업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분석집단의 경우 신기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32.0%),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30.0%), 연구활동을 위한 실습실, 기자재 및 인프라 등 지원(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교집단의 경우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38.0%로 가장 높고, 뒤이어 연구활동을 위한 실습실, 기자재 및 인프라 등 지원(32.0%), 신기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과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각 3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8]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

(단위: %, 중복응답)



<표 IV-86>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_전체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신기술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연구 활동을 위한 실습실, 기자재 및 인프라 등 지원	주식매수 선택권 제도에 대한 지원확대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기업 운영에 대한 인사/재무/영업/생산 등의 교육지원	
전체	(100)	34.0	34.0	27.0	26.0	20.0	17.0	
집단유형	분석집단	(50)	30.0	38.0	22.0	32.0	10.0	8.0
	비교집단	(50)	38.0	30.0	32.0	20.0	30.0	26.0
업종	제조업	(72)	36.1	34.7	22.2	25.0	25.0	16.7
	도·소매업	(3)	33.3	33.3	0.0	33.3	0.0	0.0
	정보통신업	(5)	20.0	20.0	60.0	20.0	0.0	20.0
	기술서비스업	(19)	26.3	36.8	42.1	31.6	10.5	21.1
	예술관련서비스업	(1)	100.0	0.0	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31)	25.8	41.9	25.8	38.7	12.9	16.1
	50~99명	(34)	47.1	32.4	23.5	23.5	20.6	14.7
	100~199명	(24)	25.0	29.2	25.0	20.8	29.2	20.8
	200명 이상	(11)	36.4	27.3	45.5	9.1	18.2	18.2
상장시장	코스닥	(34)	26.5	20.6	38.2	23.5	17.6	14.7
	코넥스	(3)	33.3	0.0	66.7	66.7	33.3	33.3
	비상장	(63)	38.1	42.9	19.0	25.4	20.6	17.5
설립연도	1900년대	(18)	22.2	33.3	27.8	16.7	16.7	33.3
	2000년대	(48)	39.6	29.2	31.3	31.3	25.0	10.4
	2010년대	(34)	32.4	41.2	20.6	23.5	14.7	17.6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67)	38.8	38.8	23.9	23.9	26.9	20.9
	아니오	(33)	24.2	24.2	33.3	30.3	6.1	9.1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0.0	100.0	100.0	0.0	0.0	100.0
	초기성장기	(18)	33.3	50.0	55.6	38.9	44.4	22.2
	고도성장기	(64)	28.1	29.7	18.8	26.6	10.9	10.9
	성숙기	(16)	56.3	31.3	25.0	12.5	25.0	31.3
	쇠퇴기	(1)	100.0	0.0	0.0	0.0	100.0	0.0
목표시장	국내	(17)	23.5	47.1	11.8	23.5	11.8	23.5
	해외	(5)	40.0	40.0	40.0	40.0	20.0	40.0
	국내+해외	(78)	35.9	30.8	29.5	25.6	21.8	14.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12)	41.7	33.3	16.7	25.0	0.0	0.0
	창업보육과정	(6)	0.0	50.0	0.0	66.7	16.7	0.0
	독자적	(82)	35.4	32.9	30.5	23.2	23.2	20.7

<표 IV-87>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_분석집단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신기술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주식매수 선택권 제도에 대한 지원확대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연구 활동을 위한 실습실, 기자재 및 인프라 등 지원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기업 운영에 대한 인사/ 재무/ 영업/ 생산 등의 교육지원	
전체	(50)	38.0	32.0	30.0	22.0	10.0	8.0	
업종	제조업	(29)	37.9	34.5	27.6	13.8	13.8	3.4
	도·소매업	(3)	33.3	33.3	33.3	0.0	0.0	0.0
	정보통신업	(3)	33.3	0.0	33.3	66.7	0.0	33.3
	기술서비스업	(14)	42.9	35.7	28.6	35.7	7.1	14.3
	예술관련서비스업	(1)	0.0	0.0	100.0	0.0	0.0	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5)	40.0	46.7	13.3	20.0	6.7	13.3
	50~99명	(16)	43.8	31.3	37.5	25.0	6.3	12.5
	100~199명	(13)	30.8	23.1	30.8	23.1	23.1	0.0
	200명 이상	(6)	33.3	16.7	50.0	16.7	0.0	0.0
상장시장	코스닥	(20)	30.0	25.0	35.0	25.0	5.0	0.0
	코넥스	(1)	0.0	100.0	0.0	0.0	0.0	0.0
	비상장	(29)	44.8	34.5	27.6	20.7	13.8	13.8
설립연도	1900년대	(2)	50.0	0.0	50.0	0.0	0.0	0.0
	2000년대	(24)	33.3	37.5	29.2	29.2	16.7	4.2
	2010년대	(24)	41.7	29.2	29.2	16.7	4.2	12.5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26)	53.8	34.6	34.6	15.4	15.4	7.7
	아니오	(24)	20.8	29.2	25.0	29.2	4.2	8.3
기업 성장단계	창업기	(1)	100.0	0.0	0.0	100.0	0.0	100.0
	초기성장기	(9)	33.3	55.6	33.3	55.6	22.2	11.1
	고도성장기	(39)	35.9	28.2	28.2	12.8	7.7	5.1
	성숙기	(1)	100.0	0.0	100.0	0.0	0.0	0.0
목표시장	국내	(6)	50.0	33.3	0.0	0.0	0.0	16.7
	해외	(2)	50.0	50.0	50.0	50.0	50.0	0.0
	국내+해외	(42)	35.7	31.0	33.3	23.8	9.5	7.1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8)	37.5	12.5	50.0	12.5	0.0	0.0
	창업보육과정	(6)	50.0	66.7	0.0	0.0	16.7	0.0
	독자적	(36)	36.1	30.6	30.6	27.8	11.1	11.1

<표 IV-88>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_비교집단

(단위: %, 중복응답)

	사례수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연구 활동을 위한 실습실, 기자재 및 인프라 등 지원	신기술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산/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지원	기업 운영에 대한 인사/재무/영업/생산 등의 교육지원	주식매수 선택권 제도에 대한 지원확대	
전체	(50)	38.0	32.0	30.0	30.0	26.0	20.0	
업종	제조업	(43)	41.9	27.9	32.6	32.6	25.6	18.6
	정보통신업	(2)	0.0	50.0	0.0	0.0	0.0	50.0
	기술서비스업	(5)	20.0	60.0	20.0	20.0	40.0	20.0
인력구성	50명 미만	(16)	37.5	31.3	43.8	18.8	18.8	31.3
	50~99명	(18)	55.6	22.2	22.2	33.3	16.7	16.7
	100~199명	(11)	18.2	27.3	27.3	36.4	45.5	18.2
	200명 이상	(5)	20.0	80.0	20.0	40.0	40.0	0.0
상장시장	코스닥	(14)	14.3	57.1	7.1	35.7	35.7	21.4
	코넥스	(2)	50.0	100.0	0.0	50.0	50.0	50.0
	비상장	(34)	47.1	17.6	41.2	26.5	20.6	17.6
설립연도	1900년대	(16)	18.8	31.3	31.3	18.8	37.5	18.8
	2000년대	(24)	50.0	33.3	25.0	33.3	16.7	25.0
	2010년대	(10)	40.0	30.0	40.0	40.0	30.0	10.0
벤처기업 해당여부	예	(41)	41.5	29.3	29.3	34.1	29.3	17.1
	아니오	(9)	22.2	44.4	33.3	11.1	11.1	33.3
기업 성장단계	초기성장기	(9)	33.3	55.6	66.7	66.7	33.3	22.2
	고도성장기	(25)	28.0	28.0	20.0	16.0	20.0	24.0
	성숙기	(15)	53.3	26.7	26.7	26.7	33.3	13.3
	쇠퇴기	(1)	100.0	0.0	0.0	100.0	0.0	0.0
목표시장	국내	(11)	36.4	18.2	45.5	18.2	27.3	18.2
	해외	(3)	33.3	33.3	33.3	0.0	66.7	33.3
	국내+해외	(36)	38.9	36.1	25.0	36.1	22.2	19.4
창업방식	분사/계열사	(4)	25.0	25.0	25.0	0.0	0.0	50.0
	독자적	(46)	39.1	32.6	30.4	32.6	28.3	17.4

V. 타당성 평가



V. 타당성 평가

1.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 국내에서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며, 문헌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 역시 드문 편임
 - 정유석(201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상 과세 시기 및 소득유형의 문제점,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손금산입시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 미실현이득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
 - 안은정(2015)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상 과세 시기 및 소득유형의 문제점, 손금산입시기, 과도한 규제,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용 및 비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의 조세부담능력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

<표 V-1>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정유석 (2014)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에 대한 고찰	일본, 미국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최근(2014년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방안 강구
안은정 (2015)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	벤처기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
Elizabeth Ekmekjian, Martin Gritsch and Tricia Coxwell Snyder (2001)	Taxing Options: The Impact of Tax-Favored Treatment on Employee Compensation	우대제제가 무보수 보상(nonwage compensation)인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임금(wage)과 주식매수선택권 간 종업원 선택에 미치는 우대제제의 영향력을 검토

2. 우리나라 조세지원 및 주요국의 조세지원 제도 비교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가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및 프랑스임
 - 다만, 기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가 있음
 - 각 국가별로 적격요건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적격요건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미국은 주식매수선택권 2년 보유, 이전불가, 근로자는 총주식의 10% 미만 소유, 근로자는 연간 행사가액 10만달러 이하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처분시점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음
 -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담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우리나라와 달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고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라고 볼 수 없으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임

- 일본은 부여일부터 2년 경과 후 행사 가능, 이전불가, 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되는 불입액 합계액이 1,200만엔 이하의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시점의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고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한 과세특례와 중소기업에만 적용 가능한 과세특례의 두 제도를 두고 있음
 - 총자산 3,000파운드 미만, 상시근로자 수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요건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근로자가 주당 최저 25시간 이상 근무 또는 근로시간의 75%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며, 총주식의 30% 미만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함

- 과세특례 한도는 근로소득자 1인당 25만파운드를 넘지 못하고, 기업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총금액도 300만파운드를 넘지 못함
 - 영국의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규모에 제한을 두고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그 외 별도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싱가포르의 일반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행사시점 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75%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싱가포르에 등록하고, 소재한 기업으로 행사가액이 부여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1년 이후, 행사가액이 부여일의 주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2년 이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해야 함
 - 또한, 25%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니어야 하며, 주당 30시간 이상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됨
 -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75%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벤처기업에 대한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프랑스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는 상장회사나 국외상장회사의 프랑스 자회사에 적용하는 프랑스적격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신설비상장법인에 적용하는 BSPCB로 구분할 수 있음
- 신설비상장법인에 적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사기간,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은 주주가 승인해야 하고, 주주는 대상자 명단과 발행할 수량을 정해야 함
 - 또한, 통상 자본금 1억 5천만유로 이하의 EU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비상장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업력이 15년 이하이면서 개인주주 지분율이 25% 이상이거나, 개인주주 지분율이 75%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적격요건으로 함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음

- 독일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행사시점과 양도시점에 각각 근로소득세 및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음

-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비교한 결과
 -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여 규모가 작고 신설기업일수록 더 큰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국가로는 영국, 싱가포르 및 프랑스가 해당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
 -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영국 및 프랑스임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법상 별도의 적격요건 없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은 엄격한 편은 아니지만 활용도가 미미한 편임
 -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이 많은 편이 아니며, 제도의 인식 및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2017년 12월 말 기준 전체 벤처기업 수는 전년(33,289개)에 비해 5.7% 증가한 35,187개임
 - 벤처기업의 2017년 12월말 기준 총매출액은 약 225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며,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64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함
 -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평균 자산은 61억 600만원, 평균 부채가 34억 5,800만원, 평균 자본은 26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자기자본비율은 43.4%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130.6%로 감소함

- 2014~2018년 평균 5년 동안의 재무정보 특성을 살펴보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의 규모가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총자산규모(397.8억원)는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321.2억원) 및 다른 벤처기업(278.8억원)보다 큰 편이나, 유형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기업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평균값은 각각 -28.4억원 및 -46.6억원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 총급여(14.8억원)는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24.8억원) 및 다른 벤처기업(16.6억원)에 비해 적음
 - 즉,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큰 벤처기업에서 고급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조세정책목표인 열악한 재정상황의 벤처기업이 우수한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회계 및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이 50.0%,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가 37.5%, 전용계좌 개설에 대한 어려움이 25.0%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 및 세무업무의 비중이 낮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력이 높고 고액연봉자인 유능한 회계 및 세무담당자를 구하기 어려움
 - 따라서 벤처기업의 업무숙련도가 낮은 회계 및 세무담당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법률,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음
 -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충족하기 위한 적격요건은 충족하기 쉬운 편으로 판단됨
 -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기 앞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기 위한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이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하거나 신청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회계 및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세특례 적용 시 애로사항의 이유만 살펴보더라도 회계 및 세무담당자의 인원 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이 45.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40.0%),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30.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즉, 벤처기업의 특성상 오랜 경력과 고속런 회계 및 세무업무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률,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음
 - 또한,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의 경우 향후 상장 가능성이 높지 않고,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이 낮은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대한 메리트가 낮을 수밖에 없음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는 벤처기업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 R&D 인력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중간관리자급 인력 34.0%, 생산기능 인력 27.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물어본 결과, 신기술 및 연구활동의 지원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뒤이어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32.0%), 우수한 인력과 회사의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30.0%), 연구활동을 위한 실습실, 기자재 및 인프라 등 지원(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 및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수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함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 벤처기업 수에 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매우 미미한 편인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용계좌 개설이 어렵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음
 -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 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됨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됨
 - 이때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융수수료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됨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대한 세법상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은 엄격하지 않은 편에 속함
 -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면서 주기적인 관리 및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비교한 결과
 -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의 규모를 구분하여 규모가 작고 신설기업일수록 더 큰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영국, 싱가포르 및 프랑스가 해당함
 -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
 -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영국 및 프랑스임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법상 별도의 적격요건 없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은 엄격한 편은 아니지만 활용도는 미미한 편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이 많은 편이 아니며, 제도의 인식 및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규정은 「조특법」 제16조의 4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예산분류상 산업진흥·고도화에 해당됨
 - 조세지출예산서상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의 조세지출 특성 보유 정도에 따라 아래의 세 가지 수준의 관리가능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적극적 관리대상
 - 일정 수준의 조세지출 특성을 갖춘 잠재적 관리대상
 -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정비가 곤란한 구조적 지출로 구분하고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조세지출의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 전체 조세지출 항목은 총 276개 중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2개 항목이며, 적극적 관리대상이면서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은 55개임
 - 정부는 잠재적 관리대상 및 구조적 지출보다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본 연구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이면서 감면실적이 없는 항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몰규정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되기 어려운 실정임

- 조세지출 항목은 일몰 항목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대상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적극적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일몰규정이 없는 경우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정부가 조세지출 항목 중 적극적 관리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비 의지를 피력한 만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규정 설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일몰규정의 신설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의 정책적 목표 및 효과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 정비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VI. 결 론



VI. 결 론

- 2017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수는 35,187개로 이들의 2017년 12월 말 기준 총매출액은 약 225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4억 200만원임
 - 2017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의 평균 자산은 61억 600만원, 평균 부채가 34억 5,800만원, 평균 자본은 26억 4,800만원임

- 벤처기업 중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기업/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주식매수선택권 미신청기업을 대상으로 2014~2018년 기간 동안 재무적인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신청 및 미신청 기업들에 비해서 평균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의 규모가 적은 편으로 관찰됨
 - 총자산 규모(397.8억원)는 주식매수선택권 신청기업(321.2억원) 및 다른 벤처기업(278.8억원)보다 큰 편이나 유형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남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평균값은 각각 -28.4억원 및 -46.6억원으로 비교분석대상 기업에 비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총급여(14.8억원)는 주식매수선택권 신청 벤처기업(24.8억원) 및 주식매수선택권 미신청 벤처기업(16.6억원)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함
 - 즉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큰 벤처기업에서 고급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정책의 목적에 부합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계획이 있는 벤처기업의 숫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9%), 이에 따라 향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조세지출규모가 지속적이고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2016~2018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신청 기업 수

는 연간 150개 이내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큰 규모로 확대되는 추세는 아님

- 다만 전체 벤처기업 35,187개 중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3.9%인 약 1,372개 기업으로 전체 벤처기업 수에 비해 그 활용도가 무척 낮은 편에 속하며, 연평균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신청기업이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신청한 기업 수가 각각 12개 및 34개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과세특례를 신청한 기업 및 근로자 수는 각각 34개, 2017명으로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인한 누적 세수효과는 2017년 44.27억원, 2018년 172.33억원으로 추정됨

- 1인당 평균 세수효과는 2017년 및 2018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임원 외 직원 대비 임원에 대한 평균 세수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관찰되며, 서비스업이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른 국가들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례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및 프랑스임

- 미국, 일본, 영국 및 프랑스는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도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법상 별도의 적격요건 없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기업이 직면한 환경 및 대기업과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이익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겪는 세무행정상의 애로사항이 개별 근로소득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이용실적 저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

-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 및 세무업무의 비중이 낮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력이 높고 고액연봉자인 유능한 회계 및 세무담당자를 구하기 어려움
 - 따라서 벤처기업의 업무숙련도가 낮은 회계 및 세무담당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법률,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음
 -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기 위한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금융비용이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규정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예산분류상 산업진흥·고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의 조세지출 특성 보유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수준의 관리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있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조세지출의 특성(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 전체 조세지출 항목은 총 276개 중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2개 항목이며, 적극적 관리대상이면서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은 55개임
 -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잠재적 관리대상 및 구조적 지출보다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본 연구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는 조세지출 항목 중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 및 감면실적이 없는 항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몰규정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되기 어려움
 - 일몰규정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의 경우에는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현행 조세지출항목은 일몰기한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관리되고 있는 편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일몰규정의 신설은 향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제도의 정책적 목표 및 효과를 검토하여 적절한 제도 정비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김재광,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문제」, 『조세학술논문집』 제2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6.
- 염미경,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법적 규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2.
-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12.
- 정유석,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에 대한 고찰」, 『경영사학』 제29집 제3호(통권 71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4. 9.
- 중소기업벤처부,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18. 12.
- 창조경제연구회, 「8차 포럼보고서 -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전략」, 2014. 5.

EKMEKJIAN, Elizabeth, GRITSCH, Martin, and SNYDER, Tricia Coxwell. TAXING OPTIONS: THE IMPACT OF TAX-FAVORED TREATMENT ON EMPLOYEE COMPENSATION. In: *Proceedings.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and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National Tax Association, 2001. pp. 123~129.

WALKER, David I, “The non-option: understanding the dearth of discounted employee stock options,” *BUL Rev.*, 2009, 89: 1505.

Internal Revenue Service(I.R.S.), Notice: Changes To Incentive Stock.

Option Requirements By Section 321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Notice 87-49, 1987-2 C.B. 35, 1987 WL 420154(IRS NOT), 1987.

BICKLEY, James M, *Employee stock options: tax treatment and tax issues*, 2012.

Mancof, Neal A. and David M. Weiner,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Arrangements* (2014 ed.), 2014.

<웹사이트 자료>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https://content.next.westlaw.com>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

<https://www.gov.uk/tax-employee-share-schemes/enterprise-management-incentives-emis>

<http://blog.accountingintelligence.jp/2017/07/japanese-qualified-stock-options>

<https://shimada-associates.com/en/filing-a-tax-return-for-restricted-stock-units-rsus-in-japan.html>

<https://www.iras.gov.sg/IRASHome>

<https://www.mof.gov.sg>

<https://www.irs.gov/taxtopics/tc427>

부 록



부 록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임의심층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벤처기업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대한 인식 및 활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20개 내외이며,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현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조사담당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설문지 작성 방법 : 칸에 보기번호 및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응답회사 기본 정보

DQ1.기업명						DQ2.업종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DQ3. 사업자 등록번호(10자리)											
DQ4.상장시장	①코스피 ②코스닥 ③코넥스 ④비상장					DQ5. 설립연도			년		
DQ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해당여부						①예		②아니요			
DQ7. 기업 성장단계	①창업기		②초기성장기		③고도성장기		④성숙기		⑤쇠퇴기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서비스)을 개발하는 단계		신규(서비스) 제품이 출시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		후속 신규제품이 출하되어 제품 및 시장이 다각화 되고 매출이 증폭되는 단계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 및 시장이 포화되어 성장이 둔화된 단계		매출이 급락하고 기업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DQ8. 귀사의 목표시장	①국내			②해외		③국내+해외					
DQ9. 창업방식	① 대기업 등 타 기업의 분사 또는 계열사 형식으로 창업 ② 국가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창업보육(BI) 과정을 거쳐 창업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창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업										

A. 인력 및 조직의 특성

A1. 귀사 인력의 직종별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관리	생산	영업	R&D	기타
직종별 인력구성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직종별 부족인원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 직종별 인력구성 = 현재 인원수

* 직종별 부족인원 = 직종별 정원 - 현재 인원수

A2. 귀사 인력의 학력별 구성비는 각각 몇 %입니까? (비율의 합계가 100 이 되게 작성해 주세요)

구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합계
학력별 인력구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0%

A3. 귀사가 현재 가장 구인하기 어려운 직무 및 직급은 어디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생산기능 인력 ② 인사 및 조직관리 인력 ③ R&D 인력 ④ 재무관리 인력
 ⑤ 영업 및 마케팅 인력 ⑥ 경영 기획 및 전략 인력 ⑦ 중간관리자급 인력 ⑧ 임원급 인력
 ⑨ 해당 사항 없음

A4. 귀사가 현재 가장 구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업계 평균의 높은 연봉 ② 과도한 근무시간 ③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 ④ 직장의 안정성
 ⑤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⑥ 회사의 위치 ⑦ 기타()

※ '⑦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도 간단하게 서술 부탁드립니다.

B. 재무구조의 특성

B1. 현재 귀사의 지분은 각각 몇 %입니까? (비율의 합계가 100 이 되게 작성해 주세요)

구분	창업자	창업자 아닌 대표자	창업자의 가족이나 친지	대표자의 가족이나 친지	일반 임직원	벤처 캐피탈 및 기관 투자자	타기업	개인 투자자	기타	합계
보유지분 비율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100%

B2. 귀사의 신규 자금조달(최근 3년) 규모 및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율의 합계가 100 이 되게 작성해 주세요)

신규 자금조달 규모	IPO (기업공개/상장)	캐피탈·엔젤투자	회사채 발행	정부정책 지원금 (R&D, 융자, 보증서 지원)	은행 등 일반금융	기타	합계
___ 백만원	___ %	___ %	___ %	___ %	___ %	___ %	100%

B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관한 귀사의 상황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응답)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① 과거 활용	② 과거 미활용	① 현재 활용	② 현재 미활용	① 미래 활용	② 미래 미활용

C3. [C2번 문항에서 ① 응답자 다음 중 어떤 정책지원을 받았습니까? 중복하여 답변 가능합니다.

구분		경험 여부	응답칸
정책 지원 자금	C3-1. R&D자금(출연금)	① 있다 ② 없다	
	C3-2. 융자(정책자금)	① 있다 ② 없다	
	C3-3. 보증서 지원(보증서발급 대출)	① 있다 ② 없다	
세제 지원	C3-4.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① 있다 ② 없다	
	C3-5.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① 있다 ② 없다	
	C3-6. 주식매수선택 행사이익 비과세 및 과세특례(근로자 대상)	① 있다 ② 없다	
기타	C3-7.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산업재산권 출자	① 있다 ② 없다	
	C3-8. 입지지원(실험실 및 공장, 도시형 공장 등)	① 있다 ② 없다	
	C3-9. 기타(특허심사, 기술임치, 마케팅 등)	① 있다 ② 없다	

C4.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 귀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거나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응답칸

- ① 예 ☞ C6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C5번 문항으로

C5. [C4의 ②응답자 ; 적용 계획이 없는 경우] 귀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하여 답변 가능합니다)

응답칸

- ①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②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③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④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 처리
 ⑤ 회계 및 세무담당자의 인원 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
 ⑥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⑦ 기타()
 ※ ‘⑦기타’를 선택한 경우 간단한 서술 부탁드립니다.

C6. [C4의 ①응답자 ; 적용 계획이 있는 경우] 귀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하여 답변 가능합니다)

응답칸

- ①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부족 ② 전용계좌 개설의 어려움(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③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 ④ 불합리한 회계 및 세무 처리
 ⑤ 회계 및 세무담당자의 인원 부족 및 업무상 어려움
 ⑥ 비상장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음
 ⑦ 기타()
 ※ ‘⑦기타’를 선택한 경우 간단한 서술 부탁드립니다.

